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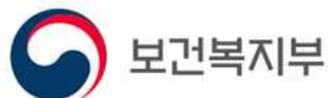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983-0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서동민, 김욱, 문성현, 전용호, 이용재, 황재영

2020. 11. 30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
실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 연구기관명 :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서동민 교수
- 연구참여자 : 김 욱(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문성현(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재영(노인연구정보센터)
- 보조원 : 장소슬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
제2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및 실태	5
제3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현황 설문조사	11
제4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외 사례	29
제5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47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7
제2절 연구수행체계 및 내용	60
1. 연구 수행체계	60
2. 연구 내용	61
3. 연구 방법	62
제2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및 실태	65
제1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기본 구조	67
1. 지정(갱신)제 운영 목적	67
2. 지정(갱신)제의 운영 절차	69

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	76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분석 ..79	
1. 제정 규칙의 명칭과 담당부서	79
2. 자치단체 지정(갱신)제 규칙의 주요 내용과 특징	79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규칙 및 심사기준 운영 유형 및 사례 ·	85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4
1. 초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도입 논의	104
2. 지정제 실효성 강화 논의	106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공식화	109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관한 현장 심층면접	111
1. 조사 개요	111
2. 장기요양기관 제공자 단체	113
3. 지자체 지정(갱신) 업무 담당자	118
제3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현황 설문조사	123
제1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조사 개요	125
1. 조사 목적 및 대상	125
2. 조사 항목 및 내용	126
3. 응답자 현황	128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29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129
2.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 적절성	139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143
1.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143
2.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량	144
3.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 난이도 및 애로사항	148
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160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172
1.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172
2.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174
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82
4.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9
5.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96
6. 지자체별 심사항목	202
7. 종합 심사점수	205
제5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210
1.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	210
2.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215
3.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	217
4.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	219
5.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계획 여부	221
6. 향후 갱신 시 연평균 예상물량	222
7. 지정(갱신)제 관련 기타 의견 (자유 기입)	222

제4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외 사례	229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지정갱신제 관리 및 운영체계	231
1. 개호보험의 서비스사업자 관리 방향	231
2.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과 갱신제도	232
3. 개호보험법에 따른 사후규제 사항	234
4. 지정(허가)갱신 제도 주요 내용	240
5. 지정(허가) 갱신 신청의 절차	242
6. 개호서비스사업자 지도·감식 방침	245
7. 기타 지원 제도 및 시스템	249
8. 정책적 시사점	252
제2절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공기관 허가 및 운영체계	254
1. 기본 현황	254
2. 장기요양기관 허가기준	258
3. 장기요양기관 허가절차	263
4.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270
5. 장기요양기관 계약해지 관련사항	273
6. 정책적 시사점	274
제3절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 사례 검토	276
1.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도	276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279
3.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280
4. 정책적 시사점	283

제5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285
제1절 지정(갱신)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 및 분류	287
1. 주요 과제 및 개선 방향 설정	287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안별 검토	289
1. 지정(갱신)제 운영절차의 체계성 강화	289
2. 현장 중심의 연속적 관리체계 확보	297
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의 구조화 및 신뢰성 향상	302
4. 지정(갱신)제 사업추진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313
5. 지정(갱신)제 성과관리체계 및 이행전략 개발	318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편 과제 간 우선순위 검토	327
1. 주요 과제별 시급성 및 중요도 검토	327
2. 과제별 우선순위 제안	330
참고문헌	331
[부록] 설문조사지	333

표차례

〈표 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운영 목적	69
〈표 2-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내용 및 절차	71
〈표 2-3〉 지정위원회 심사기준(예시)	76
〈표 2-4〉 자치단체 지정(갱신)제 규칙 제정 내용 검토	80
〈표 2-5〉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운영 유형 분류	85
〈표 2-6〉 내용적 측면의 실효성 강화방안	107
〈표 2-7〉 FGI 참석자	111
〈표 2-8〉 심층면접조사(FGI) 인터뷰 영역 및 질문 항목	112
〈표 3-1〉 조사 항목 및 내용	127
〈표 3-2〉 지역별 응답 구성비	128
〈표 3-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지자체 담당자) ...	129
〈표 3-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심사위원회 위원) ..	131
〈표 3-5〉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전체)	139
〈표 3-6〉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지역별)	140
〈표 3-7〉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전체)	140
〈표 3-8〉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141
〈표 3-9〉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지자체 담당자)	141
〈표 3-10〉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심사위원회 위원)	142
〈표 3-11〉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수 및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143
〈표 3-12〉 월평균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건수	144
〈표 3-13〉 현재까지 심사위원회 운영 횟수	144
〈표 3-14〉 월평균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건수	145
〈표 3-15〉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심사위원회 위원)	146
〈표 3-16〉 지정(갱신)제 관련 상대적 난이도	148
〈표 3-17〉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지자체 담당자)	149

<표 3-18>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심사위원회 위원)	150
<표 3-19>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전체)	161
<표 3-20>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지역별)	161
<표 3-21>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전체)	162
<표 3-22>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162
<표 3-23>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63
<표 3-24>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164
<표 3-25>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전체)	172
<표 3-26>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지역별)	173
<표 3-27>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전체)	173
<표 3-28>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174
<표 3-29>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지자체 담당자)	175
<표 3-3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심사위원회 위원)	176
<표 3-3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83
<표 3-3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184
<표 3-3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90
<표 3-34>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191
<표 3-35>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97
<표 3-36>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198
<표 3-37> 지자체별 심사항목(지자체 담당자)	202
<표 3-38> 지자체별 심사항목(심사위원회 위원)	202
<표 3-39> 종합 심사점수(지자체 담당자)	205
<표 3-40> 종합 심사점수(심사위원회 위원)	205
<표 3-41>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지자체 담당자-전체)	210
<표 3-42>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지자체 담당자-지역별)	211
<표 3-43>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심사위원회 위원-전체)	211
<표 3-44>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212

<표 3-45>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지자체 담당자)	216
<표 3-46>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심사위원회 위원)	217
<표 3-47>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218
<표 4-48>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219
<표 3-49>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지자체 담당자)	220
<표 3-50>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 (심사위원회 위원)	221
<표 3-51>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계획 여부(지자체 담당자)	222
<표 3-52>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계획 여부(지자체 담당자)	222
<표 4-1> 개호서비스 유형별 지정기준	233
<표 4-2> 개호서비스의 지정 종류	238
<표 4-3> 시설별, 운영주체별 재가시설 현황 (2017년)	255
<표 4-4> 재가기관 운영주체별 서비스 수급자 수 (2017년)	256
<표 4-5> 고용형태별 재가기관 종사자 수 (2017년)	256
<표 4-6> 시설별, 운영주체별 입소시설 현황 (2017년)	257
<표 4-7> 운영주체별 입소시설 수 및 입소정원 현황 (2017년)	257
<표 4-8> 입소시설 종사자 현황 (2017년)	258
<표 4-9> 각 주별 입소시설 인력기준	261
<표 4-10> 어린이집 시설기준	277
<표 4-11>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281
<표 5-1> 향후 지정(갱신)제 반영이 필요한 심사 지표	305
<표 5-2> 향후 지정(갱신)제 필수지표(안)	309
<표 5-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 영역 및 항목, 세부지표 구성(안)	311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영역 및 세부 연구내용)	60
[그림 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홍보 자료	68
[그림 2-2]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72
[그림 2-3] 장기요양기관 가지정제도 및 지정갱신제도 운영 흐름도	105
[그림 3-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지자체 담당자)	130
[그림 3-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심사위원회 위원)	131
[그림 3-3]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39
[그림 3-4]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140
[그림 3-5]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지자체 담당자)	141
[그림 3-6]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심사위원회 위원)	142
[그림 3-7]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수 및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143
[그림 3-8]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 건수	144
[그림 3-9] 현재까지의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량	145
[그림 3-10] 지정(갱신)제 관련 상대적 난이도	148
[그림 3-11]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지자체 담당자)	149
[그림 3-12]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심사위원회 위원)	150
[그림 3-13]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61
[그림 3-14]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162
[그림 3-15]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63
[그림 3-16]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164
[그림 3-17]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72
[그림 3-18]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173
[그림 3-19]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지자체 담당자)	174
[그림 3-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심사위원회 위원)	175
[그림 3-2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82

[그림 3-2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183
[그림 3-2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89
[그림 3-24]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191
[그림 3-25]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96
[그림 3-26]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198
[그림 3-27]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지자체 담당자-전체)	210
[그림 3-28]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심사위원회 위원-전체)	211
[그림 3-29]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지자체 담당자)	215
[그림 3-30]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심사위원회 위원)	216
[그림 3-31]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218
[그림 3-32]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219
[그림 3-33]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 (지자체 담당자)	220
[그림 3-34]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 (심사위원회 위원)	221
[그림 4-1] 사후규제의 도입 배경	236
[그림 4-2] 사후규제가 적용되는 대표사례	237
[그림 4-3]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절차 흐름	244
[그림 4-4] 지정갱신절차의 흐름	245
[그림 5-1] 지정(갱신)제 운영의 기본 방향 정립(패러다임 전환)	288
[그림 5-2]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절차 개선(안)	296
[그림 5-3] 장기요양 지정 단계와 갱신단계의 연결성 확보(안)	301
[그림 5-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주기 및 적용 시점	322
[그림 5-5]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방식 개선안(2방식)	324
[그림 5-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과제별 우선순위	330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및 실태

제3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현황 설문조사

제4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외 사례

제5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급속히 확충되었으며, 이러한 인프라 기반의 양적 확대는 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 (socialization of long-term care)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형식적인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정하는 등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일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이 스스로 폐업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계속하여 지정 상태가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서비스 시장의 진입요건완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양화전략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확대에 큰 기여를 했지만,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된 성과를 가져왔음(이희승 외, 2016)

-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적절하게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장 진입과 운영 과정에 이르는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및 실천현장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결격사유 명시 등 지정요건을 강화(2015.12)한데 이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국무회의 의결(안) 통과, 국회 제출(2017.1)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8.12)에 따라 2019년 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가 강화되고 지정갱신제가 도입됨
-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이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수행체계 및 내용

1. 연구 수행체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는 총 3개 연구영역과 세부 연구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 1영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및 실태 분석
 - 2영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사례 분석
 - 3영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도출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및 실태 분석 (1영역)
 - 현행 지정(갱신)제 관련 법령·지침·추진체계의 기본 구조
 - 지자체 운영실태 조사
 - 지역사회 현장의 제도 실효성 및 성과 파악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사례 분석 (2영역)

- 해외 관련 사례 분석
 - 국내 관련 사례 분석
 - 국내·외 사례에 대한 종합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도출 (3영역)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 및 분류
 -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구체화
 - 지정(갱신)제 개선안 추진계획 검토
- 연구방법
 - 연구 내용에 따라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해외사례 조사 및 고찰,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 진행

제2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및 실태

제1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및 실태 분석

1. 지정(갱신)제 운영 목적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운영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강화’를 추진(보건복지부, 20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3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요건 및 검토 사항을 제시
 -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보건복지부, 2019)에 따르면, 수급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확

충을 그 목적으로 제시

- 지정(갱신)제 운영 목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운영 목적

구 분		양적 측면	질적 측면
장기요양 기관	신규 기관	- 기관 개설 과정에서 제 규정 준수 - 지역 수급 상황을 고려한 진입(개설 여부 및 규모, 급여유형 등 선택)	- 기관 개설 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적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
	기존 기관	- 기관 운영 과정에서 제 규정 준수 - 지역 수급 상황을 고려한 확대 및 조 정(시설 및 정원, 급여유형 등 변동)	- 기관 운영 중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적 수준에 대한 사후 점검
지자체		- 지역단위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적정성, 수급 안정화 책임 - 양적 기준 개발 및 운영 권한 부여	-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 적 수준 유지 및 관리 책임 - 질적 기준 개발 및 운영 권한 부여
지역주민		- 장기요양기관 접근성, 선택권 보장 - 지역에서의 정주성 확보	- 양질의 서비스 이용 -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2. 지정(갱신)제의 운영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와 관련 지침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절차 규정
 -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장기요양기관
을 운영하려는 자’와 신청에 따라 이를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갱신’에 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4에서 규정

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적용하는 심사지표의 기본 구성 및 내용(예시)은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19)
 - 기본적으로 5개 항목을 제시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지자체별 심사항목
 -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분석

1. 제정 규칙의 명칭과 담당부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실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검색한 결과, 전국 224건의 관련 규칙 검색(2020.11 기준)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규칙은 대체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 중
 - 기초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지원과, 가족지원과, 주민복지실,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아동과, 행복나눔과 등 복지 관련 부서가 주무부서로 관리

2. 자치단체 지정(갱신)제 규칙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에 대한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내용과 지역별 특이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
 - 목적, 설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의 직무, 회의, 심사·의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비밀누설 금지, 간사, 수당 등의 지급, 운영세칙 등에서 공통적인 내용과 지역별 특이 사항이 발견됨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규칙 및 심사기준 운영 유형 및 사례

- 자치단체별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규칙 및 심사기준 사례를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
 - ①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배점을 영역별로 세분화한 지역
 - ②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배점을 세분화하지 않은 지역
 - ③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한 지역
 - ④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하고 감점과 가점을 별도로 구분한 지역
 - ⑤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감점과 배점을 세분화한 지역
 - ⑥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가점 사항을 구체화한 경우

- 그 밖에도 지자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존재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초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도입 논의

- 장기요양급여 부담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김옥, 서동민 외, 2013)연구에서 세부 과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의 도입(1-2-2)을 제안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을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
 - 장기요양기관 가지정제도와 지정갱신제도를 단계적으로 또는 함께 도입한다면, 무자격 장기요양기관의 시장진입 방지와 자연스러운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지정제 실효성 강화 논의

- 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재검토하고 절차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이희승 외, 2016)
 - 현재 지자체의 지정권한 및 절차운영은 그대로 두고,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청구자격을 부과하고 이를 갱신하는 방식
 - 지자체가 지정권한을 가지고, 독립 민간인증기구에게 지정신청업무 등을 위탁하는 방식
 - 지자체와 보험자의 협력체계구축이라는 방안으로, 현재의 지정제를 그대로 두고 이를 내용과 절차 면에서 보완하는 방식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공식화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 중 하나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제시(보건복지부, 2018)

-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선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 정비’추진을 발표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관한 현장 심층면접

1. 조사 개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자료 및 사례를 수집, 사업 및 업무 현황, 성과 및 과제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 조사 대상집단은 장기요양기관 제공자 단체, 지정(갱신)제 담당 지자체공무원 등 2개 그룹으로 구분(총 10명)
- 조사내용에 따라 총 11영역 32개 질문 항목을 선정, 순차적으로 진행

2. 장기요양기관 제공자 단체

- 주요 의견
 - 지정갱신제의 도입 취지 동의
 - 기존기관과 신규기관의 형평성 문제 지적
 - 신규기관에 대한 지정제 적용 기준 강화 필요
 - 지정(갱신)제 운영의 실효성 우려
 - 심사지표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필요
 -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
 - 지역 간 차이가 있는 심사기준에 대한 정비 필요
 - 지역단위의 장기요양인프라 수급관리체계 필요

3. 지자체 지정(갱신) 업무 담당자

○ 주요 의견

- 지정(갱신)제 도입의 필요성 동의
- 신청자의 낮은 사업 이해도 문제
- 서류 접수 및 점검 업무 부담
- 지정 신청 시점의 문제와 지정거부의 어려움
- 현지조사에 대한 지원 필요
- 형식적 심사위원회 운영
- 지자체 간 심사결과의 차이 발생
- 신청 제한과 발표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희망
- 기관 대표자와 시설장 사전 교육 의무화 요구
- 지정 이후 사후관리활동의 강화 필요

제3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현황 설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 관련 현황과 성과, 문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지자체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실시(2020. 10.22~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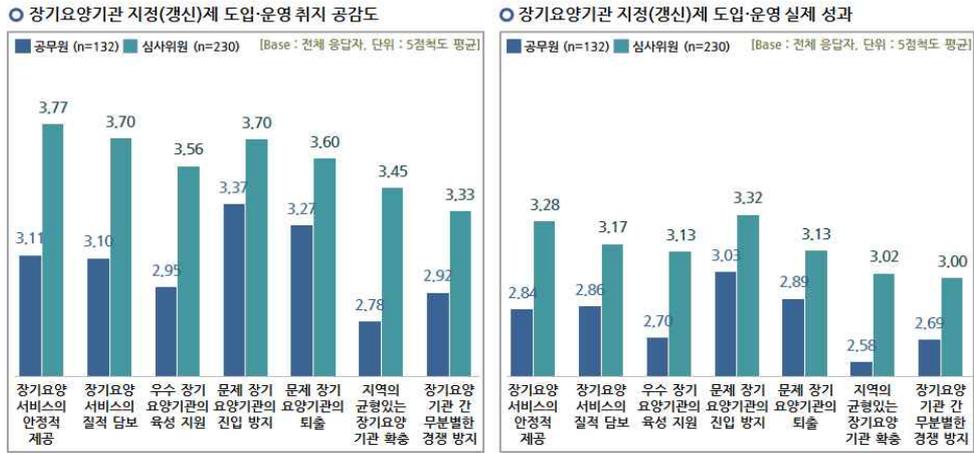
<표 2> 조사 항목 및 내용

구분	세부 조사 내용	비고
지정(갱신)제 전반적 인식	·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성과 인식	공통
	· 현재 지정(갱신)제의 전반적 운영 적절성 평가 및 평가이유	공통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공무원, 심사위원회 위원) 수	지자체공무원
	· 지정(갱신)관련 업무 처리건수 및 심사위원회 운영 횟수	지자체공무원
	· 시설/재가 및 급여유형별 업무 처리건수	지자체공무원
	· 지정거부 사례 및 이유	지자체공무원
	·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의 상대적인 난이도	지자체공무원
	·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애로사항	공통
	· 지정절차 전반적 및 각 단계별 적절성 평가 (9단계)	공통
	·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개선사항 (주관식 기입)	지자체공무원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내용/형식 의 전반적인 적절성 평가	공통
	·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공통
	·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주관식 기입)	공통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완화 및 강화 의견 및 이유	공통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공통
	· 심사항목 및 기준 개선(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공통
	·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공통
	· 향후 지자체의 지정(갱신)제 운영 계획 및 예상 물량	지자체공무원
응답자 특성	· 지역,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자격증, 직급, 관련 경력 등	공통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 전반적으로 지정(갱신)제의 도입·운영 취지에는 다소 공감하는 편이나, 실제 성과는 취지에 공감하는 정도보다는 낮게 평가함
 - 지자체 담당자(공무원)은 타 항목대비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 지자체 담당자보다 심사위원회 위원이 도입 취지와 실제 성과 모두 높게(긍정적으로) 평가



[그림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표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구분	취지 공감도		실제 성과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132)	(230)	(132)	(230)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11	3.77	2.84	3.28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3.10	3.70	2.86	3.17
우수 장기요양기관의 육성 지원	2.95	3.56	2.70	3.13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방지	3.37	3.70	3.03	3.32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3.27	3.60	2.89	3.13
지역의 균형 있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2.78	3.45	2.58	3.02
장기요양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 방지	2.92	3.33	2.69	3.00
전체 항목 평균	3.07	3.59	2.80	3.15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5점척도 평균]

○ 지정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와 실제 성과의 교차분석 결과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지자체 담당자) 항목이 취지 공감도도 높고(평균 이상), 실제성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



[그림 2] 지정(갱신)제 취지 공감도와 실제 성과 교차분석

2.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 적절성

-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11.4%만이 적절(평균 5.59 점), 심사위원회 위원은 34.3%가 적절하다고 평가(평균 6.51점)
- 부적절한 이유로는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수행절차 상 번거로워서’,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
 - (지자체 담당자) ①업무수행 절차상 번거로움, ②심사기준, 항목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③현장의 이해도 부족, ④과도한 물량 순
 - (심사위원회 위원) ①심사기준, 항목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②현장의 이해도 부족, ③업무절차 상 번거로움, ④과도한 물량 순



[그림 3]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 적절성

<표 4>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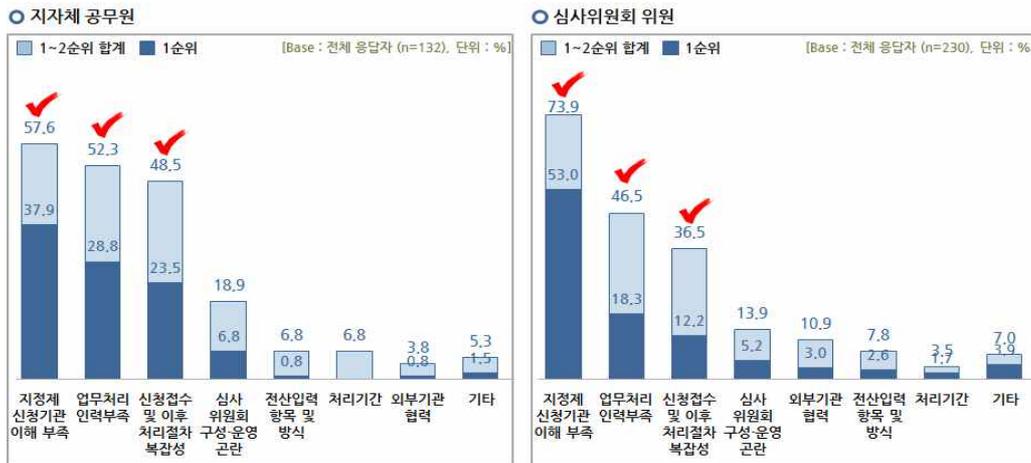
구분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12.9	5.59	9.1	6.51
보통 (④+⑤)+⑥+⑦)	75.8		56.5	
적절함 (⑧+⑨+⑩)	11.4		34.3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10점척도 평균]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1.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애로사항

- 지정(갱신)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 모두 ①지정제 신청기관 이해부족, ②업무처리 인력부족, ③신청접수 및 이후 처리절차의 복잡성, ④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곤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4]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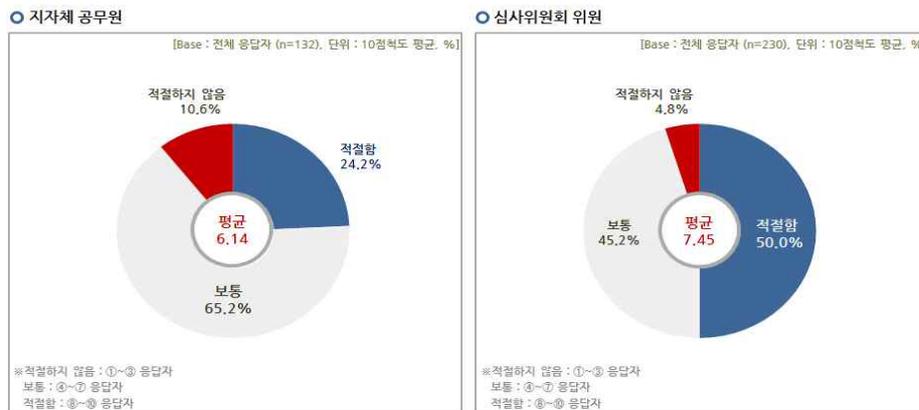
<표 5>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애로사항

구분	1~2순위 합계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132)	(230)
지정제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해 부족	57.6	73.9
업무 처리 인력의 부족	52.3	46.5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곤란	18.9	13.9
신청 접수 및 이후 처리절차의 복잡성	48.5	36.5
전산입력 항목 및 방식	6.8	7.8
외부 기관(건보공단 등)과의 협력	3.8	10.9
처리기간	6.8	3.5
기타	5.3	7.0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중복응답]

2. 지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성 적절성

- 지정(갱신)제 지정절차의 전반적 구성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24.2%(평균 6.14점), 심사위원회 위원은 50.0%가 적절 평가(1평균 7.45점)



[그림 5] 지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성의 적절성

<표 6> 지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성의 적절성

구분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10.6	6.14	4.8	7.45
보통 (④+⑤)+⑥+⑦)	65.2		45.2	
적절함 (⑧+⑨+⑩)	24.2		50.0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10점척도 평균]

3.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 전반적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이 지자체 담당자보다 각 단계별 적절성에 대해서 긍정적(높게)으로 평가하는 경향
- 지자체 담당자와 심사위원회 위원 공통적으로 지정여부 결정,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해서 다른 항목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그림 6]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표 7>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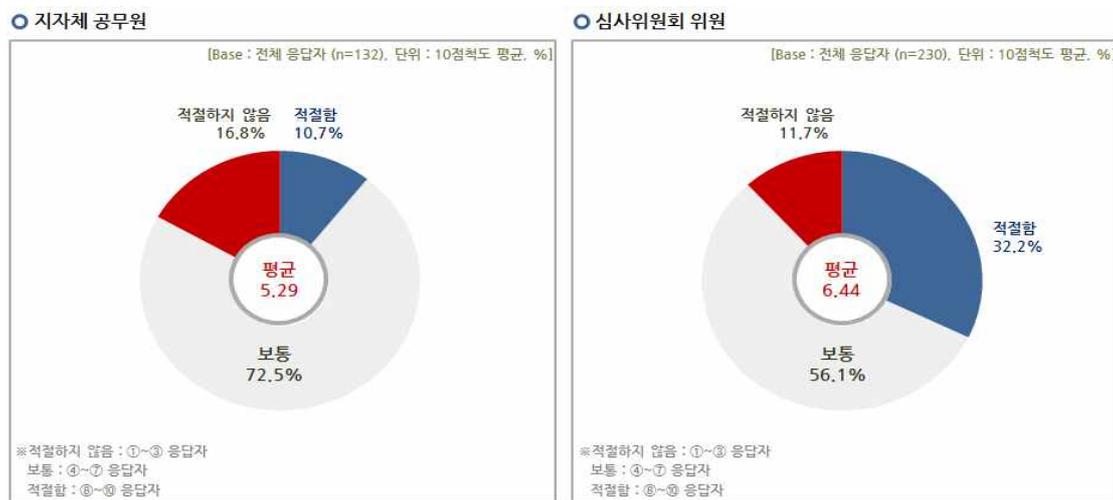
지정 절차 단계	5점척도 평균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지정신청 접수	3.20	3.92
서류 심사	3.37	3.94
현지 확인	3.54	3.9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3.30	3.88
지정여부 결정	3.27	3.89
전산 입력	3.45	3.99
지정서 발송	3.41	3.99
지정 명세 공단 통보	3.27	3.94
사후 관리	3.22	3.82
전체 항목 평균	3.34	3.92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1.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전반적 적절성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10.7%만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10점척도 평균 5.29점), 심사위원회 위원은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10점척도 평균 6.44점)



[그림 7]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표 8>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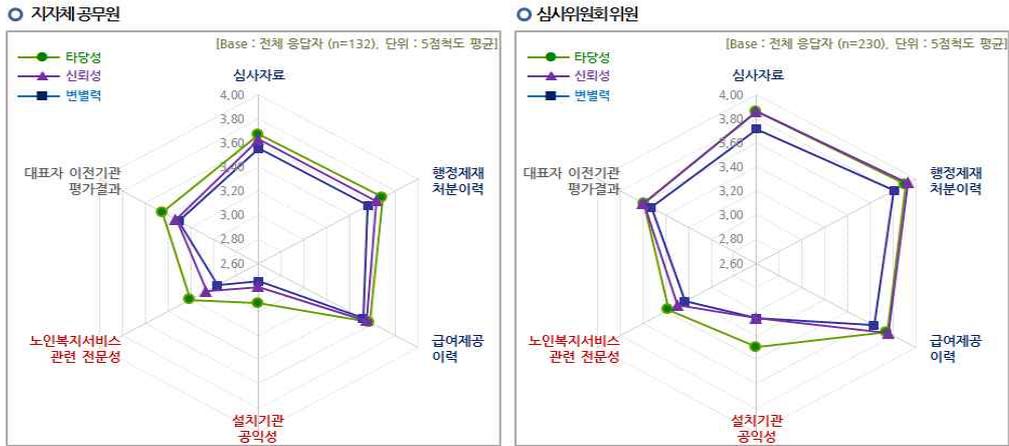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16.8	5.29	11.7	6.44
보통 (④+⑤)+⑥+⑦)	72.5		56.1	
적절함 (⑧+⑨+⑩)	10.7		32.2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10점척도 평균]

2.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 전반적으로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은 다른 영역대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심사자료, 행정제재 처분이력, 급여제공 이력의 타당성, 신뢰성, 변별력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설치기관 공익성,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전문성은 다소 낮음



[그림 8]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표 9>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서비스 제공능력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3.67	3.55	3.63	3.86	3.71	3.86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3.69	3.56	3.64	3.91	3.81	3.93
급여제공 이력	3.58	3.52	3.55	3.75	3.63	3.76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2.93	2.75	2.80	3.30	3.06	3.06
대표자(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3.20	2.96	3.06	3.37	3.23	3.30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3.45	3.30	3.33	3.59	3.53	3.60
전체 항목 평균	3.42	3.27	3.33	3.63	3.49	3.58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전반적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은 다른 영역대비 타당성, 신뢰성, 변별력이 낮게 평가된 가운데, 특히 신뢰성과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자체 담당자의 평가(낮은 수준)와 심사위원회 위원의 평가(보통 수준)간 차이를 보임



[그림 9]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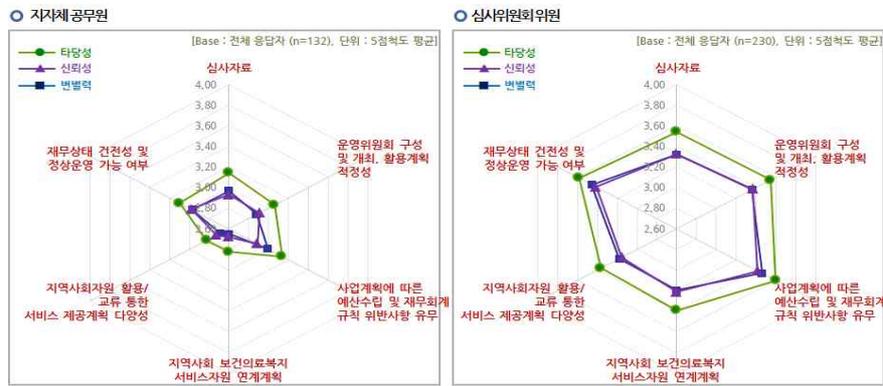
<표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3.04	2.78	2.75	3.45	3.15	3.16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04	2.80	2.83	3.53	3.27	3.25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3.02	2.80	2.80	3.50	3.22	3.22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3.02	2.79	2.77	3.43	3.17	3.15
전체 항목 평균	3.03	2.79	2.79	3.48	3.20	3.19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4.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전반적으로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은 다른 영역대비 타당성, 신뢰성, 변별력이 낮게 평가된 가운데, 특히 신뢰성과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계획, 지역사회 자원 활용·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 마련 여부 항목은 다른 항목대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비교적 낮은 항목
 - 지자체 담당자의 평가(낮은 수준)와 심사위원회 위원의 평가(보통 수준)간 차이를 보임



[그림 10]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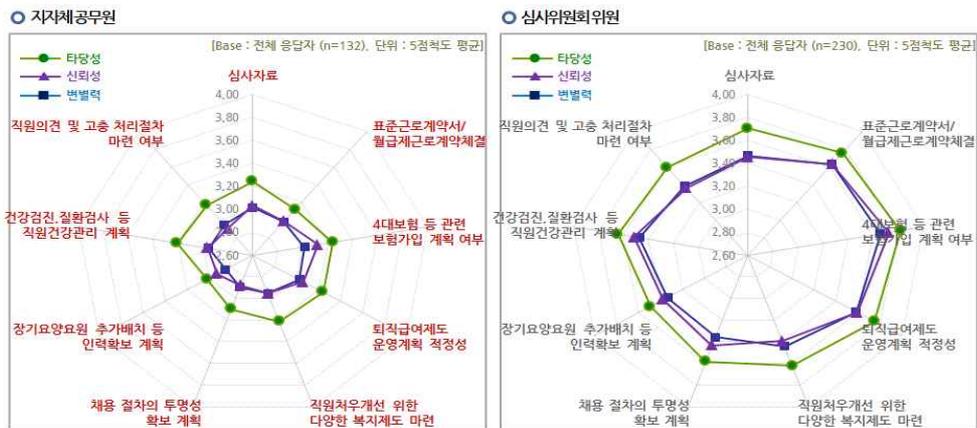
<표 11>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3.14	2.97	2.93	3.54	3.32	3.33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06	2.88	2.91	3.55	3.36	3.37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3.14	2.99	2.89	3.60	3.46	3.42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2.82	2.65	2.68	3.39	3.20	3.2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2.83	2.69	2.73	3.37	3.18	3.15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3.10	2.97	2.98	3.59	3.46	3.41
전체 항목 평균	3.01	2.86	2.85	3.51	3.33	3.32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5.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인적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은 다른 영역대비 지자체 담당자는 모든 평가기준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소 높게 평가
-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은 다른 항목대비 비교적 낮음



[그림 11]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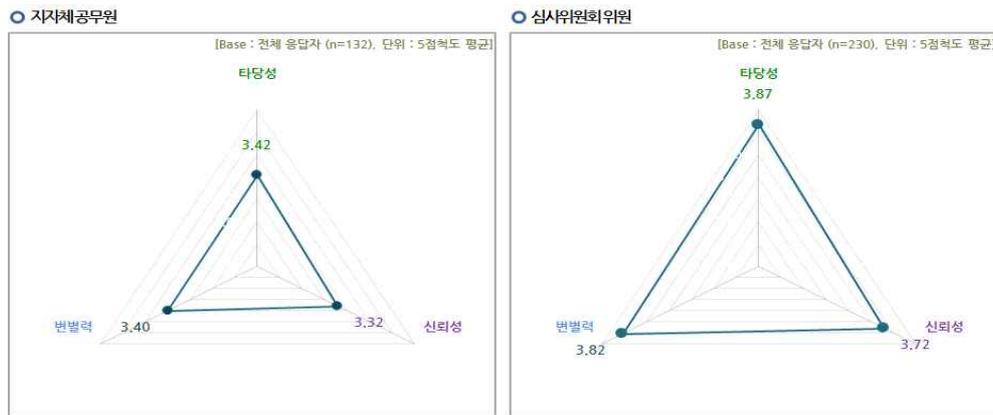
<표 12>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3.24	3.02	3.03	3.70	3.47	3.45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12	2.98	2.98	3.76	3.63	3.63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 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24	3.02	3.12	3.82	3.66	3.73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24	3.02	3.06	3.75	3.58	3.60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 여부	3.21	2.95	2.95	3.62	3.44	3.40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3.10	2.89	2.88	3.58	3.36	3.43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3.02	2.85	2.92	3.49	3.33	3.37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3.20	2.95	2.96	3.64	3.47	3.51
직원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3.17	2.95	2.90	3.60	3.38	3.36
전체 항목 평균	3.17	2.96	2.98	3.66	3.48	3.50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6. 지자체별 심사항목

- 지자체 담당자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
-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평가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12] 지자체별 심사항목

<표 13> 지자체별 심사항목

구분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지자체별 심사항목	3.42	3.32	3.40	3.87	3.72	3.82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7. 종합 심사점수

- 지자체 담당자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평가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13] 종합 심사점수

<표 14> 종합 심사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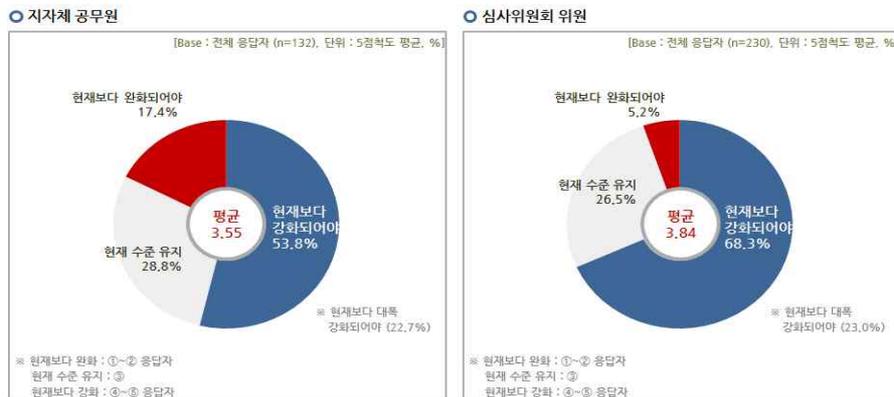
구분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종합 심사점수	3.31	3.22	3.23	3.69	3.48	3.54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제5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1.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

- 지자체 담당자는 53.8%가 지정(갱신)관련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5점척도 평균 3.55), 심사위원회 위원은 68.3%가 지정(갱신)관련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평균 3.84)



[그림 14]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

<표 15>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

구분	지자체 담당자 (132)		심사위원회 위원 (230)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완화되어야 함 (①+②)	17.4	3.55	5.2	3.84
현 상태가 적절 (③)	28.8		26.5	
강화되어야 함 (④+⑤)	53.8		68.3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5점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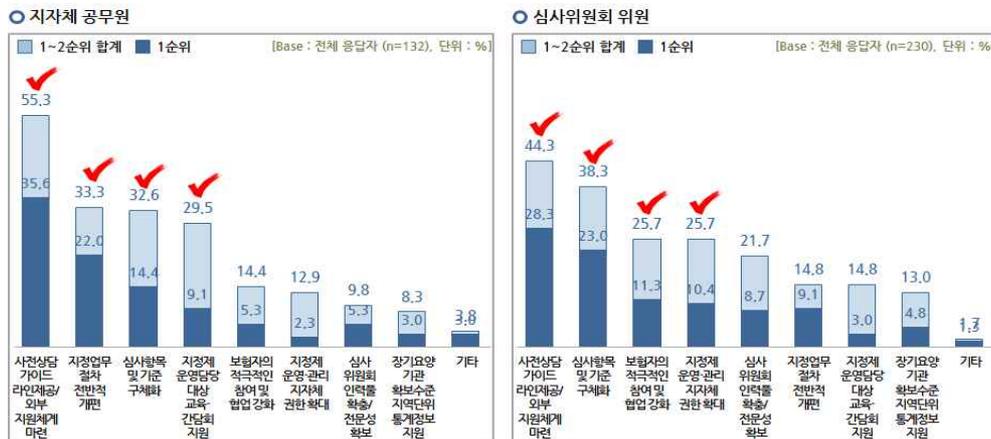
2.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 지자체 담당자

- ① 사전상담 가이드라인 제공/외부 지원체계 마련, ② 지정업무 절차의 전반적 개편, ③ 심사항목 및 기준 구체화, ④ 지정제 운영담당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지원 순임

○ 심사위원회 위원

- ① 사전상담 가이드라인 제공/외부 지원체계 마련, ② 심사항목 및 기준 구체화, ③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협업 강화, ④ 지정제 운영·관리의 지자체 권한 확대 순임 (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15]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표 16>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1~2순위 합계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132)	(230)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	55.3	44.3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	14.4	25.7
심사위원회 인력풀 확충 및 전문성 확보	9.8	21.7
지정 업무 절차의 전반적 개편	33.3	14.8
지정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12.9	25.7
지정제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지원	29.5	14.8
장기요양기관 확보 수준에 대한 지역단위 통계 정보 지원	8.3	13.0
심사 항목 및 기준 구체화	32.6	38.3
기타	3.8	1.7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 중복응답]

3.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

-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 및 기준으로 반영이 필요
- 반면, 지자체의 관련 사업 참여실적, 지역사회 공익·공헌 활동, 기관 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항목의 반영 적절성이 다른 항목대비 비교적 낮게 평가



[그림 17]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표 18>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5점척도 평균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132)	(230)
기관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3.27	4.03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준수 여부	3.87	4.32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3.79	4.15
지자체의 관련(인증)사업 참여실적	3.24	3.78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3.97	4.22
지역사회 공익·공헌활동	3.26	3.77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3.36	3.83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4.11	4.43
전체 항목 평균	3.61	4.07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5점척도 평균]

4. 효과적인 지정(갱신)제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자유기입)

- 현재 지정(갱신)제는 진입장벽이 낮아 서비스 제공기관 과잉 및 질적 한계 초래하므로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보다 높일 필요
 - 전반적으로 신규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며, 지정거부에 대한 부담감 및 온정 주의 등으로 인해 거부사례가 많지 않음
 - 제도상·심사기준 상의 허점으로 인해 대표자 혹은 시설장의 행정처분이력이 있어도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문제없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서류중심의 심사로 인해 지정(갱신)제 심사는 통과의례적·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다수의 기관들이 신청 시 외부 컨설팅기관에 의뢰하거나 기존 다른 기관의 신청서를 (참고하는 수준이 아닌) 단순복사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어 심사 시 변별력과 차별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됨
 - 또한, 신청기관 대표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기관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수익사업으로 참여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명확한 심사기준 및 급여유형별·신규/갱신별 심사기준표·매뉴얼 마련 필요

- 지정제 심사 시 심사기준의 불명확성 또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와 심사위원회 위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심사기준표는 신규 신청기관에 보다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일반화(일률적인)된 심사기준으로 인해 급여유형에 맞지 않는 항목도 다수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서류심사의 한계점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기관 운영 사업계획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각 기관들이 실제로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현지 확인 등 실사절차 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됨
- 심사항목 상 ‘마련 여부’ 또는 ‘계획’ 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심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정제 업무담당자의 업무과중 해소방안 필요

-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신청기관의 이해도 부족(상담 및 서류보완에 업무과다 투입 초래), 절대 업무량 과다(심사절차 복잡, 준비서류 과다 등), 심사위원회 준비·운영, 세부 업무매뉴얼 및 관련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타 의견

- 지자체 담당자들과 장기요양기관 모두 6년 후 예정되어 있는 갱신 심사에 대해서 부담감(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를 통해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제도는 지정거부 되어도 아무런 제재나 신청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함. 지정거부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제도는 선행적으로 시설·인력을 갖춘 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 담당자·심사위원·신청기관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제4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외 사례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지정갱신제 관리 및 운영체계

1.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과 서비스의 질 향상

○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책무

- 개호서비스 사업자는 요개호자·요지원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개호보험법과 그에 근거한 명령을 준수하고, 요개호자·요지원자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책무가 있음

○ 개호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최저한도의 규정을 정한 지정기준

-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개호서비스는 서비스종류별로 규정된 서비스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지정을 받은 개호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음
- 지정기준은 각 서비스의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제가 되는 인원기준, 설비(시설)기준, 서비스제공의 방법 등에 대한 운영기준의 세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음

○ 2006년도부터의 사업자 규제의 개정

- 개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악질적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책무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지정에 있어서 결격사유·최소요

건을 추가

- 또한 사업자의 지정효력에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는 지정갱신제를 도입

2.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과 갱신제도

○ 개호서비스 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지정기준(필요한 최저한도)

- ① 기본방침
- ② 인원기준(종사자의 지식·기능·인원에 관한 기준)
- ③ 설비기준(사업소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기준)
- ④ 운영기준(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개호서비스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운영상의 기준)

○ 개호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선지도나 지정효력의 정지·취소 등의 대상이 됨

○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나 이용자의 신체 또는 생명의 안전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지정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것

3. 개호보험법상의 사후규제

○ 사후규제 도입의 배경

① 지정거부의 요건이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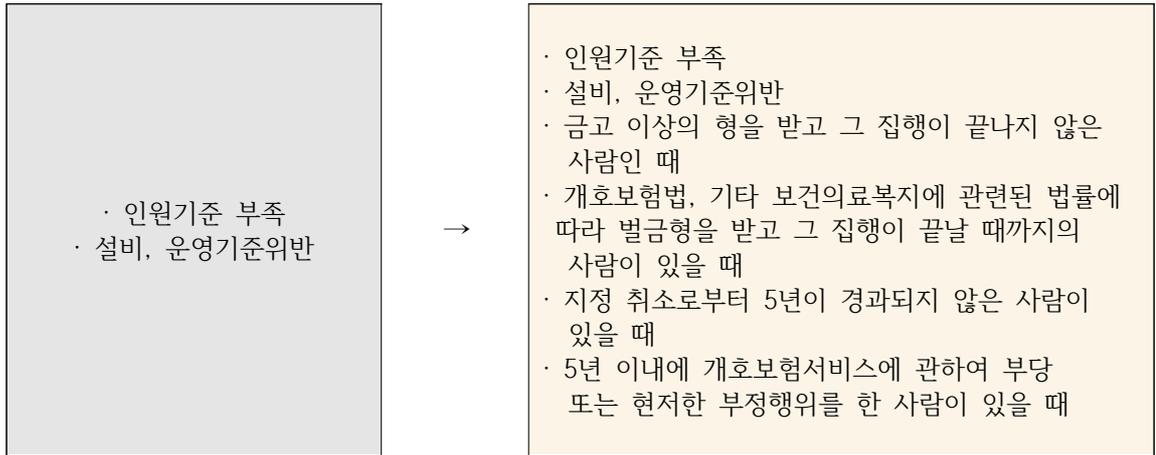
- 과거에 불상사를 일으킨 사업자에서 재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정거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권자인 도도부현은 지정을 거부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정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지정거부 요건을 개선함

○ 대상자 추가



○ 지정 결격사유 및 지정취소요건 추가



② 지정효력의 기한이 없음

- 대책으로 지정의 갱신제를 도입함
- 지정효력에 유효기간(6년)을 설정
-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나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의 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됨
- 갱신의 결격사유는 지정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 유의해야 할 것은 사업자(신청자)뿐만 아니라 법인임원 등에 대해서도 지정갱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의 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임

③ 권고, 명령 등 추가

- 도도부현, 시정촌이 보다 실태에 입각한 지도·감독 및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선권고, ㉡업무개선명령, ㉢지정효력정지의 권한을 추가

○ 사후규제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

- 개호서비스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은 새롭게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상기의 법인이 복수의 개호서비스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지정갱신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산하의 개호서비스사업소가 연좌하여 지정의 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됨

○ 권고·명령 등의 권한

- 이전에는 부정을 저지른 지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행정처분의 방법으로는 「지정취소」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실태에 맞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보다 실태에 맞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의 시스템을 2006년 4월부터 새롭게 규정함

○ 개호서비스 사업소지정의 효력정지

- 종전에는 지정서비스사업자가 부적정한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도, 「지정취소」 이외의 대책이 없어 긴급 조치 등의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
- 이에 따라 부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정서비스 사업자를 확인한 경우에 부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신속히 개호수가의 청구를 정지하는 등의 지정 전체 또는 일부 효력 정지를 실시할 수 있게 됨

4. 지정(허가)갱신 제도에 대해서

- 2006년 4월 서비스의 질 확보·향상을 목적으로 한 지정(허가)갱신제도가 도입되어, 개호서비스사업자는 6년마다 지정(허가)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지정(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개호수가를 청구할 수 없음
- 지정(허가)의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허가)갱신을 신청해야 하는데, 인원·설비·운영 등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나 신청법인이나 그 임원 등이 과거에 지정취소처분을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지정갱신을 받을 수 없음

○ 지정(허가)의 유효기간

- 지정(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일로부터 6년이고, 지정일과 사업 개시예정일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통지문을 확인하고 지정 유효기간 내에 지정갱신을 신청해야 함

○ 지정(허가)갱신절차를 유효기간 내에 하지 않는 사업소

- 지정(허가)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지정(허가)갱신 신청서는 수리하지 않음

○ 지정(갱신)에 있어서 결격사유

- 사업소에서 인원 결여 등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신청자(법인), 법인임원, 관리자 등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갱신)을 받을 수 없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개호보험법, 기타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지정(허가) 취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법인이 지정취소를 받은 것으로 인해 연좌제가 적용되어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 휴업 중인 사업자

- 휴업 중인 사업자는 인원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지정(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음

5. 지정(허가) 갱신 신청의 절차

○ 신청기간

- 원칙적으로 지정(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부터 별도로

통지하는 제출 기한까지를 신청기간으로 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또한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야 하고, 봉투에 [지정갱신신청서재중]이라고 표시

○ 제출부수

- 신청서, 첨부서류와 함께 1부 제출, 또한 복수의 개호서비스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각각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서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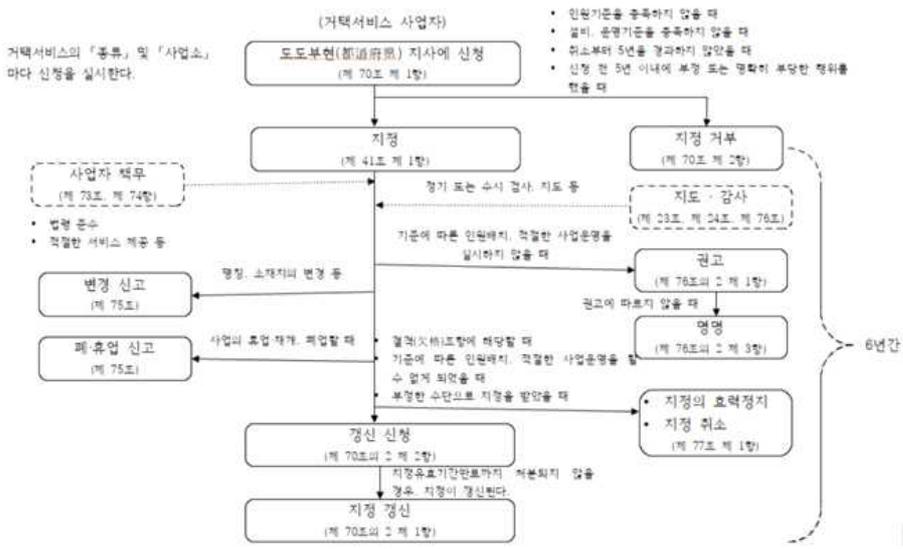
○ 제출처

- 각 개호서비스사업소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종합진흥국

○ 심사

- 서류심사로 제출된 지정(허가)갱신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대상
- 현지조사로 필요에 따라 인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 심사결과 지정(허가)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경우는 지정(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지정(허가)갱신통지서'를 송부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절차 흐름 (거택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그림 18]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절차 흐름

6. 개호서비스사업자 지도·감독 방침

- 개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2006년 10월 23일자로 「개호보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서(지도감독지침)」이 통지
 - 지도는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것을 목적

① 집단지도

- 집단지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고, 서비스마다 사업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실지지도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함

② 실지지도

- 대상사업소의 선정방침
 - 민원이나 신고가 있고, 운영지도가 필요한 사업소

- 신규지정사업소
- 지역 내 대형사업자(같은 서비스를 10개 이상 지정)의 사업소
- 시정촌의 개호급여적정화의 대응(케어플랜분석 등)에서 특이경향이 보인다는 취지의 통보가 있었던 사업장
- 지정정보공표센터로부터 「개호서비스정보의 공표」와 관련된 공표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보가 있었던 사업장

○ 지도에서의 중점사항

- 고령자학대 및 신체구속에 대한 인식의 보급
- 고령자학대방지 및 신체구속금지에 관한 제도이해의 추진
- 고령자학대방지 및 신체구속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추진
- 케어 플랜을 포함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의 추진
- 수가상의 가산에 대한 적정한 청구 추진
- 민원, 사고, 감염증, 식중독 등이 있었던 경우의 적절한 대응
- 개호보험시설 등에서 방화체제 및 만일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소화·피난 통보체제의 확보
- 인력기준의 준수
- 개호예방에 이바지하는 대응 추진
- 기타 개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 추진

○ 운영지도에 있어서는 케어 플랜의 개개의 내용이나 실시방법, 기타에 관여하지 않고, 학대방지나 신체구속금지 및 사고방지와 연결되는 개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프로세스의 중요성의 이해 등에 대해 주목함

○ 매월의 수가청구에 있어서 사업자 스스로 청구에 있어서 불 충분한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고, 청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호수가청구의 지도에 있어

서는 충분히 그 취지를 알리고, 개호수가 기준 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구사업자 등이 스스로 검증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함

③ 감사로의 이행

- 실지지도를 할 때에 학대·구속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허위신청, 악질적인 기준위반, 부정한 개호수가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로 이행하게 됨

○ 감사

- 지정기준의 위반사항을 인식하면서 방치해두거나, 부정청구를 하고 있는 악질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호보험법에 규정한 감독규정의 권한을 행사하여 부적절한 운영과 개호수가의 부적절한 지불을 조기에 정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대상사업소의 선정방침

- 감사는 입수한 각종 정보가 인원, 설비 및 운영기준 등의 악질적인 지정기준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임

②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필요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지정취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함

7. 정책적 시사점

- 일본 제도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정 갱신의 판단이 되는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였음
 - 둘째, 갱신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실제 적용 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함
 - 셋째, 지정 기간 내이라도 지정취소 등 요건을 명시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
 - 넷째, 지정 및 갱신 이후의 사후관리로서 지도 및 감독의 내용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
 - 다섯째, 지역단위에서 장기요양 인프라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제2절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공기관 허가 및 운영체계

1. 기본 현황

- 독일은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각각 다양한 장기요양 운영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인가 및 관리의 경우 해당 주의 관련법 적용을 받음
- 2017년 기준 재가서비스기관 14,050개소
 - 민간 65.8%, 비영리 32.8%, 공공 1.4%
 - 대부분의 센터가 방문요양을 기본으로 방문간호, 재가지원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 특히 양로원, 노인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재가센터가 다수 있음
- 2017년 현재 입소시설은 총 14,480개소
 - 비영리기관 52.7%, 민간기관 42.6%, 공공기관 4.7%로 비영리운영비율이 높음

2. 장기요양기관 허가기준

- 시설 허가조건은 서비스 질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매우 중요. 또한 시설의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 존중 등 고려

- 장기요양기관 허가는 각 지방정부에서 하고, 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는 허가 받은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 각 지방정부는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의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정취소 권한 등 시설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 책임이 있음
 - 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는 수발보험법조에 따라 요양서비스 공급자와 개별적으로 서비스 계약 및 수가보상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 시설 및 기관은 최소한의 질 보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 허가 조건
 - 요양기관은 수발보험법 제71조에 따라 ① 독립채산체 유지 ② 전문수발인력을 통한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어야 함

1) 재가기관

- 시설기준: 특별한 규정 없음
 - 인력기준: 최소 수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전문인력
 - 안전기준(소방기준 등): 특별한 규정 없음

2) 입소시설

① 입소시설 건축최소기준

- 최소 6명이상 노인, 수발대상자,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할 경우 입소시설법 (Heimgesetz)에 따른 최소한의 건축 기준 충족

- 거주공간, 현관, 승강기, 바닥 등 기준 마련

○ 요양시설은 다음 규정이 추가 적용

- 거주공간: 1인 취침공간은 12㎡, 2인 18㎡, 3인 24㎡, 4인 30㎡ 기준. 5인 이상은 안됨
- 공동활동공간: 20㎡규모의 1개
- 치료공간: 시설 외부 및 내부에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 및 치료공간 확보

② 인력기준

○ 시설인력에 대한 최소규정 마련

- 시설인력규정: 운영자, 전문인력에 대한 보조인력 비율, 종사자 보수 및 재교육에 대한 운영자 의무 사항
- 전문자격과 보수교육을 이수한 현장경험이 있는 수발전문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수발보험법에 따른 인력기준범위 합의

- 입소시설의 경우 ① 입소자 수 대비 (정규직으로 환산한) 수발인력과 돌봄인력 비율, ② 수발인력과 돌봄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

○ 각 주별로 합의된 인력기준비율 마련. 시설감독청과 MDK는 시설인력비율 준수여부 감독

③ 안전기준 (소방기준 등): 특별한 관련 기준 없음

3. 장기요양기관 허가절차

- 장기요양기관 승인주체와 승인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각 주마다 상이
 - 베를린 주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재가기관 신청서는 장기요양금고 주협회, 장기요양시설은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

1) 재가기관

- 재가기관 영업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인가는 수발금고 주협회에 서비스 제공 자격여부와 영업 조건을 증명

- 수발금고는 MDK로 하여금 수발기관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가기관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 장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하고 정기적인 수발돌봄 보장
 - 수발 및 가사지원은 수발보험법과 일반계약에 합의한 수발질에 상응
 - 재가기관의 경제적 운영
 - 적합한 인력 (전문수발자, 수발보조인력 등) 종사

- 이러한 조건을 준수한 경우 기관 인가를 하고, 서비스 제공 위탁계약 체결
 - 이 경우 비영리기관과 민간기관을 우선 고려
 - 재가기관 담당구역은 가능한 장거리를 피하도록 요양계약에 규정

- 수발금고는 다음의 경우 재가기관과 계약체결 거절
 - 신청서 제출 2년 이내 계약위반으로 법적으로 해지당한 기관의 소유주 및 운영자인 경우
 - 범죄 등으로 최소 3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규정에 반하여 현금 또는 금전적 급여를 약속하거나 보장한 경우

2) 입소시설

- 운영개시 3개월 전에 시설운영관련 사항을 문서로 지자체의 해당관청에 제출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함.(입소시설법 12조)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활동능력과 종사자 수, 종사자 전문성, 적정의 비용 그리고 질 관리에 힘쓰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가능
- 전문적인 급여제공, 규정에 따른 시설 공간 및 위생시설 유지, 종사자 규정 준수, 계약에 따른 급여 제공의 경우에만 운영 허용 (입소시설법 11조)

- 장기요양기관 승인은 수발금고와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 짐. 수발금고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조건충족여부 확인

-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발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자격 있는 수발인력이 충분히 종사하고 법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특히 건물과 안전조치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등

- 추가로 수발금고에 일반적인 시설구조현황신고서 제출

- 시설 일반 사항, 정원 및 급여내용, 기관 인력 및 현황, 기관 재정 등

4.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 장기요양금고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음

- 질 평가를 실시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관리 의무가 있고, 서비스 질평가를 장기요양금고와 서비스제공자 간 계약에 포함하여 관리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정기적으로 매년 최소 1회, MDK나 전문평가자에 의해 사전통고 없이 평가 받음
 - 장기요양기관의 결함 발견시 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또한 매년 시설감독청의 검사를 통해 시설이 입소자의 거주와 돌봄에 필요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 하는가 확인
 - 건축사항, 수발일지작성, 인력, 위생결함 등

5. 장기요양기관 계약해지 관련사항

- 시설평가 후 나타난 결함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제거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금고 주연합회는 요양급여제공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하며 해당 시설의 결함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즉시 요양계약 해지 가능

- 재가기관에서 심각한 결함을 확인한 경우, 보험자는 MDK의 권고에 따라 임시로 영업 정지

- 계약 해지는 해지 1년 전 수발금고 및 입소시설이 상호 문서로 통보
 - 수발금고 주협회는 시설인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만 해지
 - 수발금고 주협회는 입소시설의 해지를 막기 위하여 책임 수발전문인력에게 적합한 보수교육 및 재교육 이수
 -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발, 돌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

- 수발금고는 급여 제공자가 법적인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방안 모색
 - 경고, 과태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입소시설의 시설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거절된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입소시설이 수급자 또는 수발금고에 대해 심각한 법적,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심각하게 소홀히 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 가능
- 수급자 학대, 부당한 대우,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 가능
- 부당 청구의 경우 경고시정조치

6. 정책적 시사점

○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독일의 수발시설 인허가는 지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인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수발금고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제공
-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는 시설 구조 및 인력 구조에 대한 평가, 수발금고는 이들 시설이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보장된 서비스의 장기적인 제공을 중심으로 평가
- 인허가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통하여 시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발기관의 서비스 적정성 및 제공지속 여부판단
- 일반적으로 수발보험금고는 서비스 제공 계약 해지전 수발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및 기간 제시 등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강구
- 이러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각한 수발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발보험금고는 수발기관과의 서비스 제공 계약 해지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수발보험에서 관리

제3절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 사례 검토

1.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도

- 어린이집은 과거 신고제를 운영하다가 인가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일을 인가업무 처리기한으로 하고 있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은 전체시설, 보육면적, 50인 이상 시설 놀이터 설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설치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반드시 구조별 용도표시, m²단위 표시)
-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 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및 사용승낙서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및 방염검사 확인서
- 설치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하였음. 이 제도에 의하면, 일정한 법률상의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법률상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된 병·의원 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됨

- 제45조에는 제1항 등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연히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3.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과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정기준을 준용해 운영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 또는 단체,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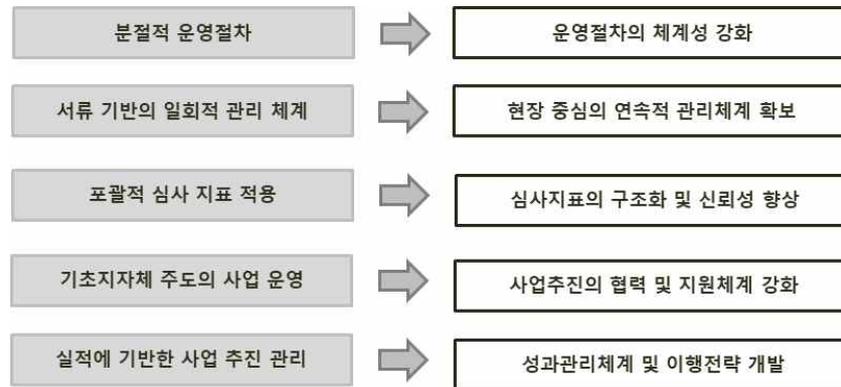
4.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해 볼 수 있는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사후 관리로의 연결을 통한 실효성 확보 중요
 - 제도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를 공개하는 활동 필요
 -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및 정합성 확보 노력
 - 제도 운영을 통한 성과 평가의 중요성 인식

제5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제1절 지정(갱신)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 및 분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분석,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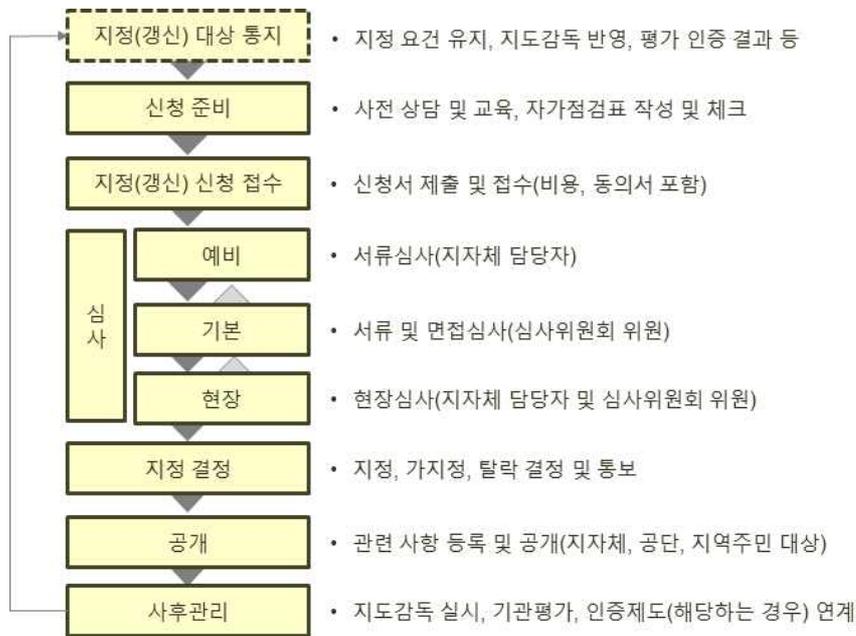


[그림 19] 지정(갱신)제 운영의 기본 방향 정립(패러다임 전환)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안별 검토

1. 지정(갱신)제 운영절차의 체계성 강화

- 현재의 지정(갱신)제 운영절차는 심사와 지정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신청 전후에 요구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서술이 불명확
- 기존 신청과 지정 업무중심의 절차를 그 전후를 포괄하여 사전-도중-사후로 연결되는 연속적 업무절차로 체계화
 -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 절차를 사전-도중-사후로 확대하고 연속적 순환 구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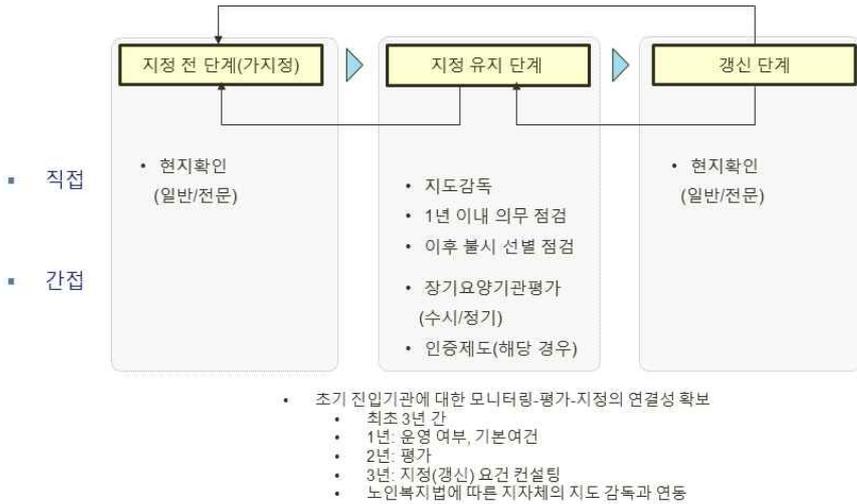


[그림 20]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절차 개선(안)

2. 현장 중심의 연속적 관리체계 확보

- 지정(갱신)제 운영 과정이 주로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장기요양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제한
- 현재의 서류중심 지정(갱신)절차를 장기요양 현장에 기반한 연속적 관리체계로 전환
 - 지정(갱신)제 운영 전반의 현장 중심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①지정 전 단계, ②지정 유지 단계, ③갱신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
 - 지정 전 단계에서는 ‘현지확인’의 심사자에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
 -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사활동이 요구될 경우,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정유지 단계에서는 장기요양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과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기관평가’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마지막으로, 갱신 단계에서는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수행



[그림 21] 장기요양 지정 단계와 갱신단계의 연결성 확보(안)

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의 구조화 및 신뢰성 향상

○ 일반적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사업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심사지표를 구조화하고, 이들 심사지표를 지정 및 갱신제의 각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첫째, 장기요양 지정(갱신)제에 적용할 ‘심사지표의 기본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지정 및 갱신 단계에서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관한 ‘심사지표 적용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
- 둘째, ‘심사지표의 배점 방식’과 관련한 사항으로, ‘필수지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필수지표로 분류하여 관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의 몇 가지 지표를 제안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와 인권 준수
 - ②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 준수 여부

- ③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설비, 안전 기준 준수 여부
 - ④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 ⑤ 재무회계 및 재정운영의 기록 및 관리
 - ⑥ 현저한 부당 또는 부정행위 유무
- 셋째, 지정(갱신)제에 적용할 심사지표가 가능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구조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
 - 기존에 항목과 세부기준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영역과 항목, (세부)지표의 3단계로 계층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안
 -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각 기초지자체는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세부지표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발 및 적용하는 방식
 - 넷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장기요양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경우, 이를 지정(갱신)제 운영에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권장
 - 다섯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이후 갱신 시에 적용할 핵심적인 심사지표를 사전에 선정하여 관리 및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연동 가능한 심사지표가 되어야 하며, 갱신 시점만이 아니라, 신규 지정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4. 지정(갱신)제 사업추진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개별 기초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조례로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존재
- 현재 기초지자체인 시군구가 주도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사업방식을 유지하되, 광역지자체인 시도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직·간접적으로 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우선, ‘보건복지부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구분과 관련하여, 장기요양현장에서 지자체가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심사지표를 내실 있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다음으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가진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갱신)제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역할 분담을 검토

5. 지정(갱신)제 성과관리체계 및 이행전략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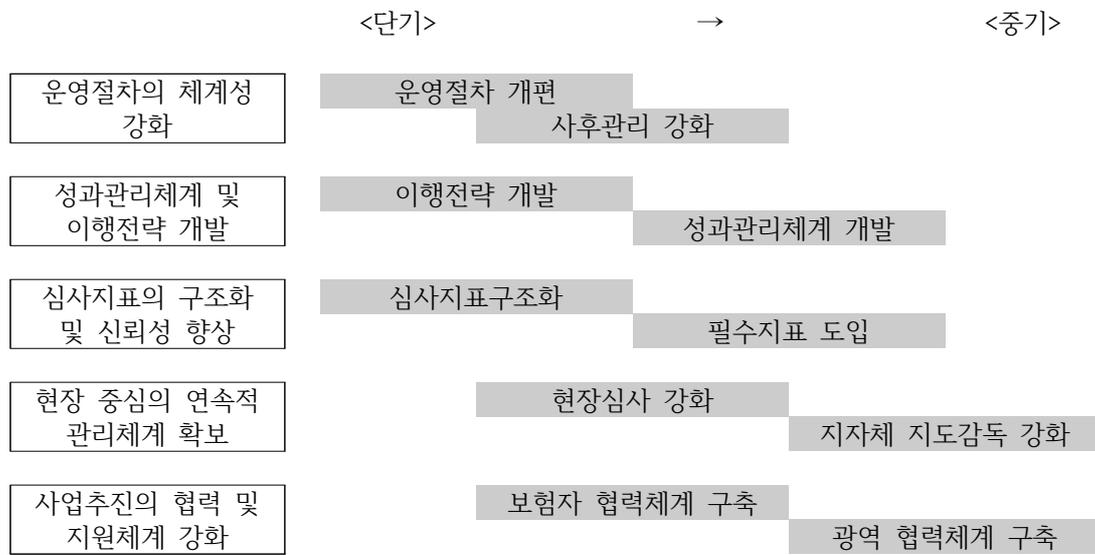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의 목적은 다음 3가지로 요약 가능하며, 이는 제도 운영실적이나 성과와 직결
 - 지자체 관점에서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공급
 - 제공기관 관점에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지역주민 관점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접근성 보장
- 지정(갱신)제 운영에 따른 신규 진입 및 퇴출의 실적(건수)을 관리하면서도, 실제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으로써 기대한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지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 첫째, 장기요양기관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정(갱신)제 운영, 실적 및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 개발 지원
 - 둘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해당 장기요양기관만이 아니라, 타 장기요양기관과 지역사회주민에게 공개
 - 셋째, 성과에 기반한 지정 및 갱신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이행전략 마련
 - 지자체나 기관, 보험자 입장에서 통일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안을 제안

- 현재의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 및 방식을 유지하고, 기관의 개설시점에 따라 갱신 방식을 구분하여 운영
-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 및 방식을 개편하고, 기관의 개설시점에 따른 갱신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 넷째, 갱신에 탈락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편 과제간 우선순위 검토

- 이상에서 검토한 과제를 그 시급성과 중요성, 현장 수용성 및 실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검토
 - 우선, 지정(갱신)제 운영절차를 개편하고 심사지표를 구조화하는 한편, 다가올 갱신주기에 대비하여 이행전략을 사전에 개발
 - 다음으로, 지정 시 현장심사와 이후 사후관리 절차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평가와 연계한 보험자 협력체계를 구축
 - 이어서, 지정(갱신)제 제도 도입의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필수지표를 도입·확대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 단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그림 2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과제별 우선순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수행체계 및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급속히 확충되었으며, 이러한 인프라 기반의 양적 확대는 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 (socialization of long-term care)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형식적인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정하는 등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일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이 스스로 폐업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계속하여 지정 상태가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함. 신규사업 신청자가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아닌 한 국가가 정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시키면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에 유효기한이 없는 상태였음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재가는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었음

- 서비스 시장의 진입요건완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양화전략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확대에 큰 기여를 했지만,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된 성과를 가져왔음(이희승 외, 2016)
 - 입소시설의 경우, 완화된 진입요건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개인시설이 난립하게 되고, 시설의 공급과잉에 따른 기관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됨
 - 영세시설의 난립을 차단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기관이 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의 강화와 서비스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부실기관 등에 대한 퇴출 방안 마련 등 개선 필요성 대두

-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적정하게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장 진입과 운영 과정에 이르는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및 실천현장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옴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결격사유 명시 등 지정요건을 강화(2015.12)한데 이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국무회의 의결(안) 통과, 국회 제출(2017.1)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8.12)에 따라 2019년 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가 강화되고 지정갱신제가 도입됨
 - 행정처분·평가 회피 목적으로 휴폐업을 반복하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 하위 기관 등에 대한 신규 진입 제한 및 퇴출 구조 마련 계기
 - 2018년 기준 신규 개설기관 2,854개 중 과거(2008~2017년) 기관지정이력이 있는 대표자의 수는 784명(약 27.5%), 시설급여 평가 연속 최하위(E등급) 기관 194개소(5.4%), 재가급여 216개소(2.3%)(보건복지부, 2020)
 -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지침·추진체계 등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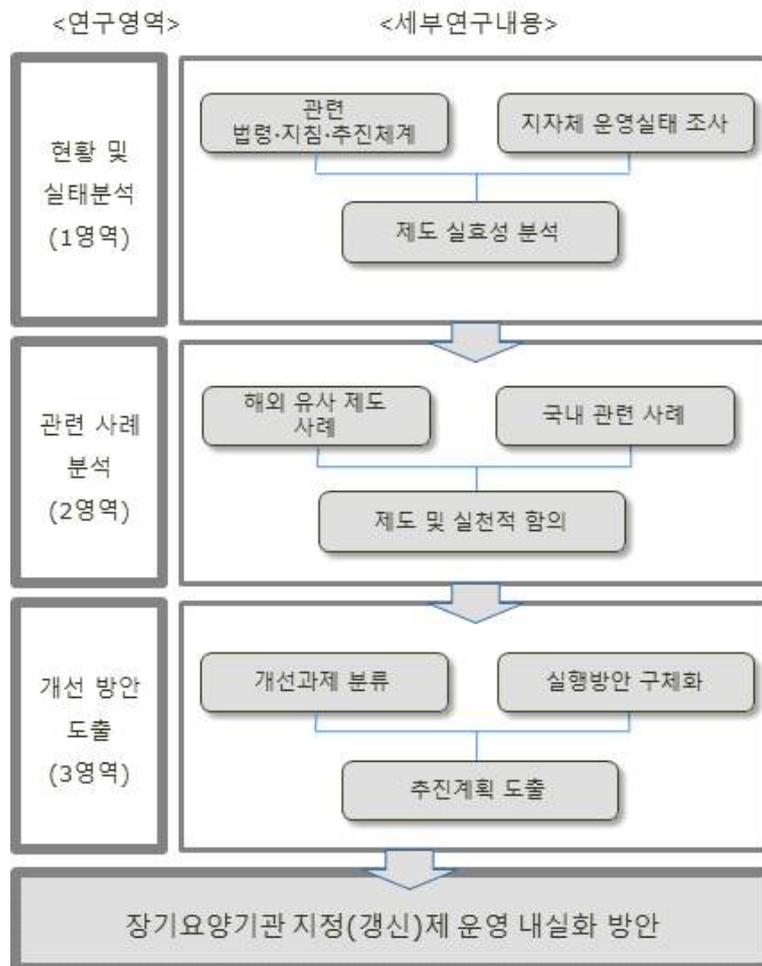
선 방안을 도출하여 지정(갱신)제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이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 행정처분·평가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반복 기관, 최하위 평가등급 기관 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질 담보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진입 제한·퇴출 방안 마련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운영 계획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과 관련한 지정 유효기간의 운영, 추가자료 제출, 현장 심사,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등 관련 법령·지침 등 개선안 마련 및 적용

제2절 연구수행체계 및 내용

1. 연구 수행체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는 총 3개 연구영역과 세부 연구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 1영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및 실태 분석
 - 2영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사례 분석
 - 3영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도출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영역 및 세부 연구내용)

2. 연구 내용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및 실태 분석 (1영역)

- 현행 지정(갱신)제 관련 법령·지침·추진체계의 기본 구조
 -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법·제도 및 규정의 전체적인 관계 및 정합성 파악
 - 정부, 지자체, 보험자, 장기요양기관 등 제도 참여주체 간 역할 및 범위 검토
- 지자체 운영실태 조사
 -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관한 정량 및 정성적 조사 분석
 - 지자체의 실제 지정 심사 과정 및 결과,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파악
- 지역사회 현장의 제도 실효성 및 성과 파악
 - 적정기관 진입 및 부실기관 퇴출 등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효과성
 - 제도 운영을 위한 투입, 과정, 산출의 제 측면에서 성과 검토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사례 분석 (2영역)

- 해외 관련 사례 분석
 - 제도 운영 선험국인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유사 제도의 운영사례와 비교
 - 제도 및 관리, 실천 수준의 운영 과정 및 성과 검토
- 국내 관련 사례 분석
 - 타 제도 및 사업의 운영사례와 비교 검토
 - 지자체 우수 및 제한 사례 발굴 및 비교 검토

○ 국내·외 사례에 대한 종합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함의 제시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도출 (3영역)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 및 분류

- 현행 제도 및 실제 운영결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 도출

- 주요 과제를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

○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구체화

- 지정(갱신)제 관련 법령·지침·추진체계 등에 대한 개선

- 지정(갱신) 조건 및 심사기준, 지정(심사) 절차, 추진체계(지자체, 공단) 등 관련 제도 전반의 현행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

○ 지정(갱신)제 개선안 추진계획 검토

-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 및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추진 계획 검토

3.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 선행연구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등 관련 자료 수집·검토

-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추진체계 자료 수집·검토

○ 해외사례 조사 및 고찰

- 국외(일본, 독일 등)의 관련 제도 및 사업 현황 자료 수집·분석

- 최근 제도개선 및 정책동향 파악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실제 지자체 지정심사 과정 및 결과 등 현행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제도 운영 관계자에 대한 심층집단면접(FGI)를 통한 실태 파악 및 의견 청취

제2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및 실태

제1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기본 구조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분석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관한 현장 심층면접

제2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및 실태

제1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기본 구조

1. 지정(갱신)제 운영 목적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운영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강화’를 추진(보건복지부, 2019)
 - 즉,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측면에서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질적 측면에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질적 수준을 갖춘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향성을 지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3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요건 및 검토 사항을 다음 5가지 사항을 제시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

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보건복지부, 2019)에 따르면, 수급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확충을 그 목적으로 제시



[그림 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홍보 자료

- 이상의 자료를 기초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참여 주체에 따라 양적·질적 측면에서 가지는 운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표 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운영 목적

구 분		양적 측면	질적 측면
장기요양 기관	신규 기관	- 기관 개설 과정에서 제 규정 준수 - 지역 수급 상황을 고려한 진입(개설 여부 및 규모, 급여유형 등 선택)	- 기관 개설 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적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
	기존 기관	- 기관 운영 과정에서 제 규정 준수 - 지역 수급 상황을 고려한 확대 및 조 정(시설 및 정원, 급여유형 등 변동)	- 기관 운영 중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적 수준에 대한 사후 점검
지자체		- 지역단위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적정성, 수급 안정화 책임 - 양적 기준 개발 및 운영 권한 부여	-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 적 수준 유지 및 관리 책임 - 질적 기준 개발 및 운영 권한 부여
지역주민		- 장기요양기관 접근성, 선택권 보장 - 지역에서의 정주성 확보	- 양질의 서비스 이용 -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2. 지정(갱신)제의 운영 절차

1) 지정 절차 근거 및 내용

(1) 지정절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신청에 따라 이를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는 지정여부 결정에 요구되는 사항(5가지)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때 ‘지정 심사위원회’의 개최와 지정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
 - 이와 함께, 지정 절차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정(갱신) 내용 및 절차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내용 및 절차

구 분	종전	변경 ('19.12.12~)
처리 기간	7일	30일
심사 기준	시설·인력 기준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심사 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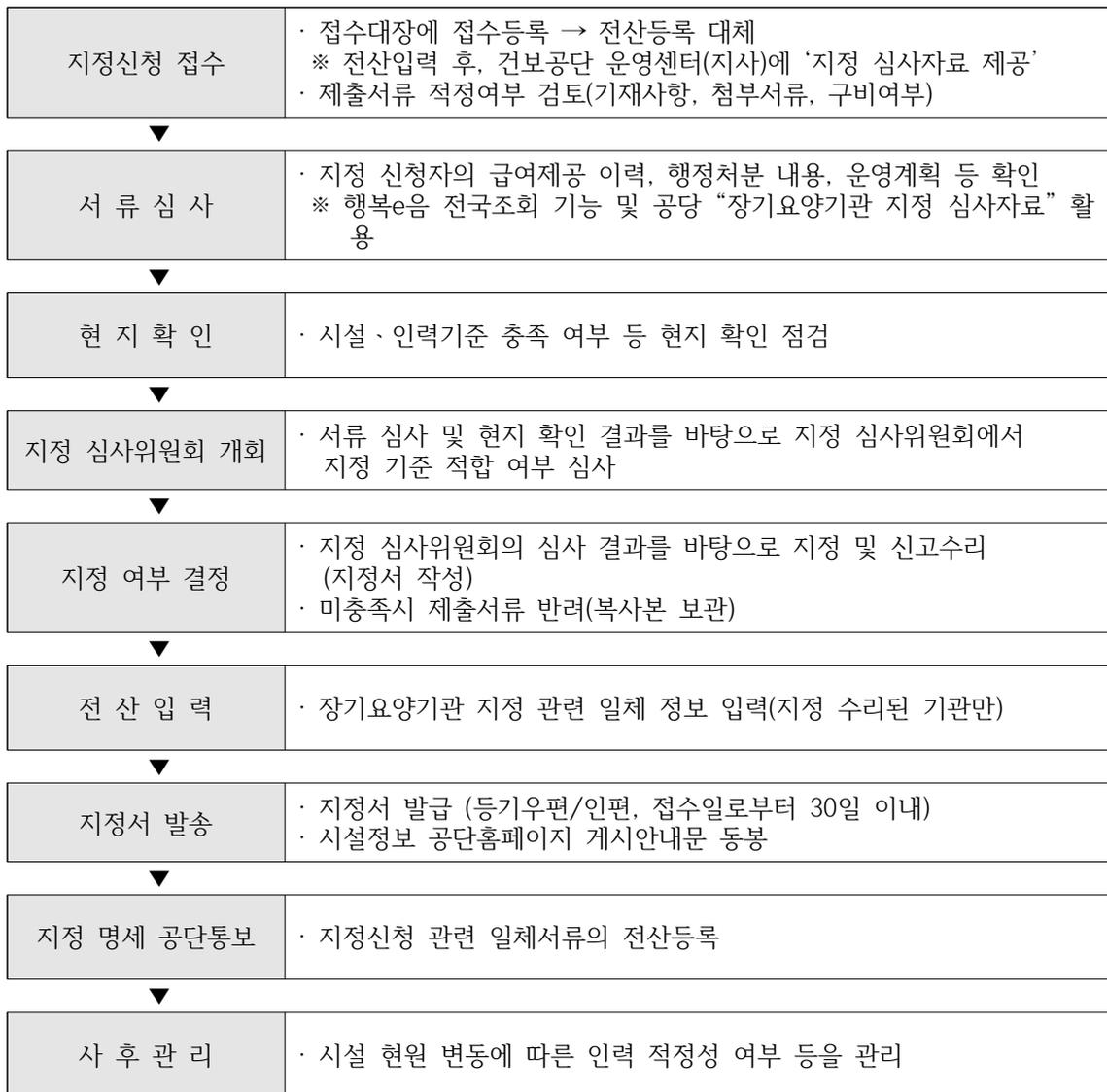
○ 지정 및 갱신 시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
- 유효기간 6년(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 고려)
-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
-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19.12.12)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 →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2) 지정절차 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보건복지부, 2019)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그림 2-2]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 사전상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목적으로 시설 설치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 관련 법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사전에 상담 요청할 수 있음¹⁾
- 지자체별 세부 지정 심사기준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전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지정 신청자가 지정 가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신청접수

- 행복e음 기관 등록 화면에서 ‘지정심사’ 항목으로 등록(지정, 지정심사, 지정거부 구분)
- 지정심사자료 요청
-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급여제공 이력, 현지조사 이력, 평가 이력,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등 건강보험공단이 제공 가능한 심사 자료 문서 회신 요청

○ 서류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현지조사 이력, 평가 이력, 행정처분 내용(기관, 종사자)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지자체별 심사 기준 등

○ 현지확인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지정 심사기준 등을 마련
 - 위원회 구성·임기, 위원장 선출, 제척·회피 사유, 심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별 사정에 맞게 운영규칙 마련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심사 항목 및 세부기준(배점, 채점기준, 커트라인 점수 등) 등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예시 제시)

○ 지정 여부 결정 및 전산입력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 지정서 발송 및 지정 명세 공단 통보

- 지정서 발급,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 사후 관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2) 갱신 절차 근거 및 내용

(1) 갱신 절차 근거

-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에 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4에서다음과 같이 규정

-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갱신 절차 및 내용

○ 갱신절차

- ① (기관 안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안내
- ② (신청서류 접수)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 ③ (서류심사) 지정요건 부합 여부 및 운영실적 심사 등 전수조사
- ④ (현장실사) 평가하위(E), 행정처분, 노인학대 등 발생기관 선별 실사
- ⑤ (종합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종합하여 최종 심사
- ⑥ (결과 통보) 종합심사 결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 ⑦ (구제절차) 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및 심사 거부기관 등 지정취소 대상

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안내

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적용하는 심사지표의 기본 구성 및 내용 (예시)은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19)
 - 기본적으로 5개 항목을 제시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지자체별 심사항목
 - 이하의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 지정 기준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표 2-3> 지정위원회 심사기준(예시)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예시)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체제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 명령 포함) 또는 노인확대, 평가 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 발생 시 :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p>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예시) ></p> <p>△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p> </div> <p><input type="checkbox"/>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p>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p> <p><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p>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p> <p><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p>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 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20점)	<input type="checkbox"/> ex)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예시) 이어야 함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분석

1. 제정 규칙의 명칭과 담당부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실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검색한 결과, 전국 224건의 관련 규칙이 검색(2020.11 기준)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규칙은 대체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 중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이 다수
 -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규칙
 - 다만,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별도의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들을 구분하여 제정한 사례도 있음(예. 경기도 고양시)
- 기초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지원과, 가족지원과, 주민복지실,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아동과, 행복나눔과 등 복지 관련 부서가 주무부서로 관리

2. 자치단체 지정(갱신)제 규칙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자치단체 규칙 제정 현황에 대한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내용과 지역별 특이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4> 자치단체 지정(갱신)제 규칙 제정 내용 검토

구분	공통적인 내용	지역별 특이 사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의 위임된 규칙의 제정임을 명시 -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 지정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명시 -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대상자 선정까지 포함한 경우도 있음. - ○○구청장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2.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이내로 주요 공무원, 복지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한 위촉을 명시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위촉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읍진군 노인·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공무원을 주무부서과장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공단직원을 4급 이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구분	공통적인 내용	지역별 특이 사항
	<p>단체의 대표자</p> <p>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위원의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3년과 1회 연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 임기2년과 2회(또는 1회) 연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개인사유나 비위사실 등을 해촉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참석하기 어려운 사유나 비밀누설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구분	공통적인 내용	지역별 특이 사항
	<p>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대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소집을 7일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구분	공통적인 내용	지역별 특이 사항
심사·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점을 기준으로 의결과 부결을 결정하도록 하고, 부결사유를 명확히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함.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맞춤형돌봄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별도로 제시한 경우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심의는 서비스 수행기관의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군 분류·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 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군 분류에 적합하지 않지만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중 재사정 결과 종결이 필요한 경우 5.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누설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를 두어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함 -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는 담당주무관인 경우와 팀장인 경우가 있음. ■ 간사의 역할을 명시한 경우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구분	공통적인 내용	지역별 특이 사항
수당 등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운영 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규칙 및 심사기준 운영 유형 및 사례

- 자치단체별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규칙 및 심사 기준 사례를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배점을 영역별로 세분화한 지역
 - ②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배점을 세분화하지 않은 지역
 - ③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한 지역
 - ④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하고 감점과 가점을 별도로 구분한 지역
 - ⑤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감점과 배점을 세분화한 지역
 - ⑥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가점 사항을 구체화한 경우

- 이상의 6가지 유형의 차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5>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운영 유형 분류

구분	급여유형별 구분	배점 세분화	가점 구분	감점 구분	가점사항 구체화
1유형	○	○			
2유형	○				
3유형		○			
4유형		○	○	○	
5유형		○		○	
6유형					○

1)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배점을 영역별로 세분화 한 지역

○ 부산 사하구 사례

(1)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구분	심사 항목	배점	비고
서비스 제공능력 (처분이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 처분 또는 평가회피로 추정되는 등의 이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위반(예·결산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	
서비스제공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 15점 - 방문목욕차량보유(방문요양·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복지용구 : 10점 - 방문요양, 방문목욕 : 5점 	15	
서비스중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설치 : 5점, 설치 : 0점 	5	
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 직원교육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수립 	10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구성 및 개최·활용 계획의 적정성 ■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등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시설 재무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 	10	
인력 관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요양보호사와 월급제 계약체결 여부 	10	

체계성 및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보험가입, 퇴직급여 등 직원 처우를 위한 복지제도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종사자 채용 절차(공개모집 여부) 등 인력확보 계획의 적정성 		
합 계		100	

(2) 복지용구

구 분	심사 항목	배 점	비 고
서비스 제공능 력 (처분이 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 제재 처분 또는 평가회피로 추정되는 등의 이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위반(예·결산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30	
서비스 제공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 15점 - 방문목욕차량보유(방문요양·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복지용구 : 10점 - 방문요양, 방문목욕 : 5점 	15	
서비스 중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설치 : 5점, 설치 : 0점 	5	
장기요양 기관 운영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구성 및 개최·활용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용구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용구 관리계획(소독)이 지침에 따라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적정성 		
합 계		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공공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시설 운영여부 및 방문요양급여제공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미해당 시 부적격으로 탈락 재가장기요양기관 불가 - 관내 시설을 운영하며, 방문요양급여 미제공 - 관내 시설을 운영하며,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감축 - 관내 시설을 운영하며,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를 유지 	20	
사업수행능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 확보 - 필수공간 외 별도의 공간 추가 확보 및 계획 • 인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인력 외 사업 담당자 중간관리자 배치 계획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이용 가능한 기관차량 보유 및 계획 -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보유 및 마련 계획 • 유사사업 수행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 관련 사업 수행경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및 시설장의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 • 사업수행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및 시설장의 사업수행의지 • 사업비 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계획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성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사업방법의 수행가능성 	20	
지역사회네트워크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연속적인 협력기관 체계구축 - 최근 3년간 노인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 지역자원 발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	
합 계		100	

2)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배점을 세분화하지 않은 지역

○ 부산 사상구 사례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된 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p> <p>□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감점 13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지정 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div>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감점 10점 	미감점 시 40점
	<p>□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3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div>	

	<input type="checkbox"/>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이상: 10점, 3년미만~1년이상: 5.0점, 1년미만: 0점)	1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총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 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10점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10점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0점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장기요 양 서비스 제공 항목 (15점)	<input type="checkbox"/>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15점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욕차량 보유(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제공), 방문간호: 10점 <input type="checkbox"/>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5점 ※ 2개 이상 급여종류 해당 시 상위점수 부여	15점
서비스 중복 방지 항목(5점)	<input type="checkbox"/> 동일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 하지 않는 경우: 5점 (미설치: 5점, 설치: 0점)	5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총점 : _____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 _____ (서명)		

(2)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70점)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p>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p>△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9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5점</p> <p>△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인 경우: 감점 20점</p> <p>△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5점</p> <p style="padding-left: 20px;">※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30점</p> <p style="padding-left: 20px;">※ 위 감점기준은 지정 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p>△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감점 5점</p> <p>△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감점 10점</p> <p style="padding-left: 20px;">※ 급여제공 제한 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20점</p> </div>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p> <p>△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p> <p>△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p> <p style="padding-left: 20px;">※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 등과 관련된 휴폐업 이력이 없는 경우: 20점</p> </div>	미감 점시 70점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계획 (30점)	
<p style="text-align: center;">※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p>		
총점 : _____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 _____ (서명)		

3)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한 지역

○ 서울마포구 사례

※ 각 위원들의 채점 합계가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지정

항목	세부 기준	배점
	합 계	10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4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 180일 이상, 지정취소, 폐쇄명령, 노인학대 및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 91~180일 ----- 감점 13점 ▶ 업무정지일 31~90일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 30일 이하 ----- 감점 5점 *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만 누적 합산	15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2.5점	5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3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15
	전문성(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 근무경력 3년 이상 ----- 5점 ▶ 근무경력 3년 미만 1년 이상 ----- 3점 ▶ 근무경력 1년 미만 ----- 1점	5
	운영규정, 사업계획,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마련 ----- 3~10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10
	'직원' 급여제공 지침 및 운영규정에 관련된 교육 계획이 적정 수립 여부 ▶ 수립 ----- 2~5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수립 여부 ▶ 수립 ----- 2~5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수립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 여부 ----- 10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 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 3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 계획 ----- 2	10

(15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2
	▶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여부	2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공개모집 여부 등)	2
	▶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4
장기요양서 비스 제공 종류 (10점)	▶ 노인요양시설 ----- 10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7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 5점	10
서비스 중복 방지 (5점)	동일 건물 중복서비스 설치 여부	
	▶ 해당 없을 경우 ----- 5점 ▶ 해당하는 경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 0점	5

4)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하고 감점과 가점을 별도로 구분한 지역

○ 경기도 고양시 사례

▣ 기관명 :

항목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점수 (감점반영후)
	계	100	
가. 설치기관 및 인력기준 적합성 (30점)	1. 관련 법 상 시설 및 인력구성의 적합성	15	
	2.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5	
	3. 대표자 및 시설장의 최근 3년 이내 노인복지기관 근무 경력 (2년 이상 : 5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년 미만 : 1점)	5	
	4. 대표자의 6년 이내 이전 기관 최근 평가결과 (산규설치 또는 A: 5점 / B: 4점 / C: 3점 / D: 2점 / E: 1점 / 평가거부: 0점)	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한 적정 마련 여부	10	
	2.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관련 직원 교육계획 적정수립여부	3	
	3.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2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적정 마련 여부	5	
	2. 사업 계획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 수립	3	
	3.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여부 ※보건의로, 자원봉사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 계획 등	2	
	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 건전성 및 정상 운영 가능 여부(※ 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50%이하 또는 미해당시 : 5점 / 51% ~ 70% : 3점 / 71% ~ 80% : 1점)	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및 적정 계약 여부	3	
	2.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 퇴직 급여제도 운영계획 적정 여부	2	
	3.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여부	2	
	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여부	2	
	5.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2	
	6.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2	
	7.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마. 지자체재량 심사항목 (25점)	1.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제7조 해당 여부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25점)	25	

감점 기준			
감점 계		△40	
바. 설치된 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이력	1.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평가 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업무정지일수 무관)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 ~ 18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 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대표자 포함)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2개월인 경우 : 인당 감점 10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인당 감점 5점	△20	
	2.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20	
가점 기준			
가점 계		3	
사. 가점부 여항목	1. CCTV 설치 유무(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함)	3	
심사위원 의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5)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감점과 배점을 세분화한 지역

○ 경기도 과천시 사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감점 없음(채점 20점)	20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감점 없음(채점 20점)		
	<input type="checkbox"/>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3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① 신규설치 또는 A : 7점 ② B : 6점 ③ C : 5점 ④ D : 4점 ⑤ E : 3점 ⑥ 평가거부 : 0점	7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3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3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3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3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2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2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2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그밖의 심사 항목 (3점)	<input type="checkbox"/> CCTV설치, 소방 안전 보완장치,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법적 의무교육(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 등) 이수 계획 수립 여부	3	
합계 점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6)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없이 배점을 세부화하지 않았지만
가점 사항을 구체화한 경우

○ 광주서구 사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p>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p>	<p>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p>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p>△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20점</p> <p>△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p> <p>△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p> <p>△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p>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p>△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p> <p>△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p> </div>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p> <p>△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p> <p>△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p> <p>△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p> </div>	
<p>서비스 제공 계획의 총실성 및 적절성 (15점)</p>	<p><input type="checkbox"/>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p>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p> <p>①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이상 : 3점</p> <p>②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점</p> <p>③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점</p>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p> <p>① 신규설치 또는 A : 5점 ② B : 4점 ③ C : 3점</p> <p>④ D : 2점 ⑤ E : 1점 ⑥ 평가거부 : 0점</p>	
	<p>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p>	
	<p><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연1회 이상)</p> <p><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p>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	지자체별 심사 항목 및 가점 부여사항	
	<input type="checkbox"/> 동일건물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 중이지 아니할 경우 (법인 및 병설 제외)	
	<input type="checkbox"/> CCTV를 설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소방 안전 보완장치 설치 및 소방차 진입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차입금(부채)이 없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7)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없이 배점을 세분화하고 정성평
가점수를 부여한 경우

○ 경기부천시 사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채점
	합 계			
			100	
	심사자료 : 대표자(법인) 또는 기관,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 대표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5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 총(누계) 180일 이상, 지정취소, 폐쇄 명령, 노인학대 및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 ----- 0점 ▶ 업무정지일 91~180일 ----- 7점 ▶ 업무정지일 31~90일 이하, 시설장 교체 ----- 10점 ▶ 업무정지일 30일 이하 또는 과태료 처분 ----- 15점 ▶ 부당청구 환수, 경고, 개선 명령 ----- 17~19점 ☞ 단일 건으로 2개 이상 행정 제재 시 높은 감점점수 적용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감점점수 적용 * 감점 기준은 신청일 또는 갱신신청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 합산하여 총점에서 감점 (해당 사항 없을 경우 : 20점)		20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해당 사항 없을 경우 :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0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2점		5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 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 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 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8점 ☞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해당 사항 없을 경우 : 15점)		15	
	공익성 및 전문성 등			
	신규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업무 경력) (3년 이상 : 5점 1년 이상~3년 미만 : 3점 없음~1년 미만 : 1점)	5	
	갱신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에 대한 평가결과 ① A : 5점 ② B : 4점 ③ C : 3점 ④ D : 2점 ⑤ E : 1점 ⑥ 평가 거부 : 0점 ※ 2회 연속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가능	5	
2. 재무 건전성 (10점)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차입금신고서 임대차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자가 : 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① 부채비율 50%이하 (10점) ② 부채비율 51%~70% (5점) ③ 부채비율 71%~80% (1점) <input type="checkbox"/> 자가 외 : 전세권설정 및 사용권 확보 : 10점	10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배점	채점
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4점)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사업계획,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0~5점	5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에 관련된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0~5점	5	
	<input type="checkbox"/> 수요자(입소자) 등을 위한 건강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여부 ----- 0~2점	2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 처리계획 수립 여부 ----- 0~2점	2	
4.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활용 등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0~3점	3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0~3점	3	
	<input type="checkbox"/> 지역 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0~2점	2	
	<input type="checkbox"/>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 (ex : 5년 이하 적립형이 적정, 5년 이상 연금보험 가입은 부적정) -- 0~2점	2	
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0~3점	3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운영 계획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0~3점	3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 마련 및 적정 여부 ----- 0~2점	2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공개모집 여부 등) -- 0~2점	2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 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0~2점	2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 0~2점	2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 0~2점	2		
6. 정성 평가 (5점)		5	
<p>※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단 복지용구 사업소일 경우 1, 2항목만 심사하며 심사점수의 합이 51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지정신청 시 「건축법 시행령」제47조(방화)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최종 심사결과 심사표에 의한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적합대상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 판단결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이건 제출 시 그 이유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p>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8) 기타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지표 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적용하고 있는 지역

[별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기준 평가항목

(제 3조 관련)

번호	항목
1	<p>[소화설비 부분] 소화설비는 화재대비에 취약한 야간시간 근무자의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호스릴 육내소화전 설치 나. 주방화재용 소화기 (K급) 비치 - 주방배치 소화기 최소 이상 확인</p>
2	<p>[배연창 부분] 화재발생 시 입소노인의 자력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호실의 창문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실내로의 급격한 연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연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각 호실 창문 배연창 설치 나. 주방 창문 배연창 설치</p>
3	<p>[각 호실 방화구획 설치] 침실내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화재 인지능력이 약한 입소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각 호실이 방화구획 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각 호실 방화구획에 대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및 시공사진 나. 각 호실 방화문 설치 (일반문과 중복설치 가능) 다. 각 호실 방화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자동단힘 기능 설치 라. 방화문의 단힘에 장애가 되는 설치물이 없어야 함</p>

- 그밖에도 지자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존재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른 점수 차이 부여
- 심사지표 외에 심사위원의견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층에 중복서비스 설치 제한을 두는 등 기관 간 분표 고려
- CCTV, 화재예방 등 설비, 설치 층수 제한 등 기관 설비에 관한 요건 추가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초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도입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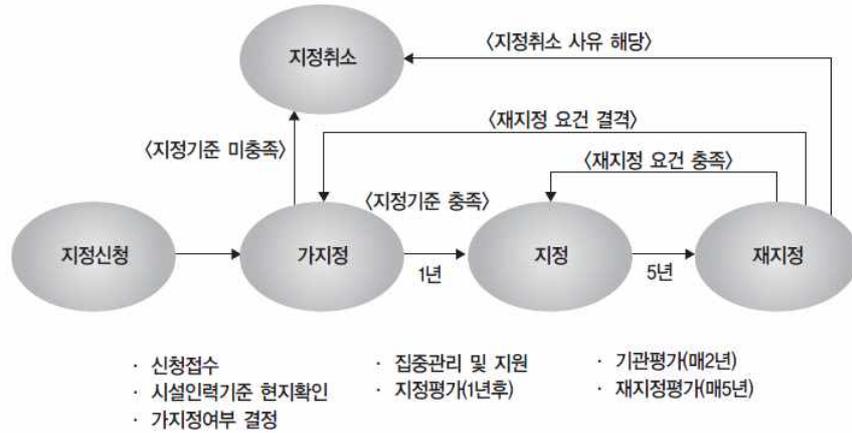
- 2013년 장기요양급여 부담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김욱, 서동민, 문성현, 이용재, 최인덕)연구에서 세부 과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의 도입(1-2-2)을 제안²⁾
 -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을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 즉, 지정에 있어서 유효기간을 사전에 설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인력 및 시설기준의 변화, 설비 및 서비스의 질, 급여청구경향, 기관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시 지정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함
 -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 지정 이후, 매 5년마다 해당기관의 인력 및 시설, 서비스 수준, 급여비용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다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지정을 갱신 받도록 하는 방법
 - 평가 결과 갱신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다면, 그 사유가 심각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경미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에 대한 이행합의서 등을 받고 조건부로 재지정을 하거나, 또는 가지정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1년간의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 장기요양기관 가지정제도와 지정갱신제도를 단계적으로 또는 함께 도입한다면, 무자격 장기요양기관의 시장진입 방지와 자연스러운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김욱, 서동민, 문성현, 이용재, 최인덕. (2013). 장기요양급여 부담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백석대학교.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개편을 위해 제안한 가지정제도 및 지정갱신제도의 업무처리흐름을 간략히 도식화



자료: 김욱, 서동민, 문성현, 이용재, 최인덕. (2013). 장기요양급여 부담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백석대학교.

[그림 2-3] 장기요양기관 가지정제도 및 지정갱신제도 운영 흐름도

○ 그동안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허가제 또는 계약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함께 단점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

- 우선, ‘허가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 관청에 허가 제출 및 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고제 또는 지정제와는 구분
 - 지역별 공급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급여종류별 공급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 강화로 기관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 다음으로 ‘계약제’는 보험자가 시군구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제공범위 및 수가 등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한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을 선별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부담청구 및 시설 안전성 미달 등 부도덕 또는 부실 기관의 퇴출 등 보험자의 관리 및 견

제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 반면, 계약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공급에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 시간, 인력, 비용 등의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단점

-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지정 및 지정갱신제도’는 현재의 지정제를 유지하면서도, 이상에서 정리한 허가제와 계약제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중간 안으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

2. 지정제 실효성 강화 논의

-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재검토하고 절차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³⁾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의 강화방안으로 다음을 제안
 - 리더십의 경우 안전 및 위험관리, 질관리에 대한 책임성, 타 종사자들과의 소통능력, 이용자 및 보호자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대표자 혹은 시설장의 관련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력(실무경력 포함) 및 행정처분이력을 점검을 제안
 - 조직외부의 파트너십과 조직내부의 자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자원관리능력이 있는 지도 진입요건으로 검토
 -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인력관리에 가치를 두고 기관 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검토
 - 직원, 이용자, 이용자들의 보호자, 기관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집중한 전략 및 정책들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

3) 이희승, 이호용, 문용필, 안윤균. (2016).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측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확인사항으로 다음을 제시

<표 2-6> 내용적 측면의 실효성 강화방안

	EFQM 모형의 적용	확인사항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및 위험관리, 질관리에 대한 책임성 •타 종사자들과의 소통능력 •이용자 및 이용자 보호자들의 수요파악 및 대응능력 •정기적인 직원업무성과 측정 및 기록 등 조직관리 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혹은 시설장의 행정제재처분이력 2. 대표자 혹은 시설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행정제재처분이력 3. 종사자의 행정제재처분이력 4. 대표자 혹은 시설장의 부당청구이력 5. 종사자의 부당청구이력 6. 대표자 혹은 시설장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경력, 장기요양기관 혹은 의료 및 사회서비스 기관운영 경력(실무경력포함) 7. 법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외 타 사회복지사업 실적 혹은 의료사업 실적 8. 기관운영이념의 공익성 9.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기관(법인)의 공익성 10. 신규지정신청 시 연수과정 신설 후 기관시설장 혹은 대표자의 연수 참여 여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비전, 가치, 철학, 목표의 명문화 •조직관리 시스템 개발 및 개선능력 •사업장에 있어 종사자 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가 이를 이해하도록 장려하는 노력 •자체평가 및 기관평가 결과를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규정(11가지필수규정)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4)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5)서비스제공자의배상책임, 면책범위에관한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7)인력관리규정에 관한사항 8)보수에 관한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2.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3. 급여자공지침교육계획(8종지침)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사자윤리지침 2)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응급상황대응지침 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노인학대예방 및 관리지침 4. 운영규정교육 계획 수립

		5.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계획 수립 6. 응급상황 대응계획 수립 7. 재난대피계획 등 위험관리계획 수립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 • 시설 홍보 및 관련 자료의 지속적 관리 • 주민센터, 구청, 시청 및 관련 공공기관(소방, 위생)과의 협력 • 자금관리가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충당되고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 • 제공되는 서비스가 매뉴얼에 따라 계획된 대로 제공되도록 하는 노력 	1. 예산조달계획(자산현황서, 손해보험증서사본, 회계장부일부등) 2. 지역사회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주체와의 연계계획 3. 이용자 확보계획 4. 급여제공계획 5. 직원 교육 예산 적정 배정여부 6. 타 계획이 예산계획에 적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채용을 위한 공개적 공고 및 명문화된 인사규정에 따르는 채용이 이루어짐 • 포상제도의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내용 등의 별도 규정 마련 노력 • 업무할당, 상호점검, 교육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직원의 사기 및 동기 부여 고취 노력 • 업무범위와 책임소개를 명확히 하는 업무분장 여부 • 직원의 아이디어 수용 능력 • 직원고충사항에 대한 대응체계 	1. 요양인력 중 예상 상근인력 비율 2. 요양인력의 임금수준 3. 요양인력의 4대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가입비율 4. 신규요양인력 확보방안 5. 신규요양인력 교육계획 6. 퇴직연금 제도 운영여부

자료: 이희승, 이호용, 문용필, 안윤균. (2016).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

- 현재 지자체의 지정권한 및 절차운영은 그대로 두고,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청구자격을 부과하고 이를 갱신하는 방식
- 지자체가 지정권한을 가지고, 독립 민간인증기구에게 지정신청업무 등을 위

탁하는 방식

- 지자체와 보험자의 협력체계구축이라는 방안으로, 현재의 지정제를 그대로 두고 이를 내용과 절차 면에서 보완하는 방식
- 세부 방안으로 위탁방식과 공통팀 구성 및 공동 사실확인 작업 방식을 제안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공식화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 중 하나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제시(보건복지부, 2018)
-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선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 정비’추진을 발표
- 계획에서 밝힌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절차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추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도 운영 방향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질과 연계한 지정갱신제 도입’에 방점
- 장기요양기관 설치·인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장기요양보험 운영 관련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제도를 정비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은 지정제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제로 운영 중
 - 장기요양법인 도입 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설치 주체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지자체 장이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급여제공 이력, 지역별 기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 지정
- 부채상환·이자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 예방을 위해 시설설치 시의 부채허용기준 강화 검토

- 기존 진입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하는 지정갱신제 도입 검토

○ 당시 지정갱신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사주체는 지정 주체인 시군구가 담당
-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갱신요건은 지정요건 준수여부, 시설장·종사인력 결격사유, 기관 운영실적, 수급자 학대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행정처분 사후조치 여부 등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관한 현장 심층면접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자료 및 사례를 수집, 사업 및 업무 현황, 성과 및 과제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 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에서 사용한 질문항목 및 응답 내용은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의견 수집만이 아니라, 이후 연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지 및 조사문항의 개발에도 활용

○ 대상집단 및 참여자

- 심층면접조사의 조사 대상집단은 크게 2개 그룹으로 구분, 총 10명
 - 장기요양기관 제공자 단체⁴⁾
 - 지정(갱신)제 담당 지자체 공무원⁵⁾

<표 2-7> FGI 참석자

집단	번호	직위	현 근무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 기관 (A)	A-1	회장	***협회
	A-2	회장	***협회
	A-3	이사	***협회
지자체 담당공무원(B)	B-1	담당	***지자체
	B-2	담당	***지자체
	B-3	담당	***지자체
	B-4	담당	***지자체
	B-5	담당	***지자체
	B-6	담당	***지자체
	B-7	담당	***지자체

4) 장기요양기관 단체로 대표적인 4개 협회를 선정하였으나, 1개 협회는 내부 사정으로 불참

5) 공식 심층면접 수행 전, 간략히 방문면담을 실시한 지자체 및 담당자는 제외

○ 심층면접은 조사내용에 따라 총 11영역 32개 질문 항목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표 2-8> 심층면접조사(FGI) 인터뷰 영역 및 질문 항목

항목	질문 항목
1. 기관(귀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기관의 운영 주체 및 목적, 주요 경과 • 1.2. 주요 현황 • 1.3. 주요 수행 사업 유형과 내용 • 1.4. 재정 및 기타 지원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이하, 지정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지정제의 도입 배경 • 2.2. 지정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 • 2.3. 지정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공감 정도
3. 지정제의 ‘업무절차’ 중 ‘지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지정신청접수와 서류심사 등 각 단계의 적절성 • 3.2. 전반적인 흐름의 적절성 • 3.3. 개선사항(추가나 보완, 삭제나 변경의 필요성)
4. 지정제의 ‘사전상담’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사전상담의 필요성 • 4.2. 사전상담의 실효성 • 4.3. 개선사항
5. 지정제의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필요성 • 5.2. 실제 운영 및 과제 • 5.3. 개선사항
6. 지정제의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 지정 심사위원회의 필요성 • 6.2. 실제 운영 및 과제 • 6.3. 개선사항
7. 지정제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 심사 항목 *타당성(내용), 신뢰성(결과), 정밀도(측정) • 7.2. 세부 기준 • 7.3. 배점, 채점기준, 커트라인 점수 등 • 7.4. 실제 운영 상의 성과와 과제 • 7.5. 개선사항
8. 향후 ‘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 갱신제 운영의 필요성 • 8.2. 갱신제 적용의 성과와 문제(예상되는) • 8.3. 갱신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의견)
9. 그밖에 지정(갱신)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기타 의견

2. 장기요양기관 제공자 단체

1) 지정갱신제의 도입 취지 동의

- 지정갱신제가 여러 이슈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퇴출기제로서 작동되는 것에 대해 동의

- 일부의 부실 제공기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
 - “지정갱신제 도입 목적은 부실한 기관에 대한 퇴출이 1순위가 아닐까 현장에서 생각하죠. 여태까지도 E등급 계속 받는 곳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이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수가 잘못하다보니 법은 촘촘하게 현장을 조여 오고, 잘하는 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A-1)

2) 기존기관과 신규기관의 형평성 문제 지적

- 지정제는 그 기준이 관대한 반면에 갱신제도는 엄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지정갱신제가 기존 공급자에 대한 규제의 수준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신규기관에 대한 규제는 낮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사실은 지정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갱신제도는 엄격한 상황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수를 한다든지 변화를 주는 기관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역 총량제만 봐도 정부가 그동안 너무나 방대하게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들어왔잖아요. 처음부터 문을 좀 좁혀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2)
 - “신규기관이 현재 지정갱신제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신규기관은 확대 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해당이 안돼요. 그러다보니 신규기관과 기존기관의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는 거예요. 기존기관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규는 다 허가해주는 거예요. 원래 지정갱신제를 할 때 신규기관의 진입도 억제하려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목적

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A-1)

3) 신규기관에 대한 지정제 적용 기준 강화 필요

- 신규기관에 대한 낮은 규제수준은 지정갱신제의 도입 취지에도 위배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신규 기관에 적용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편하고 진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 "신규기관은 지금도 계속 개업하고 있어요. 기관수를 적절히 유지하겠다는 의도는 없어지고, 현재 운영하는 기관만 손해보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서류가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신규 기관이 모두 개업하고 있고,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신규 기관도 볼 수 있는 지침을 넣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행하면, 수가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일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A-1)
 - "조건을 좀 강화시켜서 신규기관만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여 주신 자료처럼 기존 기관들만 볼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지 않고, 신규기관도 자기 기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신규 기관은 회피 이력이 전혀 없을 것이고, 이력이 없으니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감점 점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규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A-2)

4) 지정(갱신)제 운영의 실효성 우려

- 신규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를 민간 영리컨설팅 업체들이 대행하거나 제출한 내용에 차이가 없는 등 기초지자체 심의과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
 - "○○신문에서 기관을 컨설팅해주는 업자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보셨나요? 컨설팅 업체들이 편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작은 문제 하나에 대처를 하지 못해서 등급에 변동이 있는 건데, 컨설팅은 너무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규정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 돈만 제대로 주면 서류 준비해줍니다. 그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정제가 도입되는 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면, 과연 지정

제를 왜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아해지는 거죠.” (A-2)

- 국가가 표준으로 제공하는 기준과 같은 규제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 갱신제가 실행되면, 모든 기관을 다 받아들이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정심사 서류에 교육, 경력 같은 것은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준비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돈 몇 백만원 주면, 깔끔하게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줘요. 20~30년 경력이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해 주는게 있어요. 그분 들은 그걸 가지고 지정심사를 받겠죠.” (A-1)

5) 심사지표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필요

- 지정(갱신)제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심사지표가 정성적인 측면이 많아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량적인 지표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지정제 심사 기준을 보면,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운영위원’이 50점이에요. 지정 할 때 이 부분만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전문성’처럼 모호한 기준 말고, ‘방문간호 시설장은 간호경력 3년 이상, 간호조무사는 5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한다.’처럼 구체적으로 넣으면 폭이 많이 좁아지죠.” (A-3)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시설장을 구분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제안

- “시설장하고 대표자는 별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해요. 왜냐하면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만약 지정제를 하려면 그러한 사람들의 진입을 강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기존 사회복지 정신, 마인드로 들어온 사람들은 운영하기 힘들거예요. 사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판세를 이끄는데, 지금 지정제나 갱신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어 보여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갱신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A-2)
- “만약 20점을 준다면, 대표자 가점을 10점으로 두고, 시설장 가점을 10점으로 뒀을 때,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1)

- “시설 대표자 되기가 너무 쉬워요. 사회복지자격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 까
쉽죠. 새로운 진입 기관에게 50시간 정도의 전문 교육을 받게 해서 전문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A-2)
- “20년, 30년 경력 있는 시설장 얹혀봐도 대표자의 마인드가 사업적 성향에만 치우
쳐 있다면 개선될 수 없죠. 진입하거나, 지정할 때 대표자나 시설장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지 말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곳이니 만큼 대표자의 마인드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기본 소양을 보자는
겁니다. 심사 기준표에 의하면 기본 소양이 근무경력이에요. 근무 경력이 몇 년이
냐에 따라 가점이 붙을 수 있는 거죠.” (A-3)

6)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자주 인사가 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며, 따라서 지정제와 관련된 행정서류 접수 및 처리 등
의 사항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
 - “지정제를 할 때, 최소한 그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 정도는 설명을 해주어야 해요.
공무원도 6개월마다 바뀌어버리니까...” (A-2)
 - “만약, 공무원이 새로 인사발령 받아서 주무관으로 왔어요. 사전 상담을 위해 인적
자원들이 구성 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얘기만 잠깐 나눈 걸로 ‘상담했습니다.’ 짜인 해서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A-1)

7)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

- 일부 지자체의 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낮은 위
원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
 -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협회 임원 중 한사람이 모 지자체에 위원으로
가있어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 현장을 너무 모르시고, 소유 위주의 평가를 하더
라고요...반면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협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준수 했는지 안했는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가요. 공
무원들이 잡아내지 못한 것들을 장애인 협회 분들이 수정하고, 캐치하고 그러거든

요...사실 이용자 대표라고 하고 오지만,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서 추천 받아서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하기가 좀 그래요. 이 분들이 와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A-2)

- "인증심사나 건보공단 평가를 할 때 장기요양기관 전문가는 항상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렇게 때문에 서울형 인증 같은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평가지침에 따라서 재차 교육을 시키잖아요. 각 지역에서 뽑아서 심사기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지역구와 겹치지 않게 파견을 하는 거죠...그런데 심사위원회는 오히려 지역사회 연관성이 더 강할 것 같아요." (A-3)

8) 지역 간 차이가 있는 심사기준에 대한 정비 필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지표 선정 및 운영에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인접 지자체 간에도 당락여부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통일성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 "현재 지정제로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자체 별로 기준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통일된 심사기준을 제시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배점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똑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어디서는 해당되고 어디서는 불합격이라는 게 말이 안돼요." (A-3)
 - "마지막 부분에 '지자체별 심사항목'이라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지자체별 심사항목을 가점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각 지자체마다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는 재난훈련을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에서 재난 훈련을 실행하는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거죠." (A-3)

9) 지역단위의 장기요양인프라 수급관리체계 필요

- 장기요양기관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
 - "장기요양에서 총량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량제를 두어서 지역과 지

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각종 구성이나 요건이 먼저 선행된다면, 개인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정제에 대한 규정을 관대하게 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2)

- “통일된 지침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지자체에서도 애초에 법적기준에 맞춰서 요건을 따지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준한 것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해요.” (A-3)

3. 지자체 지정(갱신) 업무 담당자

1) 지정(갱신)제 도입의 필요성 동의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정(갱신)제 도입의 이유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기존 제공기관들이 허가제 하에서 공적인 개입을 사실상 받지 않고 쉽게 시장에 진입했던 것과 달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만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의 최소한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함
- “지정제의 취지는 그냥 설치신고를 하던 것을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신청자의 낮은 사업 이해도 문제

-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대부분 장기요양현장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민간의 컨설팅 업체에 모든 절차를 맡기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사업신청자들이 장기요양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도 잘 준비하지 못해요. 더욱이 대부분의 기관이 모든 지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컨설팅업체에게 모든 과정을 맡기는 실정이에요. 서류 접수도 대행해서 최종 지정서까지 받아주는데 규모 있는 요양원

은 3천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1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3) 서류 접수 및 점검 업무 부담

○ 지정(갱신)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업무 변화는 서류행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며, 특히 제출된 서류들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일일이 점검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함

- “행정업무가 과다합니다. 제가 컨설팅업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계속 서류에서 수정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서류 심사 시 재촉해서 받아줘야 합니다.....요양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30일 이내에 자료 보완이나 자료요청을 하고 회신을 받는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1개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 설치 시 민원인들은 접수일로 생각하는데 서류가 보완되어서 등록되어야 접수가 되는 거죠.”
- “지자체 담당자가 온전히 컨설팅처럼 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계속되는 연락과 이메일 등을 거부할 수 없어요.”

4) 지정 신청 시점의 문제와 지정거부의 어려움

○ 지정(갱신)제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신청자가 이미 시설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을 거부·탈락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법적 소송이나 민원제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신청접수 시부터 담당자가 붙어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개인 재산을 투입한 것이 크므로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부담이 있어요. 안될 수는 없고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재산상실로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소송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이 있고 규정의 충족이나 미충족의 기준에 논란이 있겠지요.”
- “결국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임대계약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부담이 되는 것은 것이 사실입니다.”

5) 현지조사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자체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설비와 건축에 관한 내용 등 전문적인 사항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지조사 및 점검 활동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현지 조사 시 소방전기, 가스, 장애인 관련 건축법 등을 파악하여야하나 현실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에요. 현지조사 매뉴얼이 복합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에 질문을 하면 요양원이면 거기에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6) 형식적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가 부적절한 기관을 가려내고, 지정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지정을 인정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
 - “심사위원회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통과시켜줍니다. 서류를 다 만져서 가지고 오면 규정이 빠진 것을 다 써서 보내고.....그마저 안 해오기도 하지만 과정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 거죠. 10회의 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지정거부가 된 것은 2개 기관만 거부했어요. 거의 100%, 95% 정도는 되는 셈이에요. 신청자 입장에서도 떨어지면 다음 달에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7) 지자체 간 심사결과의 차이 발생

- 지정(갱신)제에 적용하는 심사지표를 기초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에 따라 또는 지자체에 따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통과 여부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
 - “심사위원들 간의 심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같은 도시 내에서도 어느 구에서는 통과하고 어느 구에서는 탈락하니까.....”
 -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과된 서류라고 반발해요. 부적합이라고 반려되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인접한 지역이라면 결과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 “우리 구청은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이나 시설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것은 유무는 가채점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구청에서 일괄 점수를 제시해요.”

8) 신청 제한과 발표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희망

- 탈락한 기관들의 신청 제한이 없어 반복적인 신청과 서류의 미비에 따른 점검 등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청 제한이나 발표심사 등 지정(갱신) 업무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
 - “예를 들어, 한번 탈락하면 6개월 이상 이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신청자가 직접 발표를 하도록 하면, 서류도 보겠지만 마인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9) 기관 대표자와 시설장 사전 교육 의무화 요구

- 지자체 공무원들은 신규 시설의 관리자인 대표와 시설장이 사전에 반드시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이용자 중심주의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등의 자세와 사업 실시의 준법성 등을 의무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
 -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지정제 승인 받기 전과 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획이나 운영규정 등에 대한 필수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지정관련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사업운영이나 마인드, 전문성이 있어야 해요.”

10) 지정 이후 사후관리활동의 강화 필요

- 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제공기관들이 이를 실제로 준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할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점검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 “심사통과가 되어도 사업계획에서 실제대로 기관을 운영할지는 의문이 들어요.”

-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봅니다. 통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상이에요.”
- “본인들이 제출한 것 등에 대해 준수하도록 사후관리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3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현황 설문조사

-
- 제1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조사 개요
 -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제5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제3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현황 설문조사

제1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황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 조사 목적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 관련 현황과 성과, 문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지자체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전국 228개 지자체)
 - 각 지자체당 담당자(공무원) 1명, 심사위원회 위원 2명 할당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
 - 심사위원회 위원 대상 설문배포는 해당 지자체 협조

○ 조사 기간

- 2020.10.22 ~ 11.13(약 3주간 실시)

2. 조사 항목 및 내용

○ 조사 항목 및 내용

- 지정(갱신)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성과 인식
 - 현재 지정(갱신)제의 전반적 운영 적절성 평가 및 평가이유
-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공무원, 심사위원회 위원)수
 - 지정(갱신)관련 업무 처리건수 및 심사위원회 운영 횟수
 - 시설/재가 및 급여유형별 업무 처리건수
 - 지정거부 사례 및 이유
 -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의 상대적인 난이도
 -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애로사항
 - 지정절차 전반적 및 각 단계별 적절성 평가 (9단계)
 -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개선사항 (주관식 기입)
-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내용·형식의 전반적인 적절성 평가
 -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주관식 기입)
-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완화 및 강화 의견 및 이유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 심사항목 및 기준 개선(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 향후 지자체의 지정(갱신)제 운영 계획 및 예상 물량

- 응답자 특성

- 지역,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자격증, 직급, 관련 경력 등

<표 3-1> 조사 항목 및 내용

구분	세부 조사 내용	비고
지정(갱신)제 전반적 인식	·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성과 인식	공통
	· 현재 지정(갱신)제의 전반적 운영 적절성 평가 및 평가이유	공통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공무원, 심사위원회 위원) 수	지자체공무원
	· 지정(갱신)관련 업무 처리건수 및 심사위원회 운영 횟수	지자체공무원
	· 시설/재가 및 급여유형별 업무 처리건수	지자체공무원
	· 지정거부 사례 및 이유	지자체공무원
	·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의 상대적인 난이도	지자체공무원
	·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애로사항	공통
	· 지정절차 전반적 및 각 단계별 적절성 평가 (9단계)	공통
	· 지정(갱신)제 운영 관련 개선사항 (주관식 기입)	지자체공무원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내용/형식 의 전반적인 적절성 평가	공통
	·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공통
	·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주관식 기입)	공통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완화 및 강화 의견 및 이유	공통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공통
	· 심사항목 및 기준 개선(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공통
	·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공통
	· 향후 지자체의 지정(갱신)제 운영 계획 및 예상 물량	지자체공무원
응답자 특성	· 지역,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자격증, 직급, 관련 경력 등	공통

3. 응답자 현황

1) 응답자 수

- 설문 응답자수는 총 362명으로, 이중 지자체 담당자 132명,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230명이 참여

2) 응답자 지역별 구성비

- 설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수도권, 광역시/도, 권역)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2> 지역별 응답 구성비

지역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응답자 수 (명)	구성비 (%)
수도권	수도권	39	29.5	78	33.9
	비수도권	93	70.5	152	66.1
광역시 /도	광역시 단위	42	31.8	91	39.6
	도 단위	90	68.2	139	60.4
권역	수도권	39	29.5	78	33.9
	대전·충청권	18	13.6	25	10.9
	부산·울산·경남권	19	14.4	50	21.7
	대구·경북권	18	13.6	29	12.6
	광주·전라권	27	20.5	37	16.1
	강원·제주권	11	8.3	11	4.8
전체		132	100.0	230	100.0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⁶⁾ 공감도 및 실제 성과

1)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에 대한 인식

① 지자체 담당자

○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의 도입.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그 보다는 좀 더 낮은 것으로 평가함

-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의 전체 항목 평균은 3.07, 실제 성과는 평균 2.80

○ 타 항목대비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에 대한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함

- (취지 공감도)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순임

- (실제 성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순임

<표 3-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지자체 담당자)

구분	취지 공감도	실제 성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11	2.8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3.10	2.86
우수 장기요양기관의 육성 지원	2.95	2.70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방지	3.37	3.03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3.27	2.89
지역의 균형 있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2.78	2.58
장기요양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 방지	2.92	2.69
전체 항목 평균	3.07	2.80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에 있음(보건복지부, 2019)



[그림 3-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지자체 담당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의 도입.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그 보다는 좀 더 낮은 것으로 평가함

-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의 전체 항목 평균은 3.59, 실제 성과는 평균 3.15

○ 타 항목대비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에 대한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함

- (취지 공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순

- (실제 성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순임

<표 3-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심사위원회 위원)

구 분	취지 공감도	실제 성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77	3.28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3.70	3.17
우수 장기요양기관의 육성 지원	3.56	3.13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방지	3.70	3.32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3.60	3.13
지역의 균형 있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3.45	3.02
장기요양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 방지	3.33	3.00
전체 항목 평균	3.59	3.15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5점척도 평균]



[그림 3-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운영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 (심사위원회 위원)

2) 취지 공감도 및 실제 성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유 기입)

① 신규지정 진입장벽이 낮음 → 무분별한 기관 진입 초래

○ 전반적으로 신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 거부사례가 많지 않음

-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한 퇴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신규 시설에 대한 진입장벽도 실제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음

- 실질적으로 지정제 심사기준으로 탈락하거나 미지정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지정제에 대해 신규 기관들이 인지를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 기준에만 맞춰 서류 준비하여 80점만 받으면 지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지정거부(반려)기관에 대한 제재사항 미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반려에도 재신청가능기한이 없어 바로 신청 가능함
- 비지정 되더라도 서류 보완 후 재신청(재신청 제한 없음)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 제한효과 없음
-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떨어지면 민원인 항의가 너무 심함. 기관에서는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보완에 보완을 거쳐 결국은 지정 허가를 받음. (결국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의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무색해짐)
- 지정심사 때 탈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심사요청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비지정이 힘들
- 설사 지정처리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재정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음 심사 시 수정 보완하여 기준에 부합하면 지정처리 됨

○ 행정처분이력이 있어도 기관장(시설장)만 변경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음

-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설장이든 대표자든 종사자든 개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기준에 맞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오면 지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요양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봄. 추후 갱신 시 운영 중 받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기준으로 미지정 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갱신 시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함
-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행정처분 전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정(갱신)제에 적용이 어려움
- 과거 행정처분 이력 대상자들이 가족명의로 신규 지정을 받는 경우 규제할

- 방법 없음. 급여제공제한자도 지정 당시만 감점적용으로 현원 기준 종사자 대상을 최소한만 보고하고 심사받음
- 처분을 받은 대표자(혹은 시설장)만 달라지면 해당 신청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등은 남아 있지 않아 지정이 가능함
 - 법상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지정이나 재지정 받는 시설에 대한 제약이 없음. 법으로 규제화 하여 정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심사서류준비를 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신청 서류의 획일화 초래
- 지정심사 제출서류만 준비해서 제출 후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낮은 시설이 많음. 지정심사 제출서류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짜집기 형식이라 일률적이고 차별화가 없음
 - 문서로 지정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본 취지와 맞지 않음.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라도 문서준비를 잘하면 대표자가 지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심사통과 확률이 높음.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지정해 주는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설립 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만 잘 준비하면 지정이 쉬움(시중에서 산다고 함)
 - 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대표자가 작성해야 하나, 소문에 의하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필터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심사를 위해 컨설팅업체 등에서 대부분 과정을 대행함
-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현상 발생
- 주간보호는 15점 만점에 15점을 다 주므로, 방문요양 진입이 어렵게 되자 주간보호 설치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옴. 그리고 시설장 가점이 있으니 어린이집 운영했던 원장들이 폐업 후 주간보호 진입을 많이 시도함
 -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보임. 무분별한 기관의 지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수만 늘어났다고 봄

- 장기요양기관의 수(총량)제한이 없어 관내 무분별한 경쟁을 막을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진입에 대한 요건은 인력, 시설요건만 갖추면 되고 정작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운영하지도 않는 사회복지시설만 남게 되고 지자체 공무원업무만 과중되는 제도라고 생각됨
-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기관 운영하려는 대표자(시설장)들이 있어 지정신청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필요성 있음

② 서류중심의 심사 → 서류와 실제운영의 차이 발생 초래

○ 서류 위주의 심사의 한계

- 대면심사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신고자와 운영자(시설장)가 다를 수 있고, 시설장으로 하여금 대면심사를 받게 할 경우 실제 시설을 운영할 시설장이 아닌 대면심사를 목적으로 세운 임시 시설장이 대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한계 있음
- 설치기준과 인력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이 되기는 하지만 배점표의 대부분의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위주로 확인하여 지정되기 때문임
- 설치 이후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시설지정신청이 지정제와 맞지 않고, 실제 운영내용 보다는 너무 계획이나 규정 쪽에 치우친 것으로 설립자체의 지정허가 목적보다는 갱신이후 지정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기에 시설 신규지정신청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음
- 기존 심사기준은 단순 지정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운영기준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기에 지정제 목적을 달성하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됨

○ 서류(사업계획서 등)와 실제 운영 간 차이 발생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칙 등을 위주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기관 설치를 하기 위해 제출되는 형식상의 자료로 사용될 뿐, 실질적으로 기관들은 설치 초기에 수급자 모집 및 청구에 급급하여 운영규정

대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사항임)

- 타 기관 심사서류 복사 및 컨설팅 업체 의뢰로 심사서류 작성하고 운영 시에는 미적용하는 것으로 보여 실효성 낮음
- 점수표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운영규정이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 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 방문서비스의 경우 인력기준에 대한 부분은 설치신고와 지정 심사를 위해 서류로만 인력 서류를 제출한 후 실제 시설을 운영하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최대한 수리 후 종사자 보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고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인력기준을 갖추라 강요하기가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 시에도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해서 까다로워진 것은 맞으나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이 크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 심사항목 중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이력' 외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심사하기 때문에 지정받은 후 실제 운영 여부는 다를 수 있음

③ 심사지표 구성 및 적용 한계

○ 심사기준의 불명확성

- 심사기준의 경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있어 지자체 담당자도 내용 파악이 힘들고 장기요양 서비스는 다양한데 모든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인 심사기준이 1개뿐이라 실제 시설 운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급여제공 및 행정처분이력 외 심사평가 지표 자체가 주관성을 많이 띄고 있어 제출한 서류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실시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심사기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등의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 심사기준표의 명확성과 행정처분의 무거운 부분을 심사기준표에 담아야 하며 지자체의 판단에 맡길 경우에는 다른 구와 비교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너무 많음

- 위원회를 통한 지정심사를 하고 있으나 지정심사표 자체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형식적인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심사표기준이 낮게 설정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지자체마다 심사표기준이 다 다르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인식이 거의 없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정신청기관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표 밖에 없는 것 같음. 심사기준표를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지정심사 항목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음. 객관화한 점검 항목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④ 지정제 관련 업무인력 부족 → 업무과중으로 인해 꼼꼼한 업무처리 불가

○ 상담 및 심사업무 과중 초래

- 기존 인력(담당자)에 대한 보충 없이 지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지정 처리 하더라도 신청인 재신청률이 거의 100%에 달해 담당자의 업무과중 심화로 지정제의 실효성 약화됨. 결국 업무 담당자로서는 한번 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므로 한 번에 지정되길 희망할 가능성 있음
- 신규 설치신고와 지정심사를 위한 지침과 서류를 아무리 안내해도 한 번에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없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보완요청하고의 무한반복하게 됨
- 노인복지시설 설치 후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행정적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이원화로 지자체의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은 다수의 인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나 시군구 지자체의 담당자는 1명으로 여러 업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제공서비스에 대한 지정심사기준표가 달라야 하나 일반화되어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달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준비 할 것이 많아 업무과중이 심한 편임
- 지정 심사에서 탈락시킬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담당자의 민원 응대에 관한 부담 가중
- 지정(갱신)제 또한 하나의 절차로 담당공무원 업무만 증가시킴
- 지정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실제 신청률은 낮아졌으나, 지정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일을 두 번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단순히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일을 복잡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있음

○ 심사위원회 운영 부담, 심사위원의 이해도 부족

- 방대한 양의 서류를 행정지식이 없는 위원님들이 일일이 검토하긴 어려움이 매우 크며, 위원회 심의 중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 시간이 전부 다 가버림 또한, 실제 위원님들의 재가급여에 대한 인식과 서류상 자격기준 등의 인식이 매우 달라서 서류상 자격기준과 위원님들의 자격기준의 격차가 너무 큼
- 심사위원의 역량차이로 전문적인 평가가 어려움(코로나로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 더욱 그러함). 설치신고 후 결국에는 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음
- 심의회 구성을 통해 심의를 거치나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됨

⑤ 기타 의견

- 지정 심사기준 적합하면, 지정해주기 때문에 신고수리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음
- 문제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나 퇴출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는 듯 하나 지역안의 권역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적은 듯함. 이전 신고제일 때보다 설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전문성이나 운영목표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며, 신고제와 현재 지정제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듯함

- 사회복지시설(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간 현실적 괴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예 복지용구서비스 경우 대표자 겸 시설장 1인 개인 업체인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등 현실적 어려움)
- 방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과도하게 사회복지시설의 의무를 적용하여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원의 업무량이 가중됨. (특히 복지용구제공사업소)
- 현재는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에 대한 신규 지정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과나 이런 부분은 기존 기관들 재지정 때 성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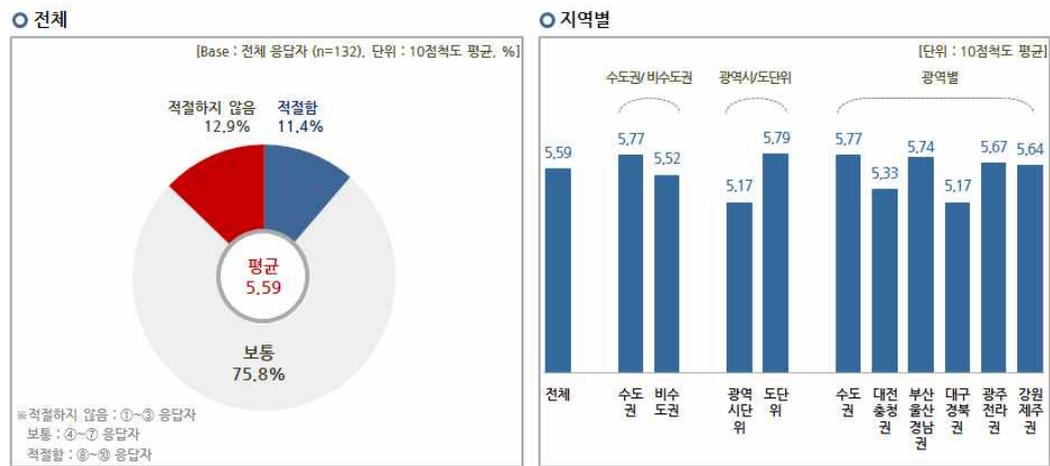
2.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 적절성

1) 운영 적절성

① 지자체 담당자

○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11.4%만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10점 척도 평균 5.59점)

- 수도권이 높은 반면, 대전·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이 다소 낮게 평가함



[그림 3-3]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표 3-5>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전체)

구분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적절성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12.9	5.59
	보통 (④+⑤)+⑥+⑦)	75.8	
	적절함 (⑧+⑨+⑩)	11.4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명, %, 10점척도 평균]

<표 3-6>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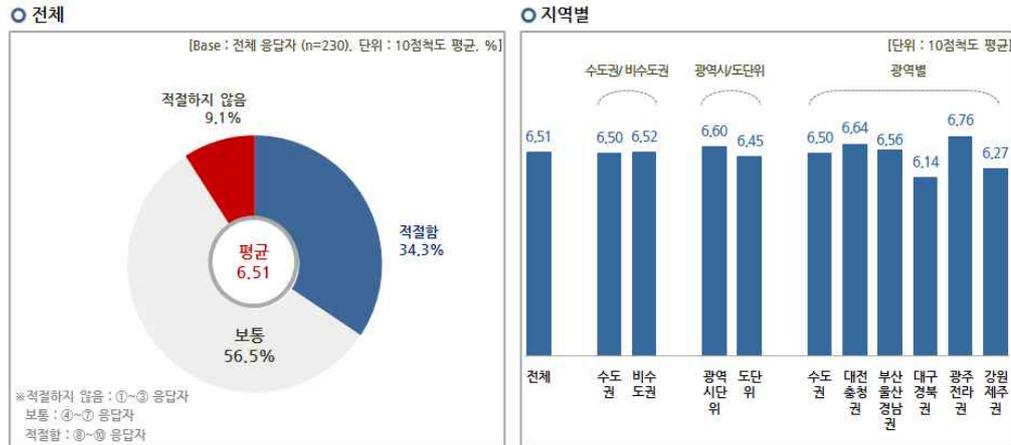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단위		광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단위	도단위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강원.제주권
(132)	(39)	(93)	(42)	(90)	(39)	(18)	(19)	(18)	(27)	(11)
5.59	5.77	5.52	5.17	5.79	5.77	5.33	5.74	5.17	5.67	5.64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10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해 심사위원회 위원은 34.3%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10점척도 평균 6.51점)

- 대구.경북권과 강원.제주권이 다소 낮게 평가함



[그림 3-4]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표 3-7>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전체)

구분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적절성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9.1	6.51
	보통 (④+⑤)+⑥+⑦)	56.5	
	적절함 (⑧+⑨+⑩)	34.3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명, %, 10점척도 평균]

<표 3-8>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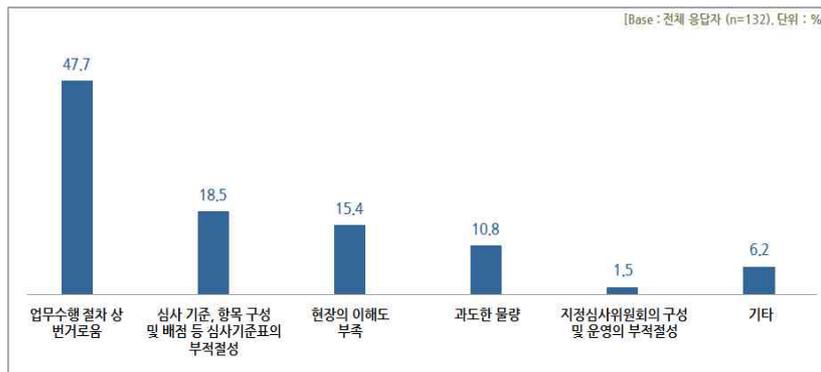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단위		광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단위	도단위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강원.제주권
(230)	(78)	(152)	(91)	(139)	(78)	(25)	(50)	(29)	(37)	(11)
6.51	6.50	6.52	6.60	6.45	6.50	6.64	6.56	6.14	6.76	6.27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10점척도 평균]

2) 부적절 운영 이유

① 지자체 담당자

- ‘업무수행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심사기준, 항목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현장의 이해도 부족’, ‘과도한 물량’ 순으로 높았음



[그림 3-5]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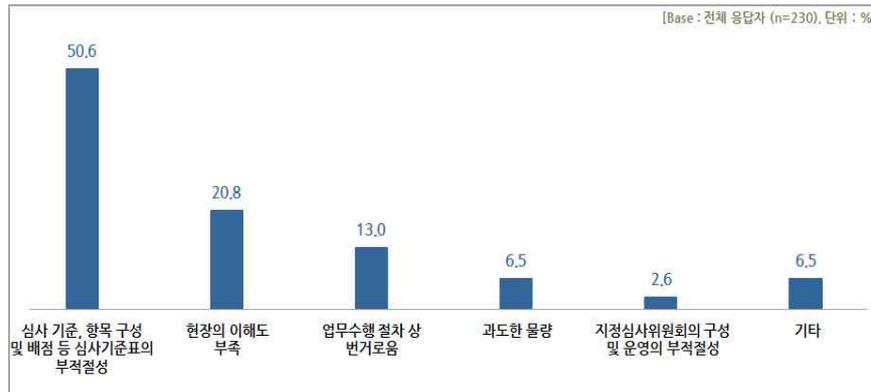
<표 3-9>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지자체 담당자)

부적절 이유	구성비 (%)
업무수행 절차상 번거로움	47.7
심사기준, 항목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18.5
현장의 이해도 부족	15.4
과도한 물량	10.8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부적절성	1.5
기타	6.2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기준, 항목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때문에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장의 이해도 부족’, ‘업무 절차 상 번거로움’, ‘과도한 물량’ 순으로 높았음



[그림 3-6]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심사위원회 위원)

<표 3-10>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심사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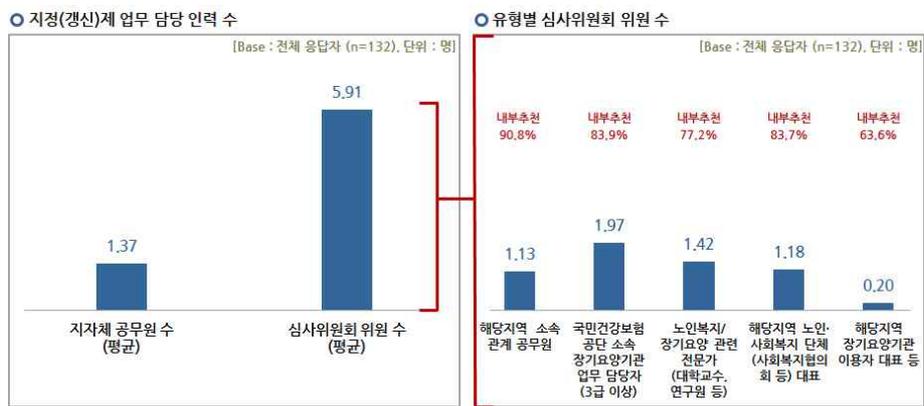
부적절 이유	구성비 (%)
심사기준, 항목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50.6
현장의 이해도 부족	20.8
업무수행 절차상 번거로움	13.0
과도한 물량	6.5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부적절성	2.6
기타	6.5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1.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 평균적으로 공무원 1.37명, 심사위원회 위원 5.91명이 담당
- 심사위원회 위원은 대체로 ‘내부 추천’을 통해 선정



[그림 3-7]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수 및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표 3-11>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수 및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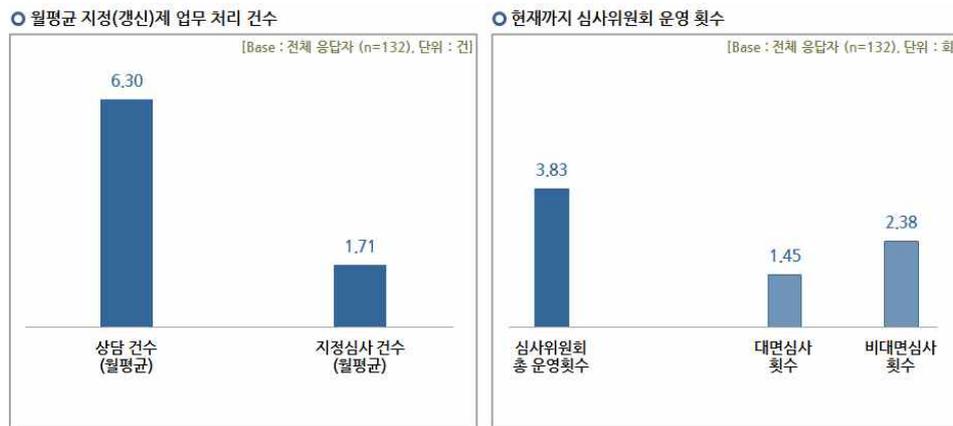
업무 담당 인력	인원수 (명)	선정방식 (%)	
지자체 담당자 수	1.37	-	
심사위원회 위원 수	5.91	-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13	공모	0.8
		내부추천	90.8
		공모+내부추천 병행	8.4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1.97	공모	5.9
		내부추천	83.9
		공모+내부추천 병행	10.2
노인복지·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학교수, 연구원 등)	1.42	공모	4.0
		내부추천	77.2
		공모+내부추천 병행	18.8
해당 지역 노인·사회복지 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대표	1.18	공모	3.1
		내부추천	83.7
		공모+내부추천 병행	13.3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등	0.20	공모	4.5
		내부추천	63.6
		공모+내부추천 병행	31.8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명, %]

2.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량

1)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 처리 건수

- 지정(갱신)제 업무와 관련한 상담은 월평균 6.30회, 지정심사는 월평균 1.71회를 처리하고 있음
- 현재까지 심사위원회는 평균 3.83회 운영하였으며, 그 중 대면심사는 1.45회, 비대면 심사는 2.38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8]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 건수

<표 3-12> 월평균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건수

구분	업무처리 건수 (월평균)
상담 건수	6.30
지정심사 건수	1.71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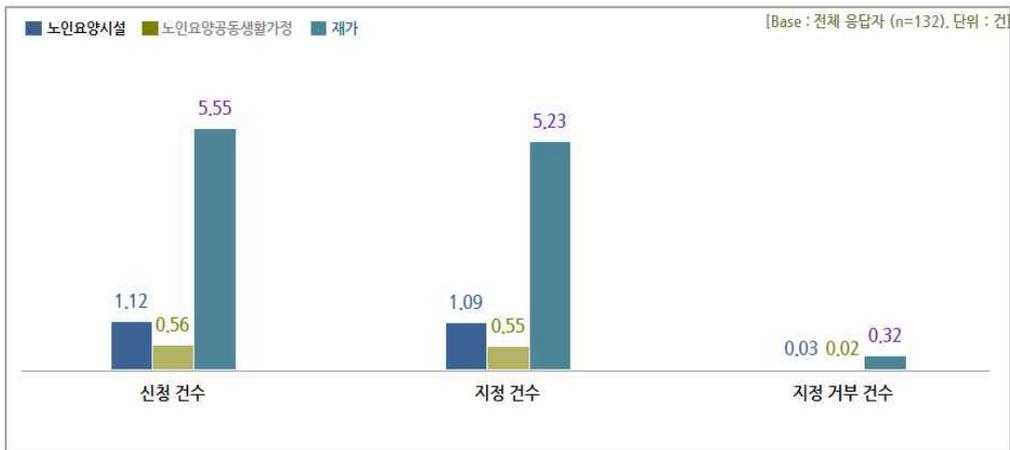
<표 3-13> 현재까지 심사위원회 운영 횟수

구분	운영 횟수 (현재까지)
총 운영 횟수	3.83
대면 심사	1.45
비대면(서면) 심사	2.38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회]

2) 현재까지의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량⁷⁾

- 현재까지 ‘재가’ 관련 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신청 5.55건, 지정 5.23건, 지정거부 0.32건을 처리하였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공통적으로 지정거부 건수는 대체로 매우 적었음



[그림 3-9] 현재까지의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량

<표 3-14> 월평균 지정(갱신)제 업무 처리건수

구분		신청 건수	지정 건수	지정거부 건수
시 설	노인요양시설	1.12	1.09	0.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56	0.55	0.02
재가		5.55	5.23	0.32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건]

7) 2020년 9월 기준

3) 지정거부 사례

○ 지정거부 주된 사유

- 주로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지자체별 심사항목’,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의 이유로 지정거부를 한 것으로 조사됨

<표 3-15>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의 부적절 이유 (심사위원회 위원)

부적절 이유	구성비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4
지자체별 심사항목	10.4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8.8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4.0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4
기타	64.0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

○ 지정거부 사례 (자유 기입)

- 대부분의 기관이 ‘지정거부 사례 없음’, 실질적으로 지정거부는 거의 불가능
- 지정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정거부가 사실상 어려움(항목별 (객관적 항목 외) 감점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침 상 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지정심사 기준에서 해당 점수를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보완 단계에서 점수에 맞게 보완요청을 함
- 절차방식 문제, 요양원의 경우 시설 부지 매입, 구비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 후 심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감점사유가 없는 한(업무정지로 인한 감점, 부채비율 미준수 등) 지정거부가 어려움

○ 일부 지정거부 사례가 있는 기관의 지정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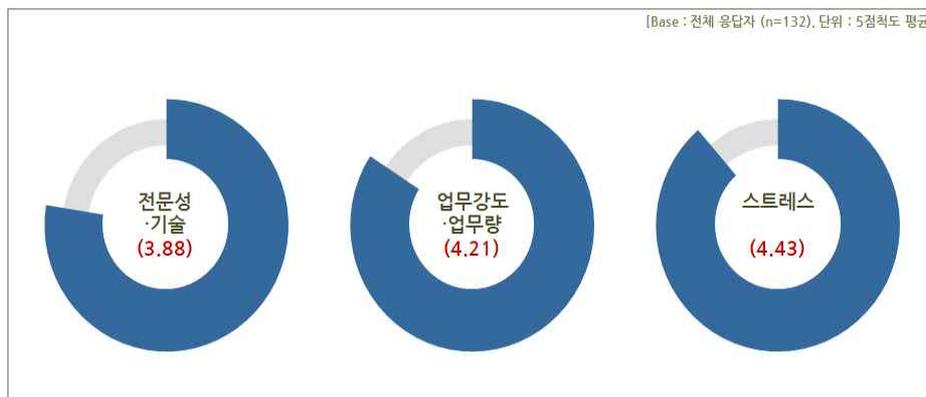
- 설립주체 자격 부적절
- 행정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되어 영향력이 컸음
- 결격사유(범죄 조회)
- 기관에서 설립주체가 법인이라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심사 결과 노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법인이 아니어서 지정거부함
- 대표자 현지조사 행정처분 이력 및 서비스제공 계획 등 미흡
- 복지용구 시설 보완요청에 불응하며 신청 취하
-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의 내용 부실(심사기준 미달)하며 예산서 상 내용과 불일치
- 사업계획 부실 (사업계획은 있으나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계획성 부족
- 설비기준 미충족, 근저당권 설정 등
- 심사기준표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기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나, 신청인의 장기요양기관에 전반 대한 이해가 부족
- 영업정지 기간 중 관계자가 신청함
- 예산서 부실
- 운영 능력 미약 (예결산서 미흡, 서비스 제공 충실성 미흡)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부적절
- 운영위원회 활용계획 미수립,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자원 연계 계획 미수립, 지역사회지원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미수립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내용 빈약으로 인한 항목별 감점
- 지정심사표 상 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및 급여제공이력으로 인한 감점
- 지정심사표 상 사회복지업무경력 없음으로 감점
- 지정심사표의 항목별 및 지자체별 심사항목 감점 (예: 시설장 사회복지시설 경력 등)
- 직원교육, 본인 일부 부담금 관리, 이용자 고충처리

- 행정처분 등은 문제가 없으나 계획안 등 부족

3.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 난이도 및 애로사항

1)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 난이도

- 지정(갱신)제 관련 업무 시 ‘전문성.기술(평균 3.88)’ 보다는 ‘스트레스(평균 4.43)’와 ‘업무강도.업무량(평균 4.21)’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 지정(갱신)제 관련 상대적 난이도

<표 3-16> 지정(갱신)제 관련 상대적 난이도

구분	5점척도 평균
전문성·기술	3.88
업무강도·업무량	4.21
스트레스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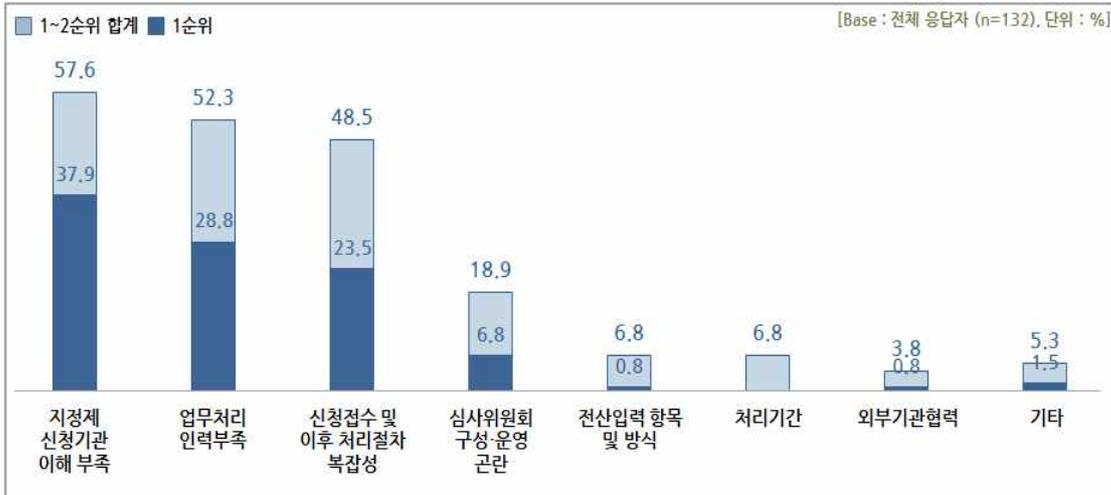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2)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정(갱신)제 운영관련 어려운 점으로 ‘지정제 신청기관 이해부족’(57.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 인력부족’(52.3%), ‘신청접수 및 이후 처리절차의 복잡성’(48.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곤란’(18.9%) 순임 (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3-11]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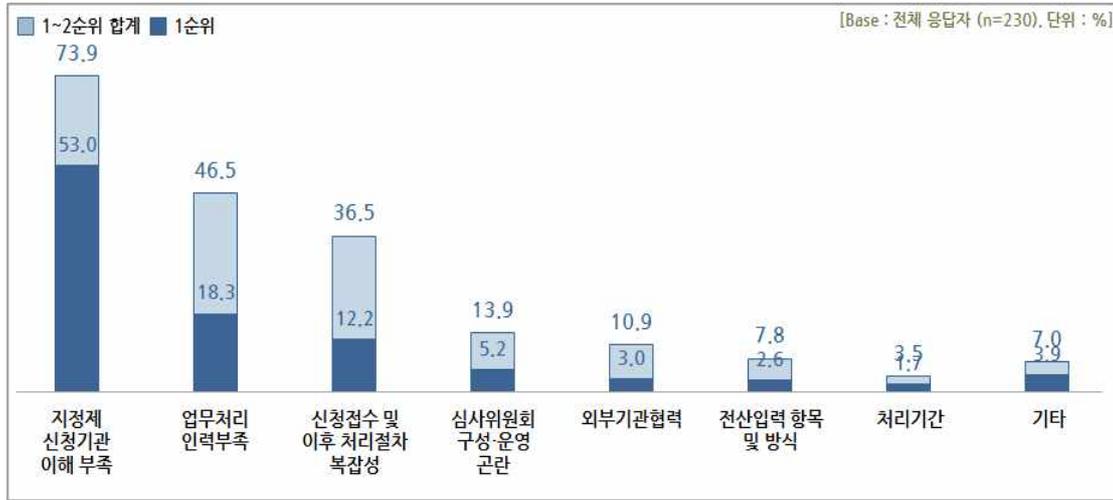
<표 3-17>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지자체 담당자)

구분	1~2순위 합계	1순위
지정제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해 부족	57.6	37.9
업무처리 인력의 부족	52.3	28.8
신청접수 및 이후 처리절차의 복잡성	48.5	23.5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곤란	18.9	6.8
전산입력 항목 및 방식	6.8	0.8
처리기간	6.8	0.0
외부기관(건보공단 등)과의 협력	3.8	0.8
기타	5.3	1.5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운영관련 어려운 점으로 ‘지정제 신청기관 이해부족’(73.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 인력부족’(46.5%), ‘신청접수 및 이후 처리절차의 복잡성’(36.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곤란’(13.9%) 순임 (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3-12]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심사위원회 위원)

<표 3-18> 지정(갱신)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심사위원회 위원)

구분	1~2순위 합계	1순위
지정제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해 부족	73.9	53.0
업무처리 인력의 부족	46.5	18.3
신청접수 및 이후 처리절차의 복잡성	36.5	12.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곤란	13.9	5.2
외부기관(건보공단 등)과의 협력	10.9	3.0
전산입력 항목 및 방식	7.8	2.6
처리기간	3.5	1.7
기타	7.0	3.9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

3) 지정(갱신)제 관련 어려운 구체적 사유 (자유 기입)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정제 관련 업무량 과중, 심사위원회 준비·운영 부담

- 인력이 부족하여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 검토,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서류

작업 등 업무 과중이 극심함. 시설에서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무지하여 한건한건 설명을 하며 작업하며 미운영(미경험자)의 신청이 90%를 넘어 설명 시 용어 이해도 되지 않아 서류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 공무원이 체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1인의 인력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준비, 지정제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해 돕기, 신청 서류 검토, 전산 입력 등의 업무를 전부하기에는 부담이 큼
- 사전상담 시 심사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임. 위원수에 따른 심사자료 준비에 시간이 낭비됨
- 기관에서 이해부족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임
- 민원인들이 쉽게 생각하고 해당 사업을 하고 싶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 설치와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 드리면 해당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담당자가 설명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메일로 안내드려도 제대로 읽지 않고 대충 작성해서 주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밖에 없음. 이 보완 과정이 빨리 끝나면 2~3번 대개 5~6번 이상 반복됨. 심사가 끝난 후 수리를 해드리면서 종사자, 운영위원회, 예산안, 보험 등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려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서류상 제출한 것과 실제로 시설 운영상 다른 점이 많아 수리 후에도 몇 달 동안 추가 안내와 보고를 위해 신경써야함
-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사회복지시설의 이해부족 및 미지정시 사회복지시설 미운영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인력시설요건 충족 시 수리처리 되지만 장기요양기관 미지정 시 사회복지시설 미운영이 되기에 시설관리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 서류 구비가 되지 않아 3차례 이상 서류를 반려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와 처리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여러 업무와 병행 중인 담당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됨(서류 검토, 현지 확인, 심사자료 정리 및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심사위원회 절차 및 회의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
-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조정 등 매우 어려움)

- 업무강도에 비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가 부족함
 - 업무처리 인력 부족 및 처리절차 복잡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매우 높음
 - 운영규정이나 사업계획서를 담당자들이 계속 수정 보완하여 심사에 올리므로 건수가 많을수록 담당자 업무가 가중됨. 사실상 담당자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 실정임
 - 인력에 대한 지원 없이 지정심사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움
 - 장기요양기관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않아 업무처리 인력 부족으로 동반된 처리절차별 진행되어야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
 - 신청기관과 심사위원회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모두 처리해주는 방식임
 - 신청기관의 구비서류 제출 시 오류가 많아 보완하는 시간이 걸림
 - 실질적으로 지정거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사자료 등을 기준점 이상으로 계속 보완 요청해야 함
 - 도입 취지와 상관없이 지정제를 운영함에 따라 처리기간과 공무원이 해야 할 일만 늘어나고 있음 (심사위원회를 열기 위한 기본 준비 등)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행적적인 기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많아 지자체 담당자 1명으로 상담 및 업무처리가 어려움
 - 지정심사 전 준비자료 검토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하고 회의준비를 하는 것도 담당공무원이 하고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면서 하기엔 부담이 됨
 - 접수 및 이후처리절차도 복잡하지만 지정심사자료 준비를 위한 업무(심사자료 및 위원회 개최준비 등)도 부가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업무 과중
-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기관 난립, 신청기관들의 지정제에 대한 이해 부족
- 심사 탈락해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계속하여 결국 지정을 받고 있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만 있으면 설치 가능하므로 여전히 진입 장벽은 낮음

- 기관신청자들이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없이 단지 사업목적으로 진입하고 있어, 지정제 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며, 기존 기관들도 이해가 많이 부족하며, 어린이집 인허가처럼 법상 구체화하여 질적 서비스 향상이 매우 필요함
- 법률용어의 어려움 및 운영규정 등 미숙지로 신청기관의 이해부족이 심각함
-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운영 되는데, 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이 가점만 가지고 들어와서 지정되는 경우 지정 후 지자체 관리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많음
- 장기요양기관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어렵고 관리의 어려움이 부담감으로 늘 작용하고 있음
- 지정심사 기준에 대한 신청 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상담에 많은 시간 소요됨
- 지정심사 신청 후, 지정심사 기간 중 컨설팅에 준하는 문의가 많음
- 지정제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청자가 많아서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움

○ 업무 관련 지침 불명확 / 업무처리 절차 복잡 / 지침관련 교육 부재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이후 신고필증이 나와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하며, 사실상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함에도 설치신고 수리 이후 지정 신청 등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관련 지침 부재)
- 재가노인시설 설치와 지정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매뉴얼이 필요함 (시군구마다 다름)
- 심사기준표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외부압력이 들어오거나 민원을 넣는 등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음
- 방대한 양의 인력, 시설, 설치기준과 관련 법률과 지침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적음
-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자료 검토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안이 없어 담당자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함

-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지정업무를 보기에 사례가 다양하고 지침이 복잡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도 없는 상황에 실무에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업무를 보고 10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현재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임
 -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업무처리 어려움.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급여종류 변경신청 시 지정심사 없이 쉽게 다른 급여 추가 가능
 - 신청 접수 및 업무 절차가 어렵고 명확하고 세부적인 절차 안내가 없음
 - 제도 이해에 대한 시간이 걸림,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지침
 - 제출서류(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지침서 등)의 필수충족사항 등의 매뉴얼이 없어 관련 서류 작성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힘들며, 서식의 일원화가 필요함. 또한 업무담당자 수시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지정관련 매뉴얼 (시설장, 대표자 조회사항, 인력채용의 구비서류, 출장 시 확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함
 -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업무량만 증가함. 무분별한 장기요양기관 신청의 제제를 위한 심사표 정비가 필요함
- 서류 심사의 한계, 서류상으로 전반적 사항 파악 불가
- 서류상으로 전반적으로 신청시설을 평가하게 됨
 - 제출 서류만으로 기관의 업무 능력이나 청렴성을 알 수 없고 실제로 서류 내용대로 운영하지 않음 (부실 운영 기관을 가려낼 수 없음)
 -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심사하다보니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만 확인하여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충실성 있는 서비스 제공능력,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심사하기에 심사서류로 평가하는데 변별력이 없음

② 심사위원회 위원

○ 평가지표의 불합리성, 허점이 존재함 → 문제발생 기관(대표자)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공단 현지조사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해당기관을 폐업 후 신규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했을 경우 그로 인한 감점요인만으로 지정에서 배제(퇴출)시킬 수 없음으로 신규진입은 요건에 충족할 경우 자유롭게 허용하되 행정처분등 결격요인이 명확한 기관의 갱신 시에는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급여제공 이력의 경우 평가회피 목적의 판단이 필요
- 문제 발생된 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진입방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시설장의 복지기관 현장경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연수로 제한)
- 신청기관 대표가 운영정지되었어도 또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엉망이어도 배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 이름만 바뀌서 또 운영하게 됨. 장기요양 평가는 건보공단에서 이루어지는데 등록심사는 지자체가 함. 한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단지 자격증(사회복지)만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며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음
- 심사기준표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배점(50점)이 지나치게 많음. 실제 행정처분자가 아닌 다른 지인으로 신청하면 무의미한 배점임. 또한, 다른 채점 기준도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음. 운영계획은 다른 기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오고 있음
- 기존 개설 기관은 별점 가능성이 많고 신규는 별점이 없음

○ 신청서류의 변별력, 차별성 부족 (획일적임) → 평가의 어려움

- 기재 내용이 다른 신청기관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오자까지도 그대로 복사되어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신청 안내 시에 안내하여 신청기관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제대로 된 내용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때 대부분위 항목은 신청기관별로 내용의 질 등이 대동소이하여 변별력이 부족하여 심사할 때 점수부여의 어려움이 있음
- 기관에서 작성한 운영규정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심사의 적절성이 부

족함. 모두 어딘가에서 다운받은 자료임

- 신청기관들이 형식적 절차로 인식함 (신청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만 충족하면 당연히 지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심사표에 맞추어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서류를 제출하므로 신규 진입에서는 이력이 없는 시설은 진입장벽이 없음

○ 심사기준표의 구체성 결여(세분화 필요), 심사기준의 불명확성, 심사기준의 매뉴얼 마련 필요

- 비구체적인 항목으로 심사가 어려움
- 드러나 있는 행정처분 이외에 심사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방법에 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함. 심사위원들이 뭘 어떻게 보고 심사해야하는지 사전정보가 부족함. 심사위원들의 현장점검도 필요해 보임
- 지정 심사기준표를 보다 정확하고 기준을 분명히 하여 취지에 맞는 심의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지정 승인을 위한 구체적 기준의 부족(표준안 필요)으로 업무처리의 모호함
- 지정 제한 사유(다양성 부족)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 부족으로 동일 지표에 대한 해석차이로 점수 차이 발생
-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점수 배점의 객관화가 필요함 (평가점수의 변별력이 부족함)
- 포괄적인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기준표는 새로이 진입하는 기관의 경우 높은 점수를 얻고 가기때문에 실제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도 심사 점수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심사기준표 마련이 필요함
-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재가, 이동, 목욕 등의 심사기준에 대한 변별력이 없음

- 재가급여 지정기준이 종별 구분이 없어 심사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예. 복지용구사업소)
- 서면심사의 한계성 존재 → 실질적 운영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 중요
- 서류를 잘 만드는 기관이 운영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음
 - 기관을 방문하여 센터장 면담 후 서류심사 필요. 서류처리 간소화 (평가시간 부족)
 -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사전자료 검토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지만 서류만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지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평가는 꼭 필요함)
 - 행정서류 절차만을 갖고 판단하여 내실적 운영방안을 예측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 계획을 하고 사후점검과 관련된 장치가 없음, 1년 내 목표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누구든지 시설설치를 위한 서류는 만들어 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현장이 어떠한가를 봐야하고, 운영한 뒤 6개월~1년간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운영자금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예산에 들어 있지 않음
 - 심사위원은 서류전형으로 진행되는 평가이다 보니 운영기관 대표 및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및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제출신청기관이 취지와 이해가 부족하여 심사 자료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지정갱신제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업계획, 서비스 내용 등을 이해하는데 자료가 미비함
- 미지정 처리에 대한 부담감, 미지정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시설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므로 미지정 처리를 하는 것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임

- 개원 준비가 완료된(임대차 계약 및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 보류를 하거나 심의 탈락을 시키기가 너무 부담스러움. 건축처럼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받는 그런 절차가 맞는 것 같음
- 부적합 인정 시 장기요양기관의 저항이 심함
- 심사하기 전에 시설준비를 마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관계가 불편함
- 신청기관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계획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지역에 집중될 경우에도 지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지정갱신제로 변경하게 된 안정성과 투명성, 시장의 과다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정요건 및 절차강화의 기본요건보다 신청기관의 민원을 의식하거나 문제 제기를 우려하여 신고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승인되고 있음
- 지정갱신 불허 시 지방정부가 행정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제대로 된 지정(갱신)제 운영이 어려움
- 지정제 운영은 지자체 승인 후 선정위 순으로 진행되는데 지자체에서 승인된 후에 선정위에서 미선정되면 지역내에서 위원에 대한 불만이 생길 것이고, 미승인된 신규기관은 위원때문에 승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임. 지자체 승인 전에 선정위에서 기관의 타당성과 지역의 기관 밀집도 등을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불가피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선정위 개최시기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신청기관의 이해 부족

- 신규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사전 교육이 필요할 듯)
- 요양지원금을 받지만 재무회계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부족의 문제가 심각
- 신청기관의 이해부족(인력의 전문성 등). 신청기관의 이해부족에 따른 요식행위로의 인식
- 지정제에 대한 인식 부족(사전교육 필요). Q&A사례집 발간 필요

- 절차 복잡하고 준비서류 과다, 신청서류에 대한 매뉴얼 마련 필요
 - 지정심사를 운영하려면 신청된 서류를 편철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시 시간이 많이 걸림 (과다한 서류도 양산하게 됨)
 - 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의 복잡성을 조금 더 완화 요망
 -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에 대한 기준 지침을 정형화하여 세부적(구체적)으로 안내가 필요함
 - 기관제출 서류에 대한 급여 종류별 검토 매뉴얼이 필요함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결여, 심사위원 자격요건 강화 필요
 - 심사위원회 구성이 소도시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전문가 위촉이 어려움
 - 운영규정이나 직원업무, 교육 등은 같은 업종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이므로 동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임
 - 심사위원들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주먹구구식의 위원위촉으로는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움
 -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필요(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제외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업무처리하는데 있어 한계를 느끼고, 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됨

- 심사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음
 - 사전 심의자료 인터넷 열람 및 의견 등록이 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결정될 수 있음
 - 처리절차가 복잡(심의검토서류 너무 많음)
 - 회의서류 과다로 서류심사 진행에 어려움 있음

○ 지정(갱신)제 담당인력(지자체 공무원) 부족

- 담당인력이 지정제 업무 외에 본연의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지정신청과 관련한 전체를 관리하기가 힘들 듯함
- 부족한 인력에 심사제에 소요 시간이 과다하게 됨
- 지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 추가 보완이 요구됨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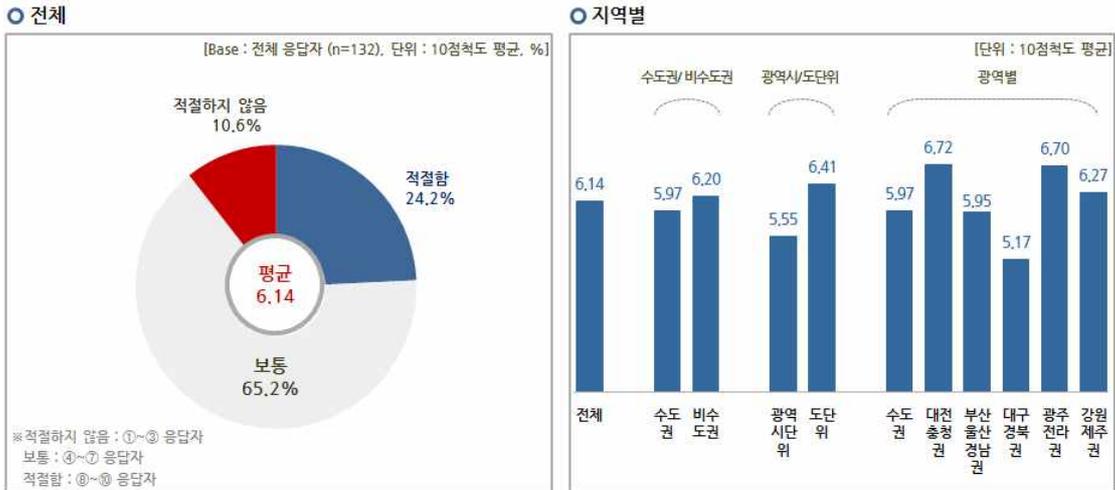
- 지정(갱신)제 운영으로 6년 후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퇴출에 대한 불안감 (농촌과 도시지역 간 차이 반영 필요)
- 영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운영상 어려움 (요양보호사 확보 및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1) 지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성의 적절성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정(갱신)제 지정절차의 전반적 구성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24.2%만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10점척도 평균 6.14점)
- 비수도권이 높으며, 특히 대전·충청권과 광주·전라권이 다소 높게 평가



[그림 3-13]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표 3-19>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전체)

구분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적절성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10.6	6.14
	보통 (④+⑤)+⑥+⑦)	65.2	
	적절함 (⑧+⑨+⑩)	24.2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명, %, 10점 척도 평균]

<표 3-20>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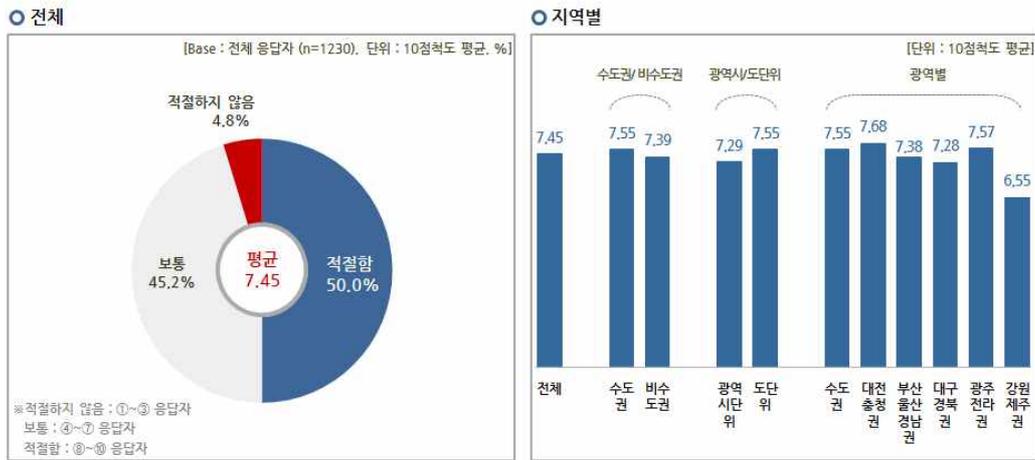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단위		광역시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단위	도단위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강원·제주권
(132)	(39)	(93)	(42)	(90)	(39)	(18)	(19)	(18)	(27)	(11)
6.14	5.97	6.20	5.55	6.41	5.97	6.72	5.95	5.17	6.70	6.27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10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지정(갱신)제 지정절차의 전반적 구성에 대해 심사위원회 위원은 50.0%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10점척도 평균 7.45점)

- 강원·제주권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3-14]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표 3-21>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전체)

		구성비 (%)	10점 척도 평균
적절성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4.8	7.45
	보통 (④+⑤)+⑥+⑦)	45.2	
	적절함 (⑧+⑨+⑩)	50.0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명, %, 5점척도 평균]

<표 3-22> 지정(갱신)제 지정절차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단위		광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단위	도단위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강원.제주권
(230)	(78)	(152)	(91)	(139)	(78)	(25)	(50)	(29)	(37)	(11)
7.45	7.55	7.39	7.29	7.55	7.55	7.68	7.38	7.28	7.57	6.55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5점척도 평균]

2)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① 지자체 담당자

- 현지 확인, 전산입력, 지정서 발송 단계의 적절성 평가가 다른 단계대비 비교적 높음

- 반면, 지정신청 접수, 사후관리, 지정여부 결정, 지정명세 공단 통보 단계의 적절성 평가가 다른 단계대비 비교적 낮게 평가됨



[그림 3-15]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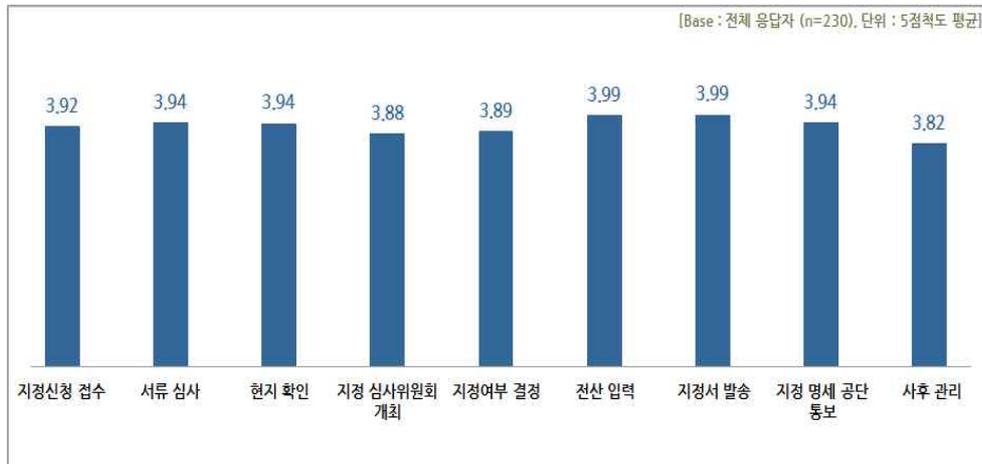
<표 3-23>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지정 절차 단계	5점척도 평균
[지정신청 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3.20
[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3.37
[현지 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3.5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 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3.30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지정서 작성),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복사본 보관)	3.27
[전산 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3.45
[지정서 발송]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3.41
[지정 명세 공단 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등기우송/FAX)	3.27
[사후 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3.22
전체 항목 평균	3.34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각 단계별 적절성 평가 결과, 모든 단계에 대해 적절성이 높으며, 각 단계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3-16]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표 3-24> 지정절차 각 단계별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지정 절차 단계	5점척도 평균
[지정신청 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3.92
[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3.94
[현지 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3.9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 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3.88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지정서 작성),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복사본 보관)	3.89
[전산 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3.99
[지정서 발송]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3.99
[지정 명세 공단 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등기우송/FAX)	3.94
[사후 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3.82
전체 항목 평균	3.92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5점척도 평균]

3) 지정(갱신)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자유 기입)

① 지자체 담당자

- 전산(시스템) 입력 어려움(불편함).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행정처분 이력 전국조회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입력절차와 방식이 매우 까다로워 누락된 사항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자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행복이음 전산입력이 필수인데 입력방식이 너무 까다로워 업무시간이 과다 소요됨
- 설치신고 접수 후 행복이음에 인력현황 전산 입력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최소화하기 바람
- 인력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기입력이 오래 걸리고 불편함
- 지정신청 접수 이후 전산 입력 내용이 행복이음상 인력변경 등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등록해야하는 점이 개선되었으면 함

○ 시스템/전산 조회 절차 간소화 필요 (오랜 기간 소요됨)

- 범죄, 결격사유 조회, 공단에 지정심사자료 등을 지자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면 함
- 대표자를 비롯한 종사자의 처분여부나 급여제공 이력 등의 정보를 받는데 기한이 너무 걸리며, 그로 인해 지정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이 길어짐
- 서류심사 시, 행복e음 및 공단 조회 과정에서 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설치. 운영자가 채용예정 인력에 대하여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종사자 채용 시 면담만으로 채용 후 지정신청 들어왔을 때 종사자들 때문에 감점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기관 설치운영자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행정처분 이력을 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지정신청 접수 시 대표자, 운영자 및 종사자의 정보를 모두 지자체에서 직접 입력하고 공단에 요청해야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절차가 번거로우며, 현지 확인점검을 설치, 신고 접수 후에 진행하는데 설치하려는 자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소의 적절성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있음.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음

- 지정신청 접수단계에서 인력현황을 전산에 등록해야 건보공단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확인절차 가능함. 지정 전에 종사자들의 입사일과 근무시작일 등 모든 것을 다 입력해야 함. 추후에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지정완료 전에 입력할 경우 두 번 일하게 되는 문제 발생함
- 지정 후 입사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 지침/가이드 제공

- 사례집, 지침서를 제작해 주시기 바람. 또한, 지자체 업무에 관련해서 피드백해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담당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서류 심사에 정확한 지침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
-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지정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사항도 매우 부족하고, 사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과 같음

○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함, 간소화 필요

- 지정제의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이 있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자료와 심사자료를 모두 준비해 와야 하나 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민원접수만 일찍 접수하고 심사자료를 늦게 준비하는 등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너무나 많음. 절차별로 내용도 명확하지 않으며 각 단계별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음
- 처리절차 간소화 필요. 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등록절차가 각각 필요하므로 단일등록으로 개편 필요함
- 지정심사제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및 위원들이 지정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음

○ 현지 확인 관련

- 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현장확인이 이루어지므로 현지확인, 점검이 중복
- 인력기준 충족여부 확인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뿐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려움
- 현지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 확인하여 검토서를 작성하며 위원들은 서류상 참고할 뿐임
-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고 구비서류에는 시설현황, 일반현황, 인력현황 등 상당수 서류 누락. 지정신청 들어왔을 때 실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시에도 사무실 등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고를 함께 받아 서류 검토 및 실사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타

- 지정갱신제보다 더 필요한 건 시설 운영관리임. 지정갱신제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은 그럴듯하게 한다 해도 이후 재무회계 등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큼
- 심사를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하고, 민원인이 직접 고민하여 서류를 작성하도록 담당공무원이 최소한이 기준만 설명하는 매뉴얼이 필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자료를 우편물로 주고받기보다(도달기간 불확실, 비용발생 사유) 직접 전달 및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낭비됨
- 시스템 상으로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등록하게 한 뒤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를 등록하고 나면 심사위원이 뒤이어 시스템을 통해 심사하는 순서로 하여 현재 처리기간이 7일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도 그 기간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30일과 맞추어 진행되도록 해야 함
-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시설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감점요인(행정처분, 휴폐업이력) 등 기본적 요건서류 검토 후 조건부 지정(부채비율, 설비구조 담당부서 승인 후 지정) 승인이 나면 ,시설에서설치 부지 매매 또는 임대계약 후 담당부서 최종확인(부채비율, 시설설비구조내역 등)으로 최종 지정해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7일)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30일)의 처리기한 차이 및 구비서류 문제로 민원업무처리에 차질이 많음
- 실제로 설치신고 하신 분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해당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해도 서류상으로 통과하고 있어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해서 상당히 힘들. 신청을 위한 교육과 시험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교육과 시험의 경우 틀어놓기만 해서 통과할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실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문제의 난도와 항목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으면 함

② 심사위원회 위원

○ 현지확인 절차 강화 필요

- 현지확인이 무척 중요한데, 심사위원들은 현지확인 시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의 내용과 현장을 연결해서 볼 수가 없음
- 더욱 명확한 전문성 파악을 위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는 물론 면접(인터뷰 등) 또는 발표 등의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음
-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됨에 따라 심사의 한계가 있음
- 현지확인 시 서류 및 실측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필요
- 시설에 대한 정보가 서류만으로는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통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짐
- 심사할 때 출력된 서류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 실제 현장을 알 수가 없어 평가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음. 따라서 심사위원회 때 현장 사진을 보다 많이 제출토록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현지확인 은 지자체 담당자 뿐 아니라, 지정심사위원이 현지확인에 동행 필요성 있음

○ 형식적·획일적인 심사서류 제출 및 심사 지양 → 실질적 지정거부, 부실기관 퇴출 기준 적용

- 신규 지정심사의 경우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아 아쉬움. 제출한 운영규정 등은 너무 형식적이며 전문성 등을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함
- 심사위원들의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인연과 우정 등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한계점수 이하로 심사를 하지 못하여 공단통보 의무 삭감 점수를 제외하고는 점수를 주어 형식적 지정심사가 되고 있어 퇴출이 쉽지 않음. 따라서 기존 운영기관 등은 공단 급여제공관련 패널티 삭감 점수를 다양화하고 상향해야 열악한 센터 퇴출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됨
- 인적 물적 요건 등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된 기관에 대하여는 문호를 개방하여 진입장벽은 낮추고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서비스 질 평가가 낮거나 회계부정 등으로 행정처분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퇴출요건 엄격히 적용하여야 투명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봄
- 절차 문제보다는 현 심사평가지로는 옥석을 가릴 수 없음

○ 대표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 (지정심사 전·후)

- 지정 절차와 업무의 개괄적, 가치적, 윤리적 교육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재무회계와 관련된 상식적 교육을 동영상으로 하고, 성공과 실패사례를 몇 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매뉴얼을 운영자가 숙지했는지 자격검증도 필요함
- 기관장의 경우 자격 등만으로 하기보다는 이수 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시설장의 전문성을 그나마 향상시킬 수 있고 업무처리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수급 또는 착오로 인한 잘못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기관 대표자 또는 시설운영에 대한 철학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현재 컨설팅 업체에서의 자문으로 실제 운영규정이나 사업계획들이 현장에

서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음. 지점심사 전 시설준비하시는 대표에 대한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기관(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기관)에 대한 절차 등 명확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함

○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사후관리 부분에서 인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의 질 관리와 그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서류심사기 선행된 후 계획과 사실의 합치 여부의 확인 결과에 따른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생각됨
- 시설정보 게시를 전산입력 한 이후 사후관리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끔 정보 공시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 지정 승인 이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상황 현장점검이 필요함

○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정비/구체화 필요 (심사 표준 매뉴얼 마련 또는 교육)

- 기준 심사표의 항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포함된 표준화된 메뉴얼이 없음
- 사전에 심사위원의 서류검토 후 심사위원회의 개최 시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중요 검토사항 교육이 필요함
-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과정에서 세밀한 검사표가 있으면 함
-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각 기관의 특성별로 심사표 기준을 보완할 필요 있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표를 구체화하여 심사 시 변별력이 높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변별력이 낮을 경우 신규시설의 난립될 여지도 있음)
- 심사기준표 및 채점기준을 행정처분 배점을 낮추고, 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의 관련법규 및 고시, 지침 등의 숙지도 등을 면접 등을 통해 심사하

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경감방안 필요(인력 총원 등)

- 담당자의 업무가중. 심사위원의 일정 조율이 힘들(1-2개 정도 심의는 문제가 없으나 5개 이상 심의 시 문제점 발생)
- 지자체 인력이 너무 부족함.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 소요 및 투여가 많이 필요함
-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변수가 생기고 처리기간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기타

- 신고 폐지는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평가는 건보공단에서 진행되어 별개의 느낌임.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인인구수, 수급자수, 기관수(정원)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지정신청접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필요
- 예비 심사 제도를 두어 예비심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해 개원준비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음
- 지정 탈락된 기관에 대한 처리정차 및 안내 필요. 6년 후 영세한 장기요양 기관은 퇴출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규모가 있고 경쟁력 있는 기관위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탈락기관에 대한 소명절차와 재지정 기회 등 부여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정심사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를 전부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할 때 저장 후 수정이 안 돼 전부 삭제 후 다시 입력해야함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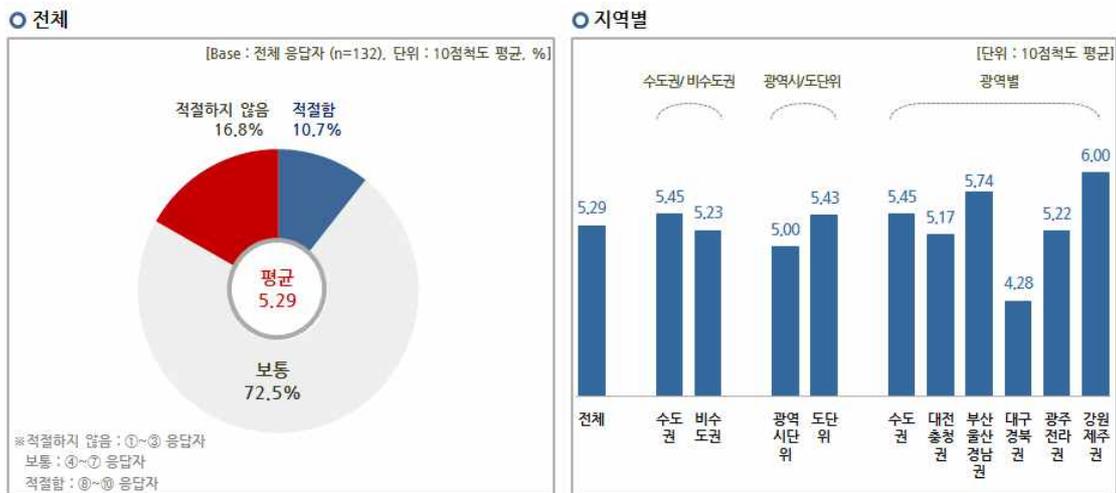
제4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1.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정(갱신)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10.7%만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10점척도 평균 5.29점)

- 비수도권, 특히 대구.경북권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 3-17]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

<표 3-25>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전체)

구분		구성비 (%)	10점 척도 평균
적절성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16.8	5.29
	보통 (④+⑤)+⑥+⑦)	72.5	
	적절함 (⑧+⑨+⑩)	10.7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명, %, 10점척도 평균]

<표 3-26>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지자체 담당자-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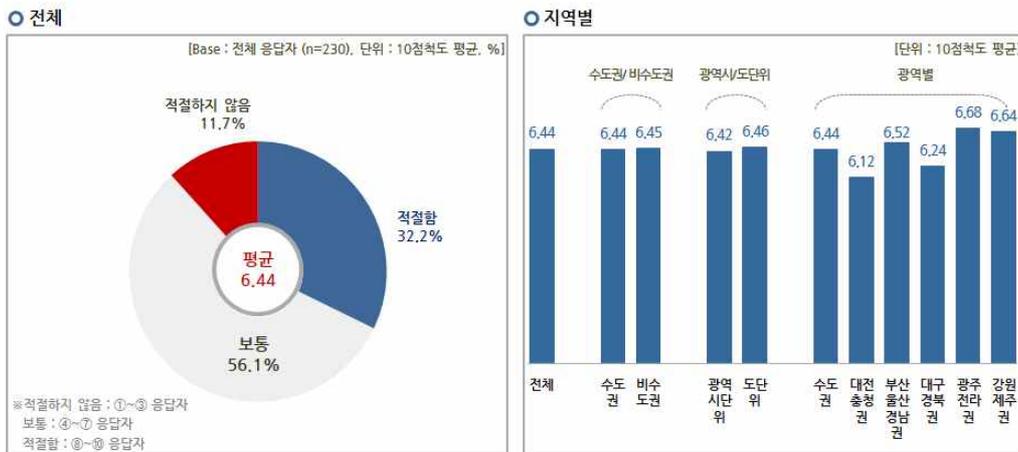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단위		광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단위	도 단위	수도권	대전.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광주. 전라권	강원. 제주권
(132)	(39)	(93)	(42)	(90)	(39)	(18)	(19)	(18)	(27)	(11)
5.29	5.45	5.23	5.00	5.43	5.45	5.17	5.74	4.28	5.22	6.00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10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지정(갱신)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해 심사위원회 위원은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10점척도 평균 6.44점)

- 대전.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 3-18]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

<표 3-27>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전체)

구분		구성비 (%)	10점척도 평균
적절성	적절하지 않음 (①+②+③)	11.7	6.44
	보통 (④+⑤)+⑥+⑦)	56.1	
	적절함 (⑧+⑨+⑩)	32.2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명, %, 10점척도 평균]

<표 3-28> 전반적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절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 단위		광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단위	도 단위	수도권	대전.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광주. 전라권	강원. 제주권
(230)	(78)	(152)	(91)	(139)	(78)	(25)	(50)	(29)	(37)	(11)
6.44	6.44	6.45	6.42	6.46	6.44	6.12	6.52	6.24	6.68	6.64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10점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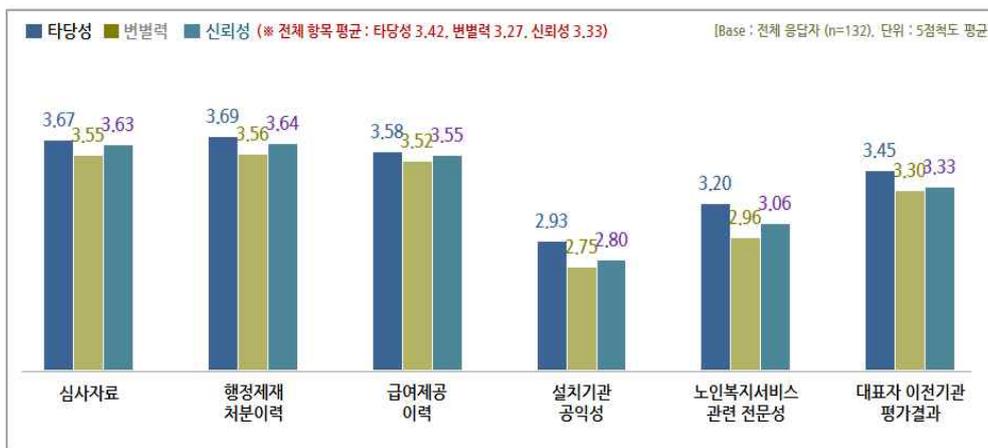
2.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⁸⁾

1)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자체 담당자는 서비스 제공능력 중 ‘심사자료’, ‘행정제재 처분이력’, ‘급여 제공 이력’ 항목은 다른 항목대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 반면, ‘설치기관 공익성’, ‘(대표자의)노인복지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비교적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그림 3-19]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지자체 담당자)

8) 서비스 제공능력 영역은 다른 영역대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표 3-29>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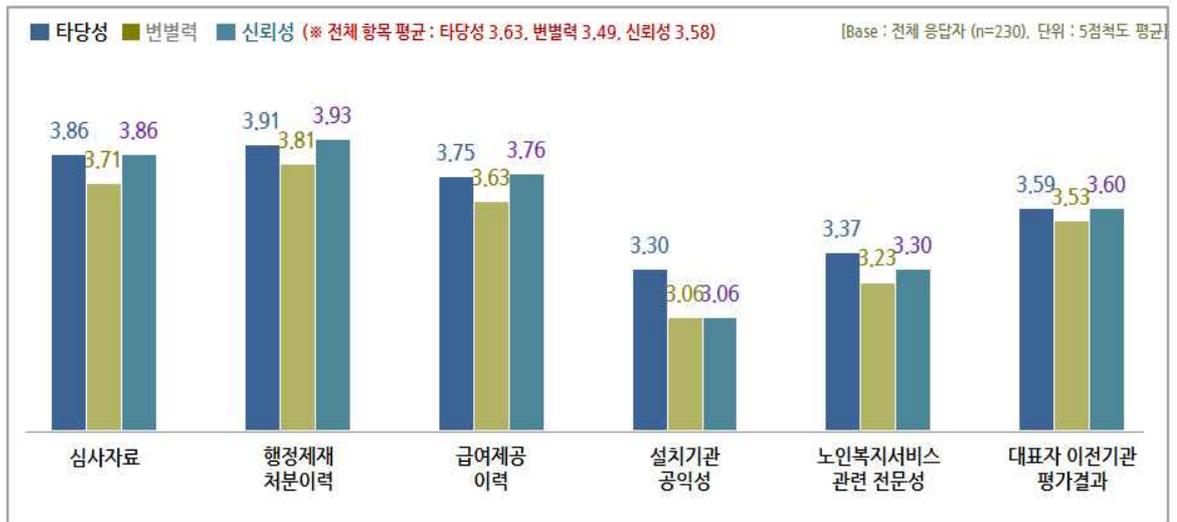
서비스 제공능력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3.67	3.55	3.63
급여제공 이력	3.58	3.52	3.55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2.93	2.75	2.80
대표자(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3.20	2.96	3.06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3.45	3.30	3.33
전체 항목 평균	3.42	3.27	3.33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위원회 위원은 서비스 제공능력 중 ‘심사자료’, ‘행정제재 처분이력’, ‘급여제공 이력’ 항목은 다른 항목대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 반면, ‘설치기관 공익성’, ‘(대표자의)노인복지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비교적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그림 3-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심사위원회 위원)

<표 3-3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심사위원회 위원)

서비스 제공능력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3.86	3.71	3.86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3.91	3.81	3.93
급여제공 이력	3.75	3.63	3.76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3.30	3.06	3.06
대표자(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3.37	3.23	3.30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3.59	3.53	3.60
전체 항목 평균	3.63	3.49	3.58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5점척도 평균]

2)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관련 개선의견 (자유 기입)

① 지자체 담당자

○ 행정처분 내용/이력

-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은 공단 회신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 불가능함. 이 자료도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공단 조회 시 대표자의 이전경력은 조회되지만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를 경우 시설장의 이전 경력은 조회하기 어려움
- 대부분 이력이 없는 신규 대표자 및 장기요원이 많아 서비스 제공능력 변별력이 떨어짐. 기본점수만 획득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를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하면 유명무실함
-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표현이 모호하며 잦은 휴폐업 사유가 평가 회

피로 추정되는 경우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미지정 되었을 경우 오로지 담당직원의 의견으로 귀결되는 등의 개선해야 부분이 너무나 많음

- 대표자가 예전 처분 때문에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고 설치, 지정 신고하는 경우 막을 수 없음
- 행정처분이나 검직 여부 등 전국 시군구에 조회 요청 공문 보내나, 형식적인 절차임. 하루에도 관련 공문이 수십개씩 쌓이는데 일일이 확인하고 못해 줌
-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에 가담한 시설장과 타 직종(사무원, 조리원, 기타 등)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감점사유에서 제외됨.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확대하든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설치운영자 뿐만 아니라 시설장 및 종사자도 서비스 제공능력 여부를 추가 했으면 좋겠음
- 타 시도, 타구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중 시정명령, 경고등은 조회가 불가능함. 따라서 심사기준에 들어가나 조회가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전국 조회 가능하게 개선되었음 함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객관적인 평가지표는 변별력이 있으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등의 주관적인 평가지표는 신뢰성이 떨어짐 (검증이 매우 힘든 부분)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는 형식적인 요소가 많음
- 대표자의 서비스 관련 전문성 부분에서 추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한 듯하며 운영이념이나 공익성등도 그 기준이 더 필요한 듯함
- 문서상의 내용으로 과연 공익성 및 기타 인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고 변별력이 있는지 의문이 듦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항목은 정말 형식적인 항목인 듯함, 판단여부도 불명확하여 운영규정에 대충 그런 느낌으로 목표나 운영이념 적혀 있으면 있다고 함
- 설치기관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는 계획서에 기재되지만 변별력이 없음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에 대한내용은 주관적이며 대부분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자료로 제출하므로 평가 적용의미가 미약함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 공익성은 신청할 때 그럴듯하게 내면 그만임
- 설치자의 이념, 목표, 전문성 등은 주관적 판단으로 변별력이 떨어짐
-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이력 등 배점항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외 운영이념, 공익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너무 주관적임
- 운영규정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대표자(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난해함. 수치화하기 어려움
-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업무경력을 보는 것은 타당하나, 지정제 이후 시설장 변경 등 발생
- 양질의 장기요양기관을 늘리려면, 설치 및 운영자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함. 누구나 자격증만 있으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운영 초반부터 체계가 잡히지 않아 추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음
- 대표자도 일정이상의 자격증이 요구되면 무능력하거나 형식적인 대표로 인한 부실운영이 조금 줄어들 듯함
- 주간보호는 15점 만점에 15점을 다 주므로, 방문요양 진입이 어렵자 주간보호 설치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옴. 그리고 시설장 가점이 있으니 어린이집 운영했던 원장들이 폐업 후 주간보호 진입을 많이 시도함.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을 가점으로 주므로 노인관련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경력자가 가점자로 되어 노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매우 낮음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전반적 의견

- 관련 항목의 배점은 20점 정도로 개선(실제로 서비스 제공능력을 기존 방

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구체적인 항목 제시 필요. 개괄적으로 점수는 통과의례에 불과함. 몇가지 항목에서 탈락하면 자동탈락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신규시설과 기존시설 간 변별력 구분을 위한 장치 필요. 기존 시설시 이용자 평점 등 자료 필요
- 좀 더 변별력 있는 배점으로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음
-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유로운 질문 및 인터뷰가 필요함
- 지정(갱신)제의 현재 심사 자료에 대한 타당성, 변별력, 타당성의 평가는 계속 사업을 해오던 기관에 대한 갱신기관 평가에는 맞을지 모르나 처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자료로는 부적절하고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됨 (예, 1) 급여제공이력 2)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 제재 처분이력, 6)대표자의 이전 기관평가 결과 등
- 항목별 점수 세부 기준 명시 필요. 예를 들어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의 경우, 노인복지 경력 5년 이상 11점, 노인복지 경력 3년 이상 7점, 노인복지 경력 3년 이하 3점, 노인복지 경력 없음 0점

○ 행정처분 내용/이력

- 노인학대, 부당청구, 평가회피 등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자체가 불가해야한다고 생각함. 배점이 많이 깎이지도 않아 별로 의미가 없음
- 새로 진입하는 기관의 경우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이력, 평가결과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매우 높은 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심사기준표가 구분되어야 함
- 신규설치인 경우 아무런 이력이 없이 점수를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겠음
-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전 운영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는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다 받아 큰 의미가

없음

-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감점하는 게 당연하지만 근무경험이 없는 자에게 행정처분 이력이 없다고 만점을 주는 건 곤란함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공단에서 전산 상으로 행정처분 이력 등은 공정하게 나오나 설치기관에 운영관련 서류, 사업계획서가 많이 부족함. 차후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음
- 대표자 명의변경 시 또는 잦은 휴폐업 사유가 평가 또는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 추정하기 어려움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으므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도 본인에 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 설치운영자 외 직계가족을 포함한 장기요양관련 행정제재 처분이 포함되어야 함
- 대표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배점 확대
- 대표자변경 및 수시 이전 등의 방법으로 평가, 행정처분의 분별 어려움
- 대표자의 이전기관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부분에서 신규설치는 점수가 낮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족끼리 명의를 바꿔가며 설립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기관을 알고는 있지만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음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신청기관별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변별, 타당성, 신뢰성 판단 어려움
- 서류의 기재만으로 공익성 평가에 부적절함
- 설치기관의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한데, 평가하기가 실제 어려움. 시설장의 전문성 역시 경력으로 검증하나 이것으로 전문성을 판별하기에 힘든 점이 있음
- 설치운영자(대표)는 지역사회에 평판이나 행정기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한 정성평가가 필요하며, 장기요양요원은 업무 관련 전문성 및 교육훈련 내용 평가지표 반영 필요함

- 설치운영자의 공익성과 이념은 운영규정이나 급여제공 등을 서류로 보는 정도여서 한계가 있음. 타 기관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함. 기관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설치운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요원의 사명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요원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이 필요함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운영위원회설치 계획 등이 매우 형식적이고, 실제 부당청구, 노인학대, 평가, 조사거부 등 많은 부분에 대한 회피를 목적으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분별이 어려움.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을 살펴보기엔 지정심사에서 사실상 불가능함

○ 대표자(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이력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력서의 경력 기준으로 하는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함
- 서류상으로 운영자 및 요양요원의 전문성을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음
- 설치운영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및 전문성은 지역사회와 평판과 시설을 운영하는 센터장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여야 함
- 설치운영자의 거의 대부분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학 전공 취득과 1-2년 미만의 노인복지 실무경력으로 서비스제공 능력이 미흡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점이 있음. 심지어 80세가 넘는 간호학 전공자를 시설장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어 실제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가능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됨
- 설치운영자의 경우 전공자(관련학과 학부 이상)가 운영을 함으로써 요양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질 향상 서비스(Continues Quality Improve service)를 기대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한 배점기준이 부족함

- 전문성 등을 자격이력으로 확인하니 실제 서비스의 제공능력을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전문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대표자의 이력 확인 필요(사회복지 등 관련 자격현황, 경력)
- 전문성이나 마인드를 확인할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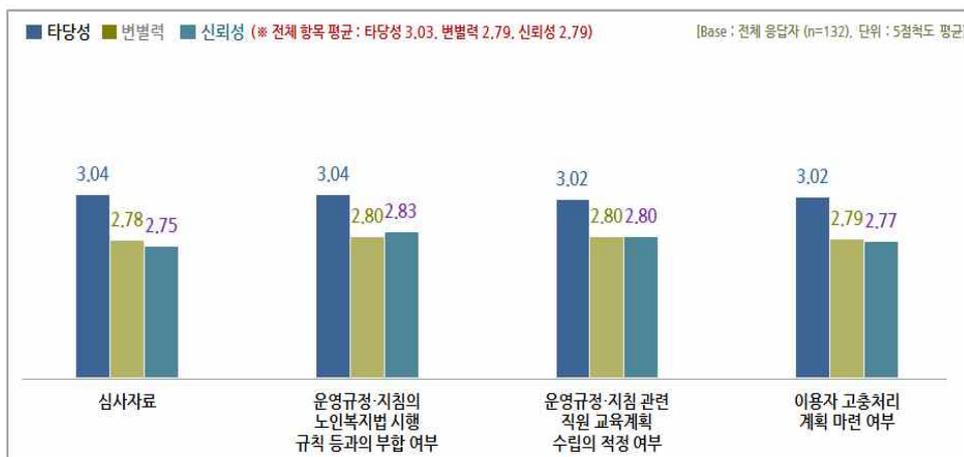
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⁹⁾

1)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자체 담당자는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함

- 타당성 평가가 변별력, 신뢰성 평가보다는 다소 높음



[그림 3-2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9)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영역은 다른 영역대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표 3-3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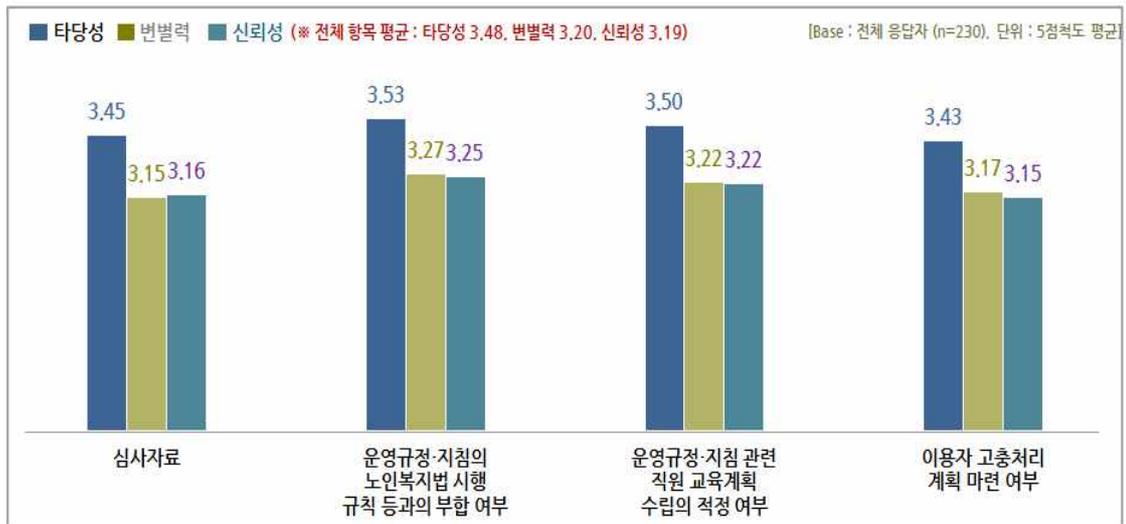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3.04	2.78	2.75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04	2.80	2.83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 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3.02	2.80	2.80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3.02	2.79	2.77
전체 항목 평균	3.03	2.79	2.79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위원회 위원은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 타당성 평가가 변별력, 신뢰성 평가보다는 다소 높음



[그림 3-2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표 3-3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3.45	3.15	3.16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53	3.27	3.25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3.50	3.22	3.22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3.43	3.17	3.15
전체 항목 평균	3.48	3.20	3.19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5점척도 평균]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관련 개선의견 (자유 기입)

① 지자체 담당자

-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제 운영전의 계획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별력이나 신뢰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됨. 그리고 타 기관 운영규정, 계획 등을 다 보고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결국 시설 지정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낮은 수준임
 - 계획의 단계이므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임
 -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기준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작성되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슷하게 작성, 제출되어 심사함에 있어 변별력이 매우 떨어짐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또는 관련법령 등에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담당공무원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절함
 - 대부분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평가적용에 의미가 미약함. 제출자 본인도 전체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며 접수 전 1차 심사에서 공무원에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 전체를 읽어 보고 하나하나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됨. 운영규정이나 사업계획서 전체

가 아님 평가용 제출서식이 법적으로 구비되어 평가 항목만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모든 심사기준표가 모두 “계획 마련 여부”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업체를 통해서 돈을 주고 심사 자료를 사는 등 행정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으며 기관을 지정받고 나서는 아예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계획마련은 글자로 준비만 해오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베껴 오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
- 서류 상 주관적 지표로 점수 반영 어려움
- 신청기관의 서류 등은 대동소이 큰 차이점이 없음
- 심사기준표는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여부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타 기관에서 공유하게 되어 있음.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변별력과 신뢰성이 떨어짐. 작성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단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심사 자료의 필수사항 항목에 대한 매뉴얼과 사업계획서 서식을 통일화하여 변별력 및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심사표에 평가항목을 좀 더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될 우려가 있음. 실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운영규정이나 사업계획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안이 없어 모든 내용에 대해 검토 불가. 주로 심사기준의 항목에 대해 검토하는데 운영규정이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는 사회복지사업법 별표2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고, 급여제공지침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는 판단기준을 모르겠음. 급여제공 지침이란 것을 받지도 않으며, 무엇을 확인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음. 교육계획과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는 운영규정에 1~2줄 정도 해당 내용이 있으면 점수를 줌
- 제출하는 것과 실제 운영은 다르지 않을까 싶음 (제출하는 문서상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타 기관 및 컨설팅 자료로 심사자료를 작성하므로 수리 후 심사자료를 바

탕으로 기관 운영의 충실성, 내실성과 연결되지 않음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신청기관 간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차별성/변별력이 없음

- 항목별 타당, 변별, 신뢰성의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함(신청자별 내용이 대동소이)
- 거의 복사 수준으로 똑같은 부분의 오자조차도 교정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는 신청기관 자료가 많았음. 지부 운영하듯이 둔장사한 것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들이 있음. 미리 신청 전에 신청 기관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딘가에서 복사한듯한 교육 내용만 언급되어 있음
- 규정 등은 모범답안(매뉴얼)이 있으면 공유되어 변별력이 없음
- 단순히 서류에 의한 심사는 다른 유사기관의 내용을 복사해 오는 수준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면접에 의한 묻고 답하는 형식 도입 필요, 자료도 회의 개최 3일전에는 배포되어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
- 대부분 자료가 동일한 요양지침을 탑재하는 수준으로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보임
-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은 기존시설 또는 신규시설로 승인된 기관의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같은 요양서비스를 하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필요한 자료로 충실성 및 적절성은 있으나 변별력은 없음
- 사업 계획과 운영규정 등은 이미 표준화된 양식이 고유되고 있고 따라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자료가 심사자료로 제출되어 변별하기 어려움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의 내용은 신청기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신규 신청기관은 운영규정이나 장기요양의 급여제공지침을 건보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공시내용을 복사하여 제출되고 있음
- 실제 표본적인 운영규정이나 급여제공지침 등이 없는 상태로 다른 기관 것을 의미 없이 복사하는 자료로 개설 기관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

음. 표본적인 운영규정을 제공하고 기관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계획,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등은 표준화된 안이 있어 이를 참고하여 대부분 유사한 수준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이들만으로는 실제 운영상의 신뢰성, 타당성, 변별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표준화된 급여제공지침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모방)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 후에 각 기관의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교과서적인 제공지침 제공)

○ 계획에 대한 이행정도 평가 필요(제도화)

- 매 사업연도 말에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계획과 실행의 합치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사업계획서의 서비스제공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검증을 할수가 없어서 이는 체크를 못함
- 자료로는 서비스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을 보장할 수 없음. 사업 시행 후 운영비를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이행을 지켜봐야 할 것임
- 서비스 제공계획을 실제로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확인 어려움. 특히 지정신청 시 타시설의 계획서를 도용하는 경우 많아 변별력 없음. 실제 서비스 제공계획을 현실가능하게 수립하였는지 또는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신규 지정기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신뢰성 확인이 어려움

○ 보다 구체적인 평가지침이나 표준 매뉴얼, 서식 필요

-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 주세요, 개괄적으로 점수는 통과의례에 불과함 몇

- 가지 항목에서 탈락하면 자동 탈락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규정, 계획 등은 과도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것 같음
 - 신규시설의 운영규정·사업계획서가 심사요청한 시설마다 각기 달라 심사에 어려움이 있음 사전에 표준 양식이 있거나 작성 교육이 필요함
 - 충실성과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치화)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함이 필요함
 - 평가 항목에 따른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규칙 및 제도, 레퍼런스 등의 구비가 필요함
 - 항목별 점수 세부 기준 명시 필요

○ 기타

- 마련 여부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임, 장기요양기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몰라 민원인들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으며, 서비스마다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각기 달라, 그것이 맞는 건지 담당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 준수 여부 적용
- 관련법령의 충분한 이해와 운영규정의 표준화(ex: 시설평가기준 항목 등을 참고)로 기관별 특성은 있으나 표준화 된 규정 지침의 매뉴얼화 필요
- 대표자에 대한 일정한 시간 교육 이수 후 사업계획이나 운영규정 등 제출하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운영규정이나 급여제공지침 등에 대한 이해가 없이(또는 부족) 기관운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서류상 일정기준 미만 시 과감하게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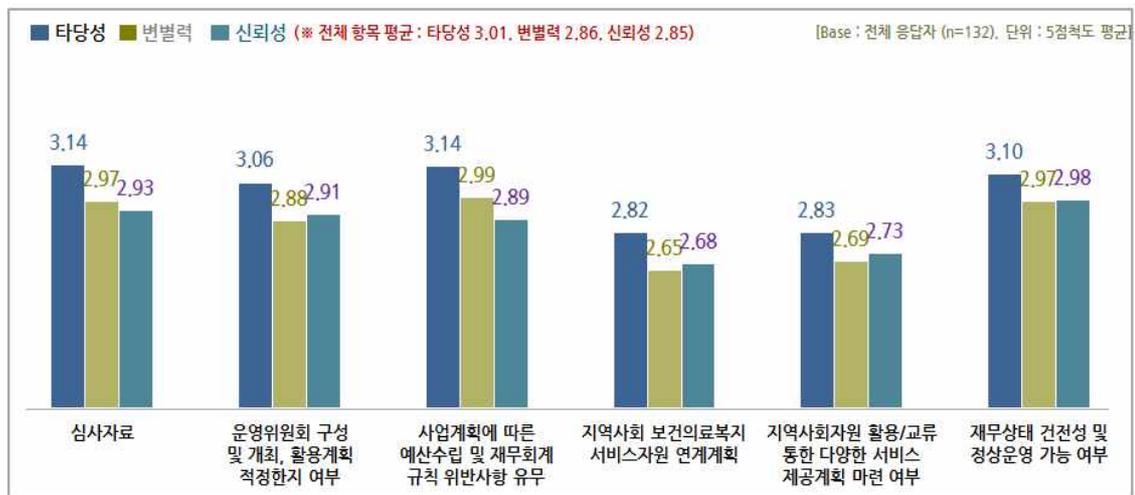
4.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¹⁰⁾

1)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자체 담당자는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한 가운데, 특히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계획’, ‘지역사회 자원 활용·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 마련 여부’ 항목은 다른 항목대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 타당성 평가가 변별력, 신뢰성 평가보다는 다소 높음



[그림 3-2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0)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영역은 다른 영역대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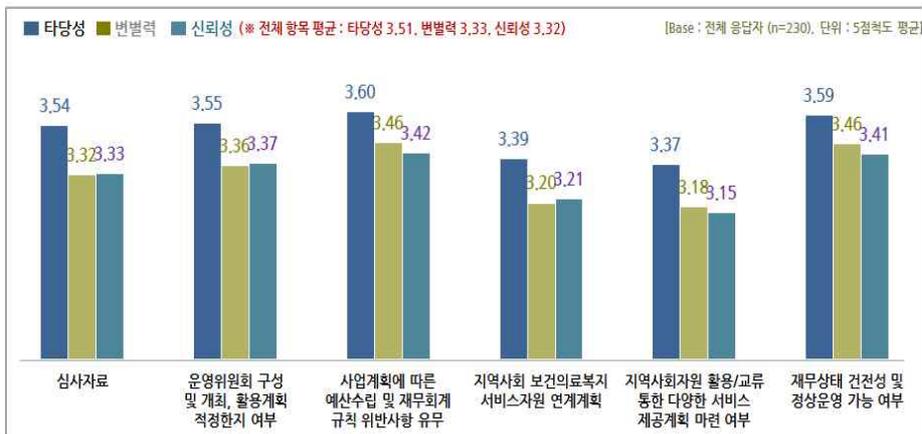
<표 3-3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3.14	2.97	2.93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06	2.88	2.91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3.14	2.99	2.89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2.82	2.65	2.68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2.83	2.69	2.73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3.10	2.97	2.98
전체 항목 평균	3.01	2.86	2.85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계획’, ‘지역사회 자원 활용·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 마련 여부’ 항목은 다른 항목대비 다소 낮게 평가하였음
 - 타당성 평가가 변별력, 신뢰성 평가보다는 다소 높음



[그림 3-24]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표 3-34>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3.54	3.32	3.33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55	3.36	3.37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3.60	3.46	3.42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3.39	3.20	3.2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3.37	3.18	3.15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3.59	3.46	3.41
전체 항목 평균	3.51	3.33	3.32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2)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관련 개선의견 (자유 기입)

① 지자체 담당자

○ 전반적 개선의견

- 계획상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 지정 후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확인이 필요
- 대부분 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설치 및 지정 신청을 하므로 자원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뢰성, 변별력 등이 낮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수준이 낮으며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심사 당시만 연계의 계획 작성에 충실한 정도)
- 장기요양급여수가의 필수충족사항인 직접인건비 사항뿐만 아니라 직원 처우개선과 이용자 자원연계에 대한 필수충족사항을 만들어 따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함
- 모든 부분이 모두 ‘계획 마련’이기 때문에 명확성이 떨어짐
- 입소시설과 이용시설 각각에 맞는 심사기준 필요
- 주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많아 세부적, 구체적, 객관적 지표가 필요함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사업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임. 기관 유형에 따른 점수항목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 개인시설에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수리 전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도 어렵고, 시설대표자도 이해를 잘 못함

○ 예산 수립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 못하겠고, 예산안이 재무회계규칙을 지켰는지를 검토하는데 결국 관-항-목, 차입금, 전출금 등 등에 대한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하나하나 다시 알려줘야 함. 아무리 지침의 무슨 페이지를 숙지하고 보내라고 해도 숙지 안함. 6번 차입금의 경우,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원금상환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차입금은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 수리 후 차입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안내함
- 방문서비스의 경우 자본금의 중요도가 떨어져 적용 필요성이 미약
- 장기요양기관 설치하려는 자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일단 제출된 자료로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함
-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내용 정리 필요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지역사회 자원연계 항목의 경우 판단기준을 모르겠음. 해당 항목 제외하고 점수 안 맞을 거 같으면 대충 비슷한 내용 1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줌
- 솔직히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것이 현실임
- 신청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심사 시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 배점에 어려움이 있음

- 평가항목 대부분이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류 등에 대한 항목은 어떤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 기준이 없음
-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계획은 형식상의 계획일 뿐 실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체계가 필요

○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 시설 설치 부채비율은 노인요양시설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차입금 사전신고서 자체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후 운영비로 본인 부채를 차감할 수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전반적 개선의견

- 자원관리의 적정 수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시설과 기본 흥내만 내는 시설을 변별하여도 차등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
- 확인할 방법이 없음 서류상 내용만 보니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 짐
-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에 대한 심사항목은 도시와 농촌지역 등 환경에 따라 편차가 크고 6년 후 전국 동일기준의 심사기준보다는 차등적이며 순차적 적용이 필요함
- 현재 제시 기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평가기준과 유사. 영세 기관의 반발이 예상됨
- 서류상의 계획서로 평가에 부적절 (계획보다 실행여부에 중점이 두어야 하는데 실행여부 확인이 미흡함)
- 신규와 갱신기관 평가 간 분리 필요 (기준 운용 시 재인증기관은 양호, 신규는 많이 부족)

- 기관 급여 종류 등에 적합한 매뉴얼 마련 (시설과 재가 등)
- 신규 진입 시설의 경우 자원관리에 대한 자료 및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 등은 개최 및 활용계획 보다는 형식을 갖추는 정도

○ 예산 수립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반 시 명확한 수치, 예산서 작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 사업 및 예산계획서가 최근 근거법 및 지침서(매뉴얼)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배분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기보다 수입에 맞춘 지출 수치예산서에 급급하고 사업별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대체적으로 새로 진입하는 기관일수록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등이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 일정 형식을 표준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신청자의 임대보증금의 자금내용과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에 대한 부분도 전혀 예산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재무상태의 건전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산서 베끼기 등 신청기관이 심사지표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자원관리 계획 작성을 적절히 진행한 곳을 찾기 쉽지 않음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다른 기관들의 작성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거나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하지 말고 신청기관의 지역사회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자원 연

- 계, 제공 계획을 세우도록 미리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음
- 신규개설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인위적으로 계획을 세움. 기존에 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였거나 운영을 해본 대표자와의 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가 다를 수 밖에 없음
 - 장기요양이라는 수익성 또는 사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출발하는 기관이 다보니 지역연계라는 공익성과 책임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 보이기에 이 부분(공공의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필요함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공동체의 기여 등 미비)

○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가능한 금융부채부분에 대한 각별한 검토와 채무변제의 계획성 등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계획서 제출이 필요
- 기관이나 대표자의 부채율 등의 정확한 재정상황을 알 수 없고 기관의 폐쇄 및 운영중지 등에 대한 대처안을 찾을 수 없어 복지이용자의 기관 신뢰도가 낮아 보임
- 사업계획을 했는데 6개월간 적자로 운영이 된다면 적어도 그 적자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던지 차입예정서를 받던지 해서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지금은 정원만큼 대상자가 다 이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지분석을 하다 보니 적자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것 같음
- 일반적인 내용들은 의미 없이 나열식이며 부채비율에 맞추어 부채를 냈지만 상환계획이 확인 불가능한 계획이 너무하기에 부채비율이 너무 높게 인정해 주는 건 아닌지 생각됨
- 자산 대 부채 비율의 적정성 고려 필요. 부채가 많을수록 기관의 근무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가능성 높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 시 소유가 필수가 아닌 임대받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설을 담보로 저당을 잡거나 하지 않음. 어떤 부채를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음. 시설을 새로 설치하므로 일단 시설 앞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대표자 개인의 채무 사실 확인서를 떼어 오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설 설치상의 부채인지 알 수 없음

- 재무상태 등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문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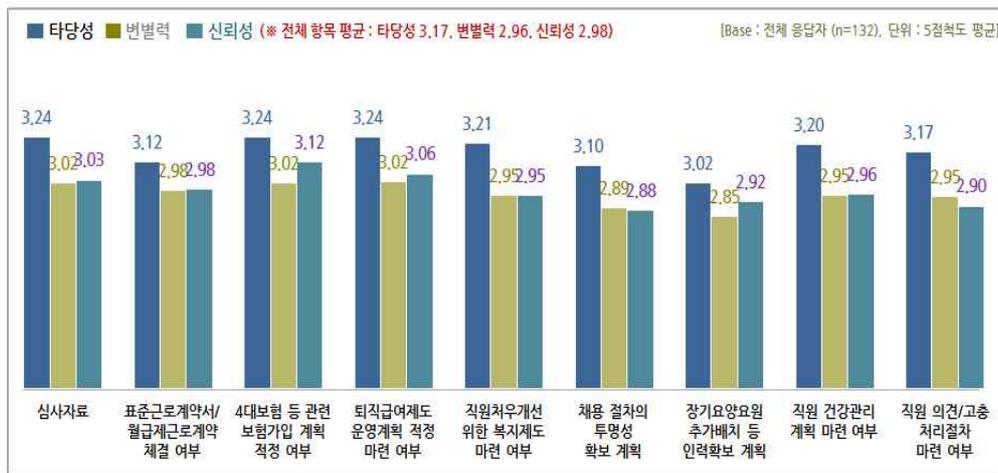
5.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¹¹⁾

1)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자체 담당자는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가운데,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항목은 다른 항목대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 타당성 평가가 변별력, 신뢰성 평가보다는 다소 높음



[그림 3-25]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11)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영역은 다른 영역대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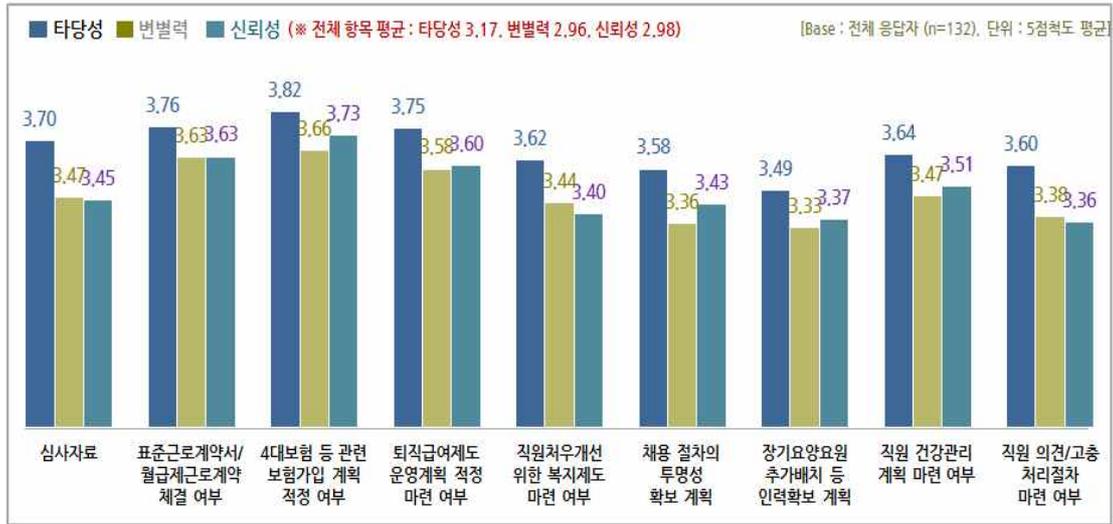
<표 3-35>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3.24	3.02	3.03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12	2.98	2.98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 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3.24	3.02	3.12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24	3.02	3.06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 여부	3.21	2.95	2.95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3.10	2.89	2.88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3.02	2.85	2.92
직원의 건강검진, 근 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계획 등	3.20	2.95	2.96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직원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3.17	2.95	2.90
전체 항목 평균	3.17	2.96	2.98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함
- 단,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항목은 다른 항목대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이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였음
 - 타당성 평가가 변별력, 신뢰성 평가보다는 다소 높음



[그림 3-26]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표 3-36>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3.70	3.47	3.45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76	3.63	3.63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 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82	3.66	3.73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75	3.58	3.60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 여부	3.62	3.44	3.40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3.58	3.36	3.43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3.49	3.33	3.37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계획 등	3.64	3.47	3.51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직원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3.60	3.38	3.36
전체 항목 평균	3.66	3.48	3.50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5점척도 평균]

2)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관련 개선의견 (자유 기입)

① 지자체 담당자

○ 규정 안에 그 항목이 있는 것 뿐 아니라 그 항목의 내용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 상 월급제로 근로체결을 하였으나 방문요양 내 요양보호사는 실질적으로 월급제로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음
- 근로계약의 경우 잘못 체결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담당자들이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음
-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는 컨설팅 업체 또는 타 시설 자료 등을 카피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로서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못함
- 사업계획이며, 표준화되어 있어 변별력이 없음
- 서비스 제공 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표가 필요함
- 서비스 계획은 카피하니 변별력 없고 종사자 고충처리나 이용자 고충처리 마련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자세히 봄
- 심사관련 자료로만 활용하고 그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인력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음
-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용으로 만들어 오지 실제로 준수할 지 알 수 없음
- 추가배치 인력 확보는 실제적으로 해오는 시설이 없으며 방문요양, 목욕 등 재가시설에서는 대부분 시간제로 체결을 하기에 평가에 어려움

② 심사위원회 위원

○ 표준근로계약서 및 완전월급제 관련

- 인사 노무관리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근로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다 시설장과 종사간의 법적 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요구됨 (구체

적인 법적문제 삽입할 것)

- 신규신청 시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항에 대해 계획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방문요양 시설 등은 재소 전 월급제로의 근로계약이 힘들 (현실과 맞지 않는 요양보호사 월급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됨)
- 종사자 임금체계 중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상으론 종사자의 월급제 도입은 현실성이 결여됨

○ 4대 보험 가입 및 처우개선 관련

- 4대 보험, 퇴직급여제도 등 근로기준법이나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기준이 필요함
- 보험가입, 퇴직적립금등은 '가입예정'으로 작성된 문구만으로 평가하므로 한계점 (실제 보험 증권을 증빙하면 점수화하기 좋음)
- 퇴직금 지급이 퇴사하신 종사자에 비해 몇 %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기준(예를 들어 시설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퇴사를 시키는 시설이 많다고 들었음)
-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후생을 운영규정에 명시하도록 하고 업무관련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 또는 기본교육 이수시간 명시하여 평가 필요

○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채용 및 추가배치 관련

- 동일 기관 경우(개인) 대표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직계 가족인 경우 감점 필요
- 공개채용여부는 이미 심사 시에는 채용이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할 길이 없음. 인력추가계획, 직원검진 계획 등은 '~할 예정이다'라고 작성하면 실제 진행할건지 계획여부 판단하기 어려움
-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
- 시설장 및 직원채용 관련하여 채용공고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대한 적정

공고기간 등의 투명성 준수

- 장기요양요원의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기해주었으면 좋겠음

○ 종사자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관련

- 다른 기관들의 작성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지 말고 신청기관 고유의 건강관리 계획과 고충 처리 절차를 작성하도록 미리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음
- 직원 처우개선 및 고충절차 마련 등 실효성 없이 계획만 수립한 경우 많아 변별력과 신뢰성 현저히 떨어짐

○ 기타

- 종사자 교육계획(종사자 윤리,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응급상황 대응, 감염·치매·욕창·낙상·근골격계 질환 예방, 노인인권·개인정보보호 지침윤리, 인권,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의무교육과 역량강화 등)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인 표준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 퇴직금은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으나 다른 항목들은 인터넷에 서치하면 나오는 고충처리, 복지혜택 등을 복사-붙여넣기 해오는 수준이며, 공개채용은 농어촌지역 나이 많은 요양보호사를 모집하기 어려우며, 추가배치 계획도 신뢰성이 떨어짐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 채용절차 투명성, 추가인력확보계획, 직원고충처리 마련 등은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라고 생각함. 지극히 주관적 평가가 될 수 있고, 점수를 낮게 책정한다면 이의가 발생했을 때 납득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음

6. 지자체별 심사항목

1)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별 심사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평가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37> 지자체별 심사항목(지자체 담당자)

구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지자체별 심사항목	3.42	3.32	3.40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 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위원회 위원은 지자체별 심사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평가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38> 지자체별 심사항목(심사위원회 위원)

구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지자체별 심사항목	3.87	3.72	3.82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5점 척도 평균]

2) 지자체에서 별도로(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항목·심사기준

○ 급여유형별 차등화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항목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재가급여(방문 등)진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실제로 방문급여 설치신고가 어려워져 진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나 문제 있는 기관의 진입뿐만 아니라 방문급여 자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항목이라 그 타당성에 의문임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급여종류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 관내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방문요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점수를 낮게 주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보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점수를 높게 주어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급여종류에 따른 차등 점수(방문요양, 차량 없는 방문목욕 : 최하점). 사무실과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지정신청 가능하며, 신청 상담의 대다수의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임. 쉽게 신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은 너무 많으며, 운영하다 어려우면 폐업신고 없이 방치되는 기관들도 다수임
- 시설장의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 근무경력에 따라 0~10점 부과하여 관련 업무 경력자가 설치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자 함
- 시설장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급여종류별 점수배점. 사회복지시설로 설치된 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기 경력확인 사유 및 방문요양시설의 다수 설치로 급여별 배점 차등
-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복지 업무 근무경력.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함(신고제 당시 사무실과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진입하였음.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본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보겠다는 사람이 아주 많음)
- 시설장 사회복지시설 경력. 시설운영에 있어 경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 안전성 관련 항목

- 시설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전문직(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고용 여부
- 화재 안전장 설치 여부

- 시설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안전창문 설치 시 가점 5점
- 시설의 경우 소방안전 보완장치 마련 등은 필수라고 할 항목임
- 시설 점검(소방, 화재, 안전, cctv 설치 등 시설관리) 적정 여부 (비해당 기관: 5점) 시설 안전점검 등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배점
- 응급상황, 비상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폭우, 화재 등의 자연 재해 및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잘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제출서류에 소방관련 필요증명서 기재 필요

○ 동일 건물 내 동일 서비스 제공 여부

- 같은 건물에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차등 점수 부여. 장기요양기관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기왕이면 다른 구역, 다른 건물 등으로 분산시켜 관내에서 지역별로 한 곳에 장기요양기관이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함
- 민원발생 후 처리결과 (민원이 발생 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해결여부를 살펴봄)
-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 최다수 보유하고 있어 무분별 난접 방지를 위한 층수 제한, 저당권 비율에 따른 차별점수, 동일 건물 동일 서비스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음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 설치 시 감점(비해당 기관: 5점). 동일 건물 등에 서비스 제공 기관 중복 설치 방지 목적임
- 제공급여 종류, 소재지 항목 (동일건물, 층)

○ 기타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층 시설로 운영(편의제공 차원)
- 옥창방지 및 관리 매뉴얼 마련 여부. 급여제공지침이 있긴 하나 시설별 개별내용 확인(관련한 불만 민원 다수 제기)

- 법적 의무교육 이수 계획 수립여부.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의무교육은 총 4가지로 해당 계획 수립으로 모든 종사자가 이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함

7. 종합 심사점수

1) 타당성·변별력·신뢰성 평가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자체 담당자는 종합 심사점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평가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39> 종합 심사점수(지자체 담당자)

구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종합 심사점수	3.31	3.22	3.23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위원회 위원은 종합 심사점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평가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40> 종합 심사점수(심사위원회 위원)

구분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종합 심사점수	3.69	3.48	3.54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5점척도 평균]

2)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① 지자체 담당자

○ 급여유형에 따른 심사기준 마련

- 장기요양기관이 세분화 되어있는 만큼(요양원, 공생, 주야간,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이 될 수 있음
- 시설유형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각각에 맞는 심사기준이 있어야 함

○ 심사기준 및 종합심사점수 강화

- 80점보다 기준이 더 높아야 된다고 봄. 과잉 공급과 난립에 대한 벽이 생각보다는 낮다고 여기는 민원이 많음. 제도가 바뀌었는데 또 신규로 설치가 가능하냐고 항의하는 기존 시설장도 많은 편임
- 대표자와 시설장의 운영경력과 전문성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여 백지상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심사점수 80점보다 더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처분 등 서비스제공이력 없으면 50점은 받게 되므로 기본만 해도 80점을 넘게 됨
- 이전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대표가 다시 시설을 설치하여 대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만,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대표의 가족이 시설을 설치하여 대표를 하는 경우는 심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타

- 방문요양시설에서 운영위원회 개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의문이 생김
- 신고제 특성상 어느 정도 기준에 맞으면 반려하는 것이 어려움. 신청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준비해서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 때문에 반려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며, 민원인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한다고 하면 심사가 종료된 후 바로 지정심사를 개최해야하는데 다른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거움

- 심사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절차 같음. 시설기준은 어차피 지켜야 하는 거고, 인력기준의 경우도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나 수리 후 대상자를 모집하고 영업을 시작하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청 단계에서 교육 이수증이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을 듣고 시험을 친 후 합격을 해야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설운영에 더 도움이 될 듯함
-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를 하는 위원들도 명확하게 심사하기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며, 기관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로 대체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
- 지역사회 내에서 심사점수를 최대한 80점으로 주려고 함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신규-갱신별, 급여유형에 따른 다른 심사기준 마련 필요

- 신규 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의 이력이나 급여제공 이력이 없는 상황에 너무 많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어 지정신청만 하면 지정이 되는 구조임. 신규지정 심사표와 갱신의 심사표가 다른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함
- 갱신 기관 심사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운영방식이나 이전 평가점수 등 확인할 항목이 있는 반면 . 신규기관 심사의 경우 평균점수 이하로 줄 명분이 거의 없음 (무경험자, 신규개설자에게 유리한 기준임)
- 평균 심사점수 기준이 각 요양기관별(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재가, 목욕, 주간보호시설)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 같음

○ 심사기준 및 종합심사점수 강화

- 심사점수 평균이 더 높아야 함 (기본 점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기본 80점 이상이 됨)
- 분야별 점수를 통하여 한 분야 과락일 시 종합점수 80점 넘더라도 지정 서류로 하여 보완 시까지 유보하는 방안 필요함
- 시설장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과 6개월 미만의 경력들로 1-2년 이하의 실무 경력으로 심지어 실무경력이 전무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점수배정이 되어 변별이 잘 안되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서류에 대한 심사는 가능하나 추후 시설장의 가치관이 노인복지와 적절하지 않아 민원제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여 시설장의 자격보유 외에 경력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예, 시설경력 5년 이상 등)
- 점수 상향하거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점수 상향 필요하며 서류보완 점수 (70점~80점) 신설하여 담당자가 차후 서류만 보완하면 지정처리 되도록 하는 제도 필요
- 정형화된 심사기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블랙리스트들이 있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가 필요하리라 생각됨
- 지정(갱신)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더욱 강화되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의 비중을 낮추고 면접 및 인터뷰 등의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함
-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운영규정의 배점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시장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과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의 확보에 배점을 상향하여 심사평가함이 장기요양기관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어 제안함
- 항목별 과락 점수가 있었으면 함

○ 종합심사점수 완화

- 심사점수가 너무 높아 조정 필요. 평균 70점정도
- 심사항목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80점 이상 보다는 70점 이상으로 하되 중요 항목(최하점수가 2군데 이상 탈락)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음

○ 가점 기준 마련

- 평가기준 외의 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마련도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소방 시설 등의 법적 요구 사항보다 시설을 더 보강한 경우)
- 예를 들면 요양원의 경우 다인실 보다는 1인실, 2인실 운영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적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기타

- 80점이라는 기준은 질 관리를 위해 적절한 수준일 수 있지만 개별 지표들이 엄격한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80점 이상과 미만의 구분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함
- 근로기준법, 성희롱 문제, 돌봄노동자의 교육 등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원이 필요함
- 심사기준은 좋으나 상세한 배점표가 나와야 함. 현재는 내용에 대한 이해차이 발생 항목이 많음
- 심사기준이 자칫 획일적이고 서류위주여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짐. 블라인드 면접이든 기타 다른 방식이든 실제 운영 대표자와 간단하게나마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면 더욱 더 심층심사가 되리라 생각됨
- 종합심사점수 기준 및 배점을 바꿔야 무분별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막을 수 있음. 좀 더 현장에 맞는 심사지표와 배점이 필요함. 노인학대, 부당청구, 평가회피 등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자체를 제한해야 함

제5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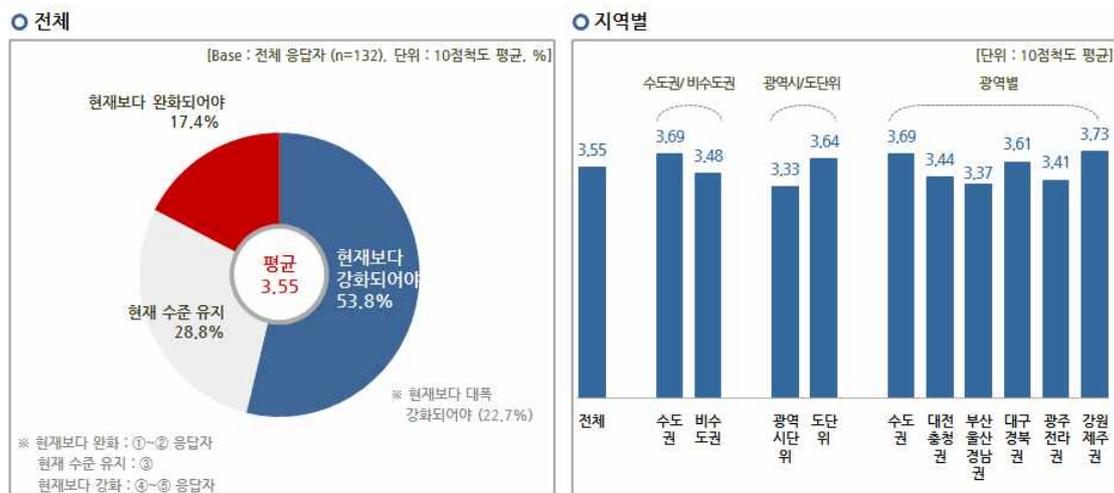
1.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

① 지자체 담당자

○ 현재 지정(갱신) 관련 기준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53.8%는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음 (5점척도 평균 3.55점)

- ‘현재 수준 유지’ 라는 응답은 28.8%이며, ‘현재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라는 응답은 17.4%임

- 수도권 및 대구·경북권, 강원·제주권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높음



[그림 3-27]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지자체 담당자-전체)

<표 3-41>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지자체 담당자-전체)

구분		구성비 (%)	5점 척도 평균
기준 완화강 화	완화되어야 함 (①+②)	17.4	3.55
	현 상태가 적절 (③)	28.8	
	강화되어야 함 (④+⑤)	53.8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명, %, 5점 척도 평균]

<표 3-42>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지자체 담당자-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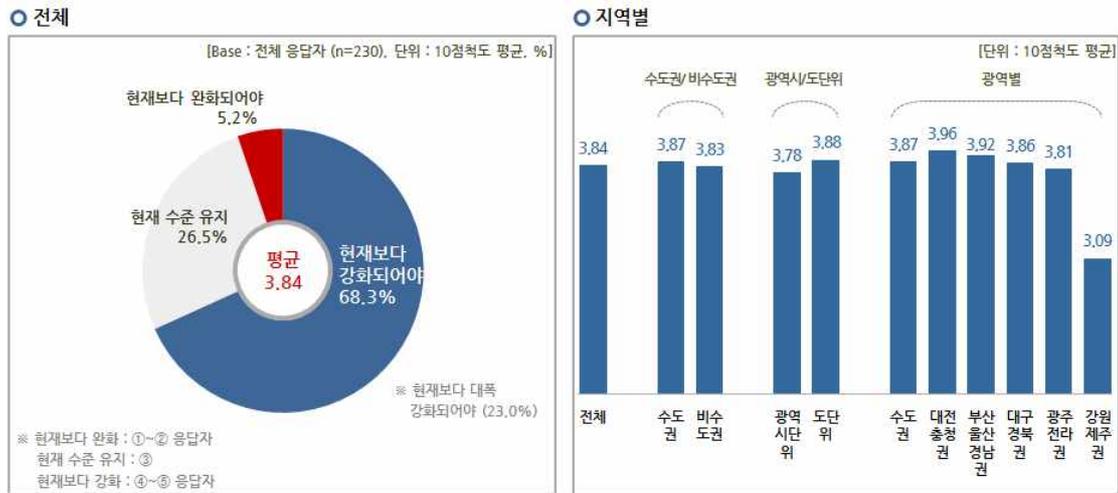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단 위		광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단위	도 단위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강원·제주권
(132)	(39)	(93)	(42)	(90)	(39)	(18)	(19)	(18)	(27)	(11)
3.55	3.69	3.48	3.33	3.64	3.69	3.44	3.37	3.61	3.41	3.73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5점 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현재 지정(갱신) 관련 기준에 대해 심사위원회 위원은 68.3%는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음 (5점척도 평균 3.84점)

- ‘현재 수준 유지’ 라는 응답은 26.5%이며, ‘현재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라는 응답은 5.2%



[그림 3-28]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심사위원회 위원-전체)

<표 3-43>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심사위원회 위원-전체)

구분		구성비 (%)	5점척도 평균
기준 완화 강화	완화되어야 함 (①+②)	5.2	
	현 상태가 적절 (③)	26.5	
	강화되어야 함 (④+⑤)	68.3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명, %, 5점척도 평균]

<표 3-44> 지정(갱신) 관련 기준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 (심사위원회 위원-지역별)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단위/도단위		광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단위	도단위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강원·제주권
(132)	(39)	(93)	(42)	(90)	(39)	(18)	(19)	(18)	(27)	(11)
3.84	3.87	3.83	3.78	3.88	3.87	3.96	3.92	3.86	3.81	3.09

[Base : 전체 응답자, n=(), 단위 : 5점척도 평균]

③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

○ 방문서비스 및 복지용구에 사회복지시설의 의무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음

- 서류 준비의 절차상의 어려움. 서류나 절차가 번거롭고 제대로 된 지침이나 안내가 없음
- 시설기준은 더 엄격해져도 되나, 인력기준은 (특히 방문 서비스 경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현실 반영 필요)
- 어차피 시군구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임. 운영규정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음. 통과만 되고나면 이후의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음. 단, 시설설비 안전관련 등 기본적인 부분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절차 간소화 필요 / 절차상 완화 필요 (원활한 업무추진)
- 제출할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으며 제출서류 표준 매뉴얼이 필요
-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규 장기요양기관 진입이 어렵다고 생각됨
- 지정갱신제로만으로는 문제기관의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므로 조례, 규칙 등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지정제를 통해서 운영에 부적합한 기관에 대한 퇴출은 찬성하지만, 지자체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실상 제도적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지정 도래일이 되면, 많은 기관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영세 장기요양기관의 퇴출우려 불식과 심사항목 요건 충족 기회부여 필요함 (특히, 농촌지역은 행정이나 자원연계 등 전문

역량을 확보하는데 시간 필요)

④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

○ 기관 과잉 및 무분별한 기관 난립 방지 필요 → 서비스 질적 향상위해 필요

- 관내 많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함. 인구대비 적절한 기관 수 등이 있었으면 좋겠음
- 관내 시설 수 총량제 등 검토 필요
- 기존 시설 개소수 과다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위해 정리가 필요함
- 기왕 지정 심사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을 목적을 잘 이행하려면 지정기준 강화 및 지정거부에 대한 재지정신청 기한을 주는 등 강하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노령인구수에 비례한 기관 숫자 제한 필요
-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 적정 기관 수 등의 심사기준 필요
- 점수제가 아닌 거리제한 규정이라든지...대표자의 자격 강화등등 다른 방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함
- 무분별한 장기요양기관 신청으로 폐업, 휴업의 경우가 많음. 밀집도 등을 고려한 심사표 조정이 필요함
- 기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에 비한 공급이 늘어나게 되나 좋은 기관 찾는 것은 어려움 (부실기관이 진입할 수 없는 디테일한 기준 마련 필요)
- 법 개정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며 갱신이후부터는 법 개정이전 기관들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강화되어 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주간보호는 15점 만점을 주게 되면 지정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줘도 지정될 수밖에 없음. 이렇게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아예 진입을 막던지, 아니면 진입장벽을 강화시켜 못하게 하는 게 맞음.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제가 운영되

지만 그렇다고 난립을 막을 수준은 아닌 것 같음

- 지정제로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전문성 등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을 위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시설장/대표자에 대한 자격 조건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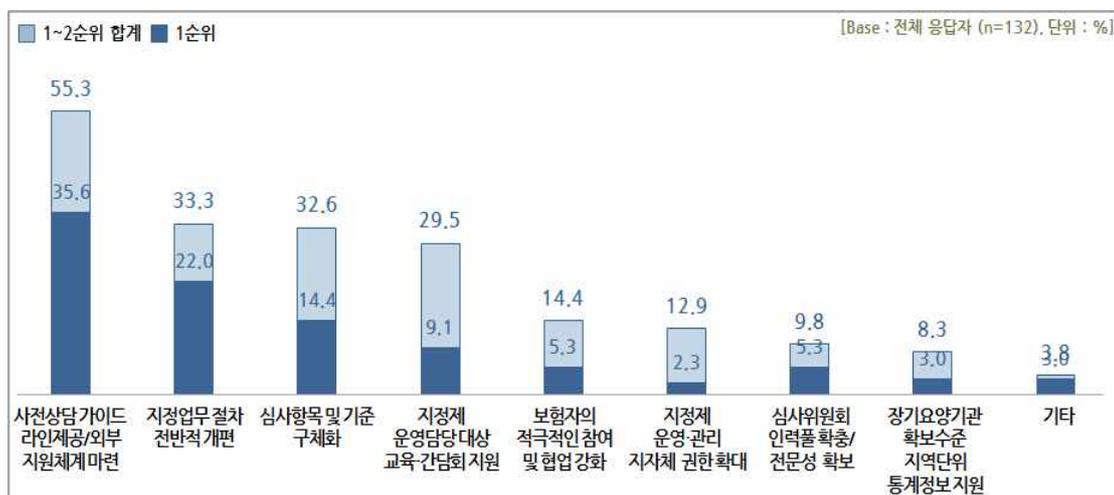
- 센터장 자격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정제로 바뀌어도 자격 조건은 이전과 차이가 없어 진입장벽은 여전히 낮음. 실무 경력 몇년 이상만이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하고 지자체 내에 장기요양기관 총수 제한도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지정제로 부실 운영 기관의 난립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음
- 시설장의 노인복지 근무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전혀 지식이 없이 기관 운영을 하여 시설담당자들의 애로사항 많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현장 경험 없이 바로 설치를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문의하여 업무 과중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도 받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큼
- 사회복지시설을 다른 사업체와 똑같이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듯함
- 단순 사업으로 보고 진입하는 운영자를 막기 위해서 필요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업무가 아닌 개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와 시설장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대폭 강화가 필요함
-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대표자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
- 현재 지정심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설설치예정자들의 기본적인 시설운영 지식이 없어 추후 지정 후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
- 형식적이고 변별력이 적음. 유명무실한 심사가 이루어 짐 (신고제와 다를 바 없음)
- 계획서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켜지는지를 평가해야지 계획 평가는 무의미
- 계획으로만 심사하므로 변별력이 떨어짐. 운영규정, 사업계획서의 문서로만 심사하기에는 실제와 차이가 있음

- 서류심사로만 지정심사를 하는 우리 구는 변별력과 신뢰성 확보가 힘들
- 현재 기준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서류만 완벽하면 미지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정거부가 어렵고 사전에 기준점에 맞춰 심사자료 등을 미리 보완하여 심사는 형식적임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를 시중에서 판매 및 구입해서 너무 잘 준비함. 변별력이 떨어짐

2.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55.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정업무 절차의 전반적 개편’(33.3%), ‘심사항목 및 기준 구체화’(32.6%), ‘지정제 운영담당대상 교육·간담회 지원’(29.5%) 순임(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3-29]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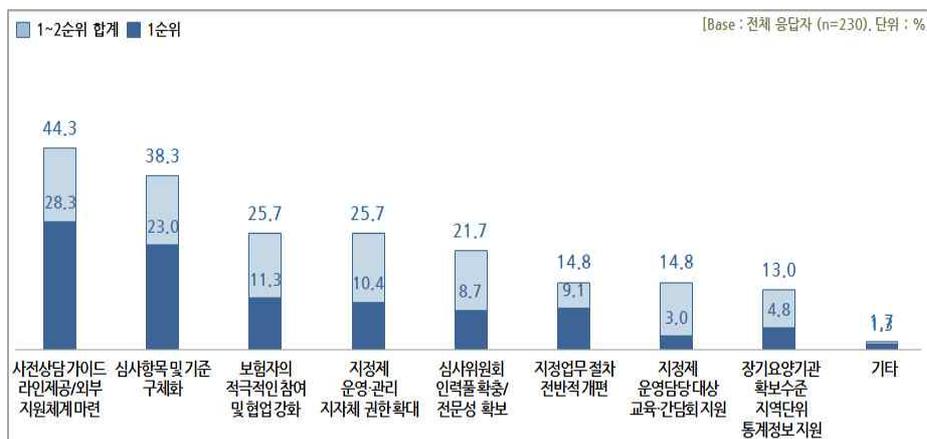
<표 3-45>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지자체 담당자)

구분	1~2순위 합계	1순위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	55.3	35.6
지정업무절차의 전반적 개편	33.3	22.0
심사항목 및 기준 구체화	32.6	14.4
지정제 운영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지원	29.5	9.1
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	14.4	5.3
지정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12.9	2.3
심사위원회 인력풀 확충 및 전문성 확보	9.8	5.3
장기요양기관 확보수준에 대한 지역단위 통계정보 지원	8.3	3.0
기타	3.8	3.0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44.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사항목 및 기준 구체화’(38.3%), ‘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25.7%), ‘지정제 운영·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25.7%), ‘심사위원회 인력풀 확충 및 전문성 확보’(21.7%) 순임(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3-30]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심사위원회 위원)

<표 3-46>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심사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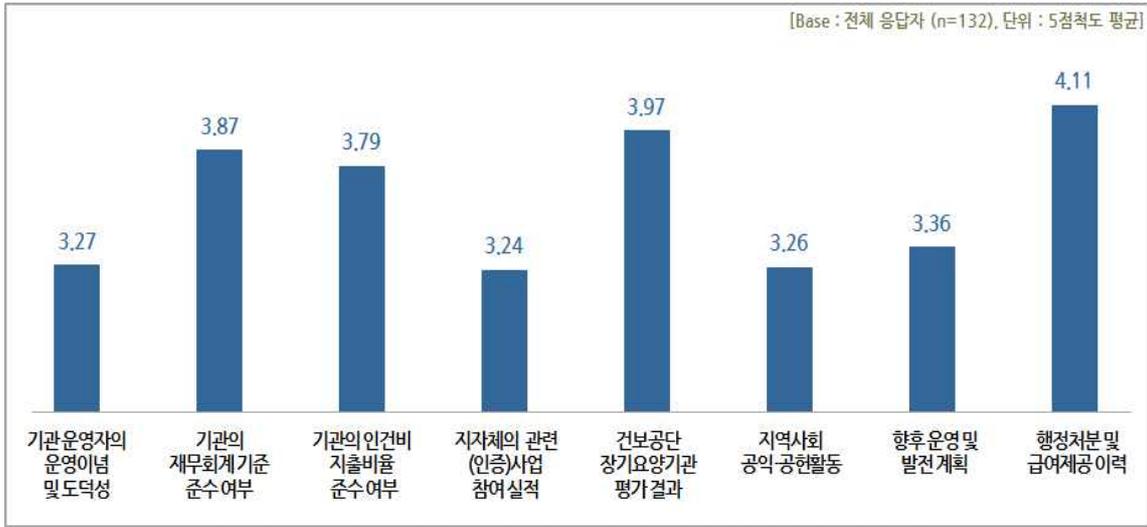
구분	1~2순위 합계	1순위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	44.3	28.3
심사항목 및 기준 구체화	38.3	23.0
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	25.7	11.3
지정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25.7	10.4
심사위원회 인력풀 확충 및 전문성 확보	21.7	8.7
지정업무절차의 전반적 개편	14.8	9.1
지정제 운영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지원	14.8	3.0
장기요양기관 확보수준에 대한 지역단위 통계정보 지원	13.0	4.8
기타	1.7	1.3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

3.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

① 지자체 담당자

- 행정처분 및 급여공제 이력,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기관의 재무 회계 기준 준수 여부,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항목의 반영 적절성이 다른 항목대비 비교적 높음
 - 반면, 지자체의 관련 사업 참여실적, 지역사회 공익·공헌 활동, 기관 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항목의 반영 적절성이 다른 항목대비 비교적 낮게 평가됨



[그림 3-31]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표 3-47>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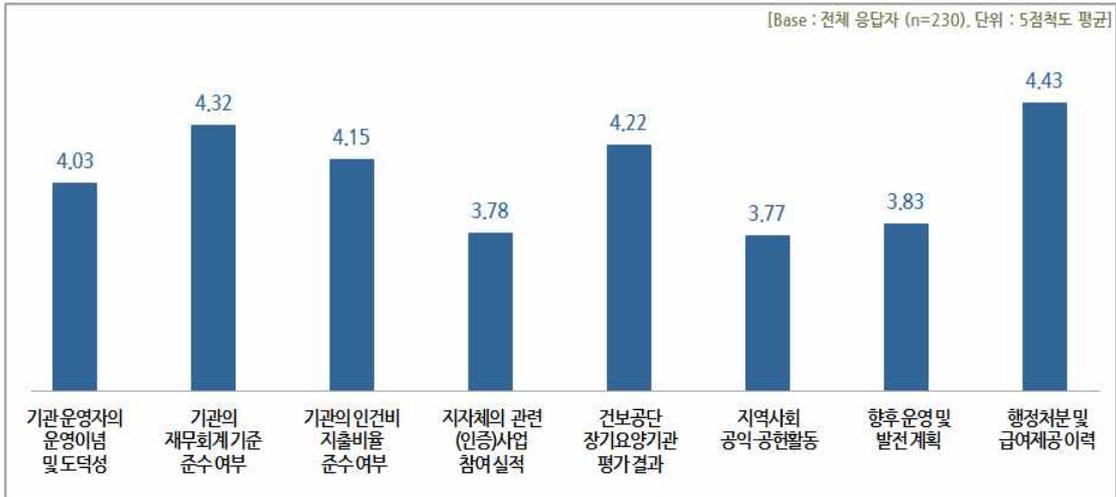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항목	5점 척도 평균
기관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3.27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3.87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3.79
지자체의 관련(인증)사업 참여실적	3.24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3.97
지역사회 공익·공헌활동	3.26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3.36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4.11
전체 항목 평균	3.61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② 심사위원회 위원

○ 행정처분 및 급여공제 이력,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항목의 반영 적절성이 다른 항목대비 비교적 높음

- 반면, 지역사회 공익·공헌 활동, 지자체의 관련 사업 참여실적,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항목의 반영 적절성이 다른 항목대비 비교적 낮게 평가됨



[그림 3-32]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표 4-48>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적절성(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항목 및 기준 반영 항목	5점척도 평균
기관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4.03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4.32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4.15
지자체의 관련(인증)사업 참여실적	3.78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4.22
지역사회 공익·공헌활동	3.77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3.83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4.43
전체 항목 평균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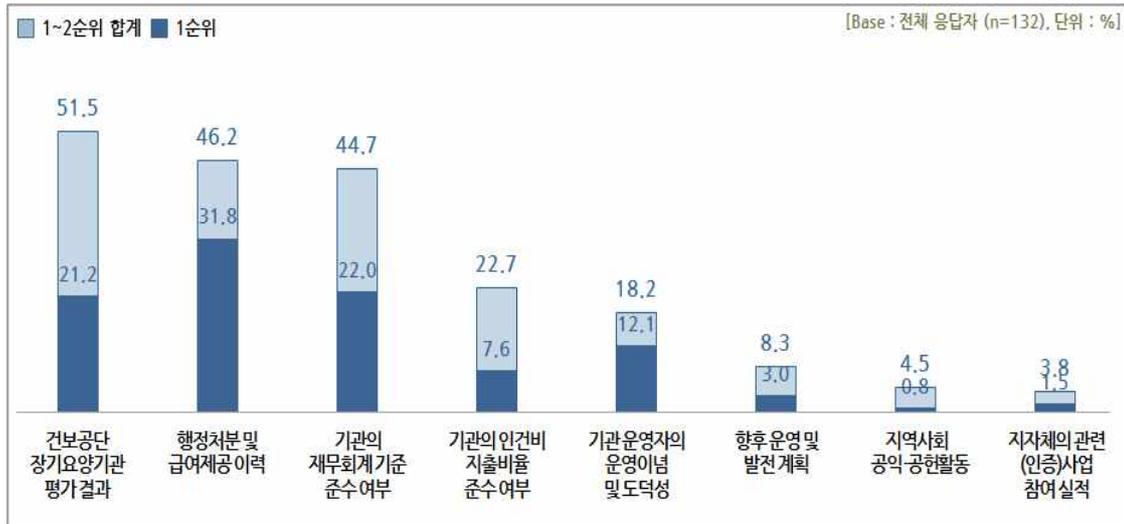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5점척도 평균]

4.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① 지자체 담당자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51.5%)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46.2%),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44.7%), ‘기관의 인건

비 지출비율 준수여부'(22.7%) 순임 (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3-33]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 (지자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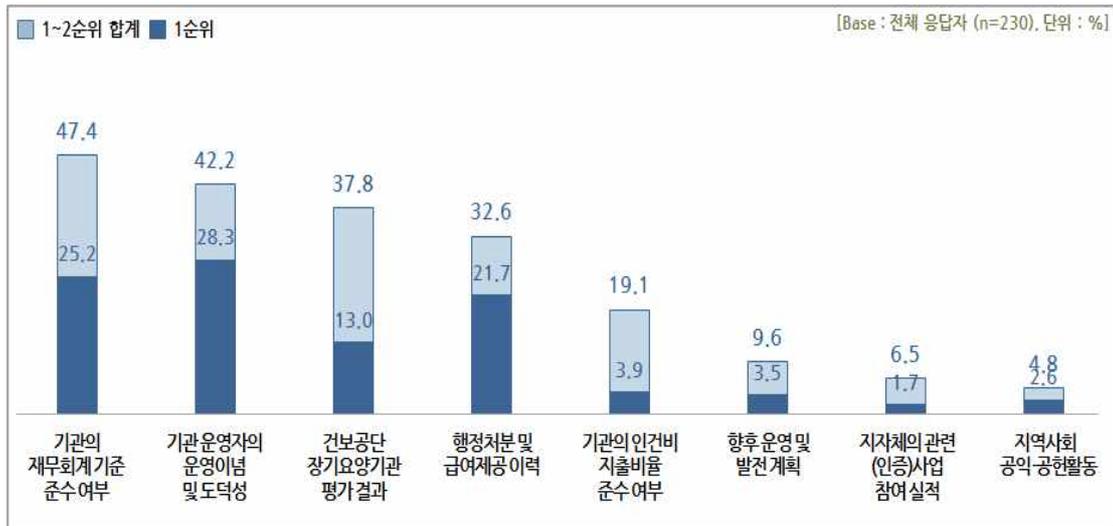
<표 3-49>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지자체 담당자)

구분	1~2순위 합계	1순위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51.5	21.2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46.2	31.8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44.7	22.0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2.7	7.6
기관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18.2	12.1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8.3	3.0
지역사회 공익·공헌활동	4.5	0.8
지자체의 관련(인증)사업 참여실적	3.8	1.5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47.4%)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42.2%),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37.8%)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32.6%),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19.1%) 순임 (1~2순위 합계 기준)



[그림 3-34]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 (심사위원회 위원)

<표 3-50>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 (심사위원회 위원)

구분	1~2순위 합계	1순위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47.4	25.2
기관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42.2	28.3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37.8	13.0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32.6	21.7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19.1	3.9
향후운영 및 발전계획	9.6	3.5
지자체의 관련(인증)사업 참여실적	6.5	1.7
지역사회 공익·공헌활동	4.8	2.6

[Base : 전체 응답자 (n=230), 단위 : %]

5.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계획 여부

-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5.4%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갱신제 운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

<표 3-51>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계획 여부(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별도 계획 여부	구성비 (%)
계획 있음	5.4
계획 없음	94.6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

6. 향후 갱신 시 연평균 예상물량

- 향후 갱신 시 노인요양시설은 연평균 8.59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4.63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0.87건 정도 예상된다고 응답하였음

<표 3-52>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계획 여부(지자체 담당자)

구분	평균 (건, 연평균)
노인요양시설	8.59
노인공동생활가정	4.63
재가장기요양기관	30.87

[Base : 전체 응답자 (n=132), 단위 : 건]

7. 지정(갱신)제 관련 기타 의견 (자유 기입)

① 지자체 담당자

- 6년 후 갱신심사 시 업무 폭증 예상 → 지침, 안내, 인력충원 등 대비 필요
 - 6년 후 현 시설에 대해서도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방안이 안내되면 좋겠음
 - 갱신 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함. 미리 구체적인 계획안을 시달해 주었으면 함
 - 갱신 심사 시 인력충원 필요
 - 기존 기관에 대한 2025년 재지정 갱신에 대해서 시군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로 충분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지정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시설이 모두 갱신대상 시설이 됨으로써 발생할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막대한 업무량에 있음. 기존시설이 신규지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이 되어야 한다면 인력충원이 필수임
- 첫 갱신 시 대부분의 시설이 일시에 갱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업무가 폭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함
- 법 개정에 따른 갱신연도가 비슷하여 법 시행 6년 후에 갱신지정시의 업무량 과다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장기요양기관번호 앞자리 기준 3번시설이 지정 만료되는 25년 말에 최소 50건의 갱신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50개 이상의 시설이 지정만료일이 동일함

○ 실질적인 지정 갱신제 운영이 되어야 함

-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제한 기준을 두어야할 듯함. 너무 많은 기관이 같은 권역 안에 생기면 기관간의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쉽다 보니 센터장의 자격 조건을 보다 강화하지 않는 한 지정제로 바뀌어도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도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이전 방법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신청 기관 대부분 결국 지정을 받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만 늘은 이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 제도인지 의구심이 듭
- 지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도입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반려하는 건수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으나 반려가 되어도 이후 보완하여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일련의 서류 보완과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이 절차상 업무의 과중만 부여한다고 느껴지며 실질적으로 신규기관 진입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시설설치가 이루어지고 나

서 지정반려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 인력요건, 기타 제반서류제출이 충족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반려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봄

○ 효과적인 지정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총원 필요

- 지정(갱신)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력풀에 대한 보충도 필요한 상황임. 지자체 인력 1~2명(보통 1명이 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업무 과중 및 효율성, 효과성 면에서도 떨어져 보임
- 담당 공무원은 제한적이나 기관수가 너무 많이 질적 평가가 어려움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도입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자체를 컨설팅으로 생각함.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세부내용 하나하나를 지자체에 요구하여, 민원처리 소요 시간, 민원제기가 증가함

○ 기타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을 설치 후에 지정되는 것임.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신고자의 몫이 되며, 이 또한 지자체를 발목 잡게 하는 부분임. 선 시설설치, 후 기관 지정으로 인해 지정을 받지 못하면 신고자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 서류 보완 등 지정 신청을 다시 하게 되지만, 또 못 받을 경우에는 서로 난감하게 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우리 구는 공단에서 신규 설치를 적극 거부하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갱신제를 강화하든지, 아예 신규 설치는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음
-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철저히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지정제 도입 취지에 그나마 부합할 수 있을 것임

②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기준 및 자격요건 강화를 통한 지정(갱신)제 효과 제고 필요

- 개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해 줄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신청 전 수요조사가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수요대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음
- 대표나 시설장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경력자가 되어야 할 것임 (시설장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의 강화 필요)
- 무분별한 시설 확충 제제를 위한 심사표 강화(지자체 점수 비율 높여서) 필요
- 문제 발생 기관 재진입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문제 종사자에 대한 재진입이 방지 될 수 있도록 거르는 역할도 강화되어야 함. 시설장 요건이 강화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법적으로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 능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듯함.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학점 은행제를 통한 자격 취득과 실무능력이 거의 전무한 경우에도 중장년자의 제2의 직업으로 너무 쉽게 접근하게 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음.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어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자치단체별 총 장기요양 대상자수와 1개 기관 적정요양인원 따른 장기요양 기관 수를 정원제로 관리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된 시설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봄
-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질적 서비스 제공이 잘 되고 있는가? 투명하게 운영 되고 있는가? 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지정을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 매뉴얼, 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지침, 교육 등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여 지켜지도록 제안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관련하여 공단평가를 강화하여 향후 갱신 시 부담시설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보완될 필요 있음
- 지정제에서 미지정후 재신청에 대한 기한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 지정제의 안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은 낮추고 형식적 요건 등은 표준적인 운영계획을 신청단계에서 제시하고 안내하는 등 교육을 통한 제도 진입단계에서는 적극 장려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따른 패널티는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 장기요양평가에서 하위단계(D, E등급)를 연속 평가되거나 행정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에서 갱신 심사 시 퇴출시키거나 기관운영중이더라도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지침 마련·제공 필요

- 담당공무원과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심사기준이 좀 더 구체화 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들도 사전 기관운영 준비 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변별력과 책무성 또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 장기요양기관의 허가제를 지정제 변경한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 항목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함
- 현재 심사표는 너무 형식적인 요식행위임. 국가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고 강력한 규정이 필요함.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어 부당청구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다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가는 편법을 사용하는 악질적인 기관도 많음 공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공단지침을 듣지 않고 안하무인격인 기관도 많음. 재지정 평가 시에는 심사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고, 심사숙고하여 또다시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았으면 함

○ 지정제 관련 교육 강화 (신청자, 공무원, 심사위원 모두 해당)

- 지정신청자를 위한 지정제 관련 교육 필요
- 기본적으로 재무회계규칙 등 명확하게 업무에 대해 숙지를 하고 지정신청을 원하는 기관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이 진행이 되었으면 함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경우 장기요양법과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교육 몇 시간에 대한 이수증이 서류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함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여 일정 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4대 보험 관련법, 근로기준법, 관련 회계기준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기관 운영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개선 요망
-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공공성이나 제도 변화, 각 항목에 대한 검토 등). 기관장에 대한 교육은 더욱 더 절실함
-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지정심사제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무자에게 빠른 시일 내로 제공해 주었으면 함.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민원인, 담당자가 사실상 점검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함

○ 기타

- 신청 서류의 획일화 등이 심사지정의 큰 의미에 다소 부족함(대부분 기관이 외부업체를 통한 행정서류 준비). 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현행 심사위원이 당일 한정된 시간에 심사)
- 농촌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심사기준이나 항목에 반영 필요
- 갱신과 신규 지정 심의는 구분되어야 함
- 지정제 상에서 서류만 갖추면 너무 쉽게 지정을 해주므로 사회복지의 룰이 깨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과 상도덕을 지키지 않고 사회복지를 하는 시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허가제로 바뀌어야 함

제4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외 사례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지정갱신제 관리 및 운영체계

제2절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공기관 허가 및 운영

제3절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 사례 검토

제4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외 사례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지정갱신제 관리 및 운영체계

1. 개호보험의 서비스사업자 관리 방향

(1)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과 서비스의 질 향상

○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책무

- 개호서비스 사업자는 요개호자·요지원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개호보험법과 그에 근거한 명령을 준수하고, 요개호자·요지원자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책무가 있음

○ 개호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최저한도의 규정을 정한 지정기준

-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개호서비스는 서비스종류별로 규정된 서비스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지정을 받은 개호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음
- 지정기준은 각 서비스의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제가 되는 인원기준, 설비(시설)기준, 서비스제공의 방법 등에 대한 운영기준의 세 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음
- 개호서비스 사업자는 이러한 기준에서 항상 사업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2006년도부터의 사업자 규제의 개정

- 개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악질적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책무를 법률상에 명시하였고, 지정에 있어서 결격사유·취소요건을 추가하였고 동시에 사업자의 지정효력에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는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보다 실태에 입각해서 지도·감사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도도부현(시정촌)의 권고·명령 등의 권한이 정비되었음

2.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과 갱신제도

1) 개호서비스 사업자 지정기준의 방향

○ 개호서비스 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지정기준

- ① 기본방침, ② 인원기준(종사자의 지식·기능·인원에 관한 기준), ③ 설비 기준(사업소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기준), ④ 운영기준(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개호서비스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운영상의 기준) 등의 요건이 정해져 있음
- 개호서비스 사업자는 각각의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진 지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신청을 통해 사업소마다 도도부현 지사 등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지정기준은 개호서비스 사업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2) 개호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종류별 지정기준

<표 4-1> 개호서비스 유형별 지정기준

개호서비스 유형	지정기준
거택서비스 사업자	지정거택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9년 후생성령 제37호)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	지정지역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7호)
거택개호지원 사업자	지정거택개호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9년 후생성령 제38호)
개호노인 복지시설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9년 후생성령 제39호)
개호노인 보건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의 인원, 시설 및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9 년 후생성령 제40호)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9년 후생성령 제41호)
개호예방서비스 사업자	지정개호예방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및 지정개호예 방서비스 등에 관한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 준 (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5호)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사업자	지정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및 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에 관한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 (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6호)
개호예방지원사업자	지정개호예방지원 등이 사업의 인원 및 운영 및 지정개호예방지원 등에 관한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 (2006 년 후생노동성령 제37호)

3) 지정 후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대응

- 개호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에는 개선지도나 지정효력의 정지·취소 등의 대상이 됨
 -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나 이용자의 신체 또는
생명의 안전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지정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것

3. 개호보험법에 따른 사후규제 사항

1) 사후규제 도입의 배경

○ 종전부터 「개호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사후규제의 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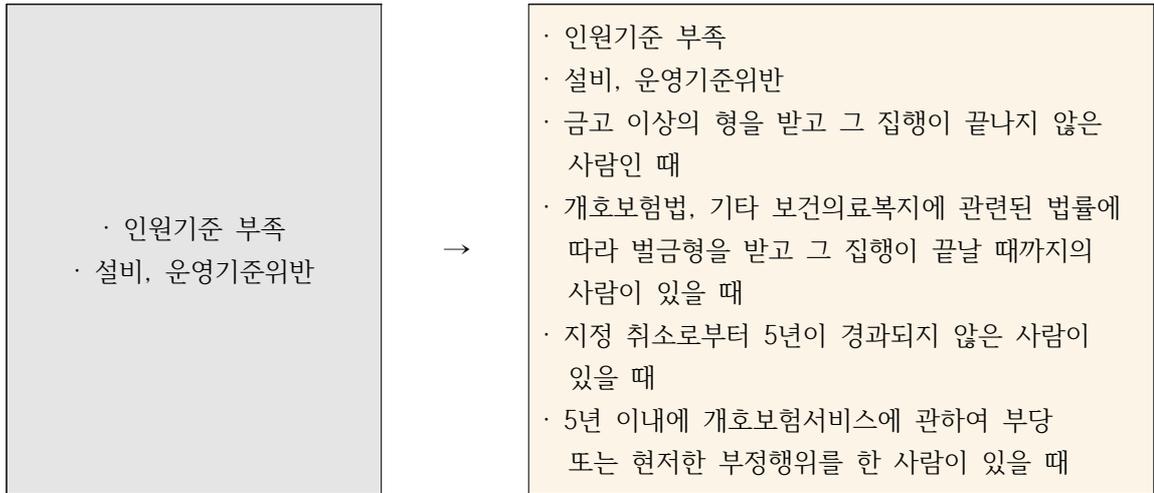
① 지정거부의 요건이 불충분

- 과거에 불상사를 일으킨 사업자에서 재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정거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권자인 도도부현은 지정을 거부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A현에서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가 B현에서 새롭게 지정신청을 한 경우나 과거에 지정취소를 받았던 사업자가 별도의 법인으로 지정신청을 해 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지정 등의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정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지정거부 요건을 개선함
-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고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지정도 취소될 수 있음
- 특히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임원 등에 대해서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됨. 예를 들어 새롭게 개호서비스의 사업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법인의 임원 가운데 과거 5년 이내에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정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지정거부 요건을 개선함

○ 대상자 추가



○ 지정 결격사유 및 지정취소요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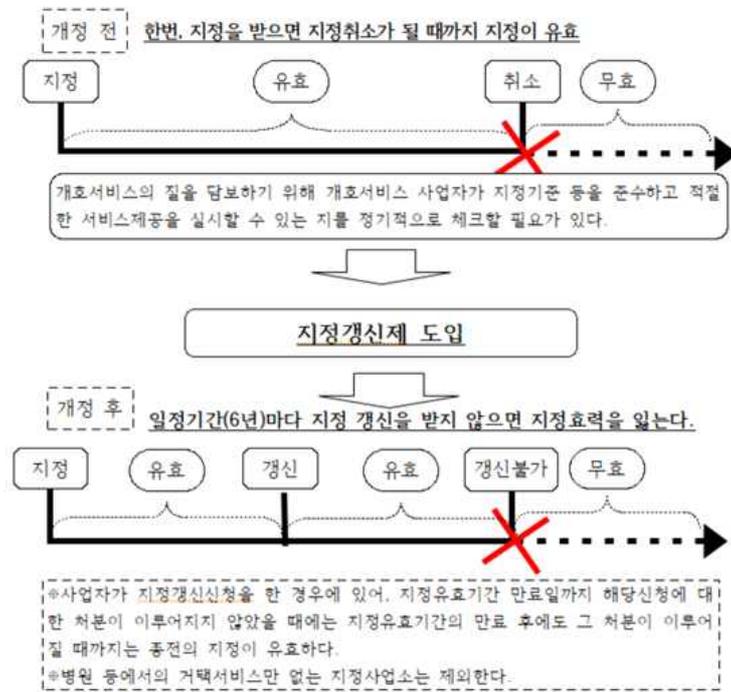
② 지정효력의 기한이 없음

- 일단 지정을 받으면 지정효력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가 기준을 엄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음

○ 대책으로 지정의 갱신제를 도입함

- 지정효력에 유효기간(6년)을 설정
-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나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의 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됨
- 갱신의 결격사유는 지정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 지정의 갱신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한번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취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하였음. 그러나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개호서비스 사업자가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
- 지정의 갱신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일정기간(6년)마다 지정갱신을 받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유의해야 할 것은 사업자(신청자)뿐만 아니라 법인임원 등에 대해서도 지정갱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의 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지정거택서비스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가운데 과거 5년 이내에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갱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호보험에 따른 지정거택서비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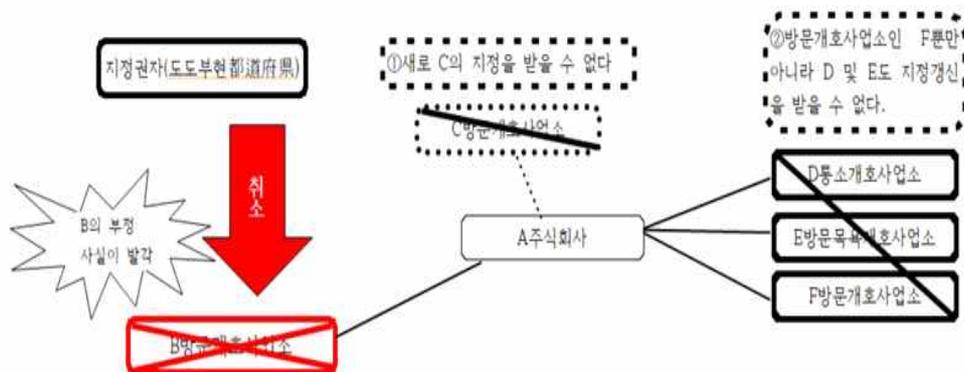
[그림 4-1] 사후규제의 도입 배경

③ 권고, 명령 등 추가

- 도도부현, 시정촌이 보다 실태에 입각한 지도·감독 및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선권고, ㉡업무개선명령, ㉢지정효력정지의 권한을 추가

2) 사후규제 적용 대표 사례

- ① 개호서비스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은 새롭게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② 상기의 법인이 복수의 개호서비스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지정갱신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산하의 개호서비스사업소가 연좌하여 지정의 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됨
 -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보면 A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B 방문개호사업소에서 부정한 사실이 발각되어,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A 주식회사는 「지정취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라는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A 주식회사는 새롭게 C 방문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마찬가지로 「지정취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라는 지정갱신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때문에, A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동일한 지정의 종류인 D 통소개호사업소, E 방문목욕사업소 및 F 방문개호사업소도 B 방문개호사업소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정갱신을 받을 수 없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



[그림 4-2] 사후규제가 적용되는 대표사례

3) 개호서비스의 지정 종류

<표 4-2> 개호서비스의 지정 종류

지정거택서비스	지정개호예방서비스
- 방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개호 · 방문목욕개호 · 방문간호 · 방문재활 · 거택요양관리지도 	- 방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호예방방문개호 · 개호예방방문목욕개호 · 개호예방방문간호 · 개호예방방문재활 · 개호예방거택요양관리지도
- 통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소개호 · 통소재활 	- 통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호예방통소개호 · 개호예방통소재활
- 단기입소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입소생활개호 · 단기입소요양개호 ·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 복지용구대여 특정복지용구 판매 	- 단기입소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호예방단기입소생활개호 ·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 개호예방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 개호예방복지용구대여 · 개호예방특정복지용구 판매
- 지정거택개호지원	- 지정개호예방지원
-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 개호노인보건시설
-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	

4) 권고·명령 등의 권한

○ 이전에는 부정을 저지른 지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행정처분의 방법으로 「지정취소」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실태에 맞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보다 실태에 맞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의 시스템을 2006년 4월부터 새롭게 규정

① 지정서비스 사업자가 지정기준에 규정된 종사자의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서비스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권고)

② 지정서비스 사업자가 기한 내에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공표)

③ 권고를 받은 지정서비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서비스 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명령)

④ ③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적절한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공시)

○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촌(보험자)는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소 소재의 도도부현에 통지해야 함.(기타 내용도 시정촌(보험자)는 도도부현에 정보제공이 가능)(통지)

5) 개호서비스 사업소지정의 효력정지에 대하여

○ 종전에는 지정서비스사업자가 부적정한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도, 「지정취소」 이외의 대책이 없어 긴급 조치 등의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

- 이에 따라 부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정서비스 사업자를 확인한 경우에 부적정한 서비스제공을 이유로 신속히 개호수가의 청구를 정지하는 등의 지정 전체 또는 일부 효력 정지를 실시할 수 있게 됨

· 개호보험법 제77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에 관한 제41조 제1항 본문의 지정을 취소하고 또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전체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개호보험법 제77조의 2

“시정촌은 보험급여에 관한 지정거택서비스를 실시한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전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에 관한 사업소 소재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4. 지정(허가)갱신 제도 주요 내용

1) 개요

- 2006년 4월 서비스의 질 확보·향상을 목적으로 한 지정(허가)갱신제도가 도입되어, 개호서비스사업자는 6년마다 지정(허가)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지정(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개호수가를 청구할 수 없음
- 지정(허가)의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허가)갱신을 신청해야 하는데, 인원·설비·운영 등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나 신청법인이나 그 임원 등이 과거에 지정취소처분을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지정갱신을 받을 수 없음

2) 지정(허가)의 유효기간

- 지정(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일로부터 6년이고, 지정일과 사업개시예정일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통지문을 확인하고 지정 유효기간 내에 지정갱신을 신청해야 함

(3) 지정(갱신) 결격사유

- 사업소에서 인원결여 등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신청자(법인), 법인

임원, 관리자 등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갱신)을 받을 수 없음

-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② 개호보험법, 기타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③ 지정(허가) 취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④ 주식회사, 지분회사로 형성되는 동일법인 그룹에 속한 법인이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인이 지정취소를 받은 것으로 인해 연좌제가 적용되어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⑤ 지정(허가)의 취소처분이 통지일로부터 처분일까지의 사이에 사업폐업 신고를 하고 그 신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⑥ 도 또는 시정촌의 현장실사 후 10일 이내에 지정권자로부터 청문결정에 정일이 통지된 경우로 청문결정예정일까지의 사이에 사업폐업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⑦ 5년 이내에 개호보험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자

4) 지정(갱신)이 필요 없는 사업자

- 간주지정의 개호서비스사업자는 지정갱신 신청절차를 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병원 또는 진료소 개설자가 간주지정이 아닌 보통의 신청을 통해 지정을 받은 통소재활(개호예방통소재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정지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정갱신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① 보험의료기관(병원·진료소)이 제공하는 방문간호·개호예방방문간호, 방문재활·개호예방방문재활, 거택요양관리지도·개호예방거택요양관리지도, 통소재활·개호예방통소재활
- ② 보험약국에서 제공하는 거택요양관리지도·개호예방거택요양관리지도
- ③ 개호노인보건시설에서 제공하는 통소재활·개호예방통소재활, 단기입소요양개호·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 ④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이 제공하는 단기입소요양개호·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5) 휴업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

- 휴업 중인 사업자는 인원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등 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지정(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음
 - 현재의 지정(허가)을 계속하길 희망하는 경우는 지정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재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지정(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재개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됨

6) 지정(허가)갱신절차를 유효기간 내에 하지 않는 사업소

- 지정(허가)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지정(허가)갱신신청서는 수리하지 않음
 - 당연히 현재의 지정(허가)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이용자나 거택개호지원사업소 등의 관계사업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함
 -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허가)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여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절차를 하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함

5. 지정(허가) 갱신 신청의 절차

1) 신청기간

- 원칙적으로 지정(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부터 별도로 통지하는 제출 기한까지를 신청기간으로 함
 - 지정(허가) 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에 보험자로부터 “개호서비스사업자의 지정(허가)갱신신청에 대해서”가 보내져서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함

- 지정(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전전달에 “개호서비스사업자의 지정(허가)갱신

신청에 대해서”가 오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서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유효 기간 만료일의 14일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또한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야 하고, 봉투에 [지정갱신신청서재중]이라고 표시

3) 제출부수

- 신청서, 첨부서류와 함께 1부 제출, 또한 복수의 개호서비스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각각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서가 필요함

4) 제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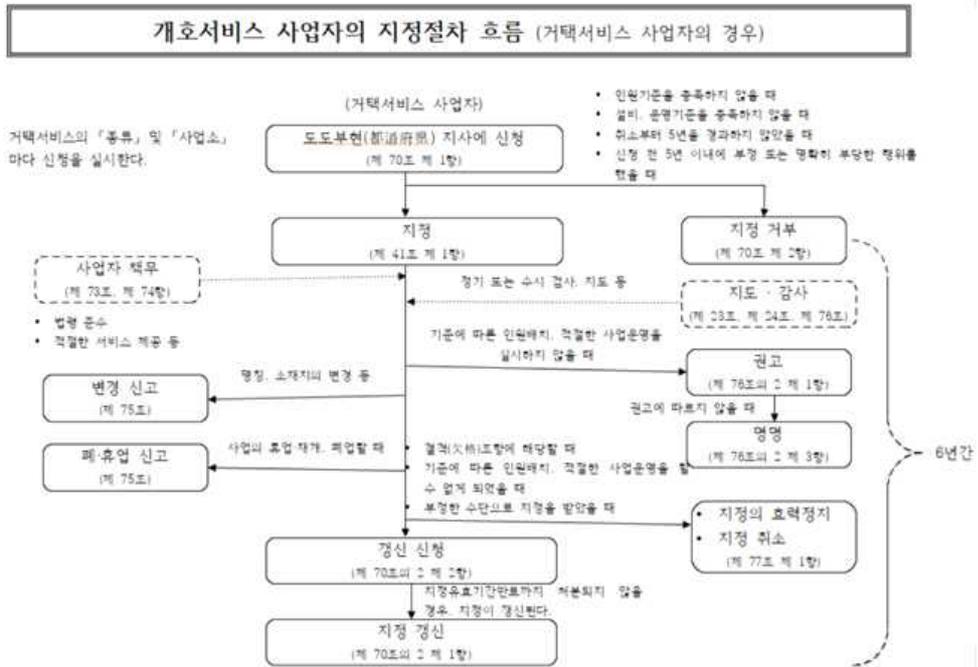
- 각 개호서비스사업소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종합진흥국

5)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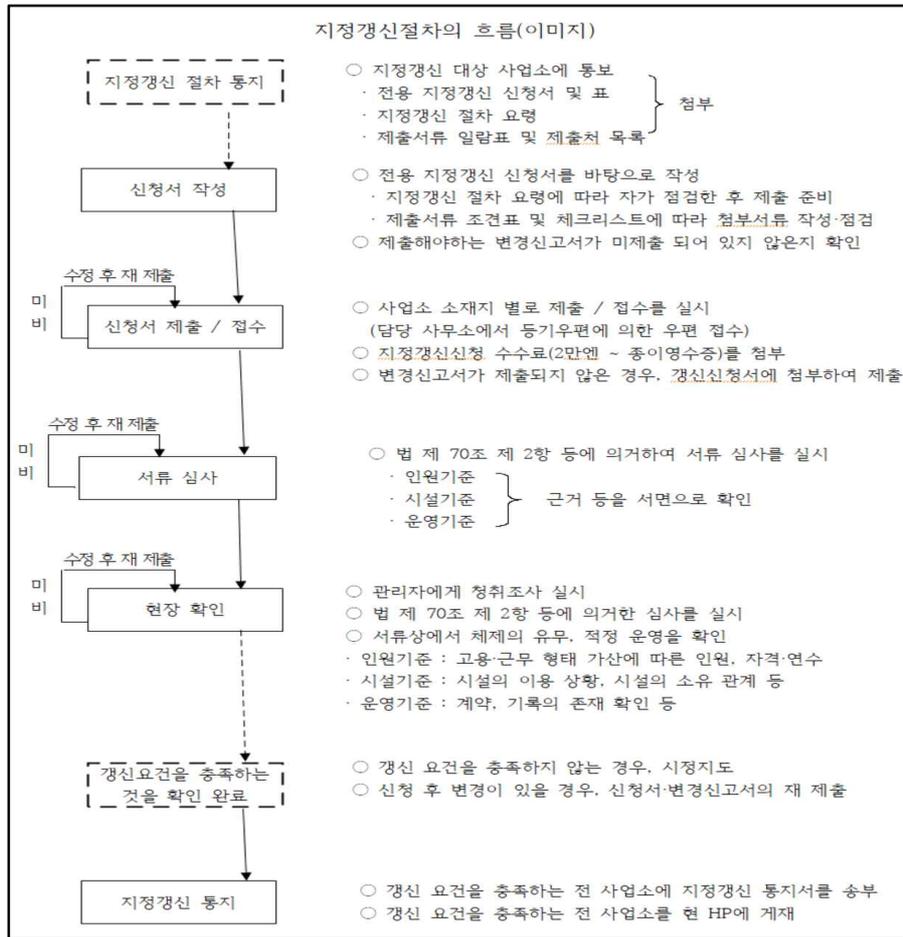
- 서류심사
 - 제출된 지정(허가)갱신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심사함. 또한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해서 내용확인을 위해 전화나 문서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소에서는 반드시 신청서의 복사본을 준비하도록 함
- 현지조사
 - 필요에 따라 인원기준(종업원의 근무내용 또는 고용상황 등)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6) 심사결과

- 심사결과 지정(허가)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경우는 지정(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지정(허가)갱신통지서'를 송부함



[그림 4-3]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절차 흐름



[그림 4-4] 지정갱신절차의 흐름

6. 개호서비스사업자 지도·감식 방침

1) 개요

- 개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2006년 10월 23일자로 「개호보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서(지도감독지침)」이 통지 - 이는 증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의 역할을 나눠서 중점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각 도도부현 등에 기동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체제의 확보를 요구

2) 지도

- 지도에서는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용자와 사업자 등과의 상호계약으로 이용이 결정되고, 보험료를 중심으로 조세로 운영되는 현재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행정의 역할로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용자와 사업자 등의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 지도에서는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집단지도

- 집단지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고, 서비스마다 사업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실지지도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함
 - 특히 준수해야 할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각종 서비스제공의 취급, 수가청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지시켜야 함. 예를 들어 개호수가산정의 가산·감산, 직원의 자격 및 인원수(명의차용, 허위신청방지), 전년도 지적사항 등임

② 실지지도

- 대상사업소의 선정방침
 - 민원이나 신고가 있고, 운영지도가 필요한 사업소
 - 2007년도 중에 지정(개호노인보건시설의 허가를 포함)
 - 신규지정사업소
 - 지역 내 대형사업자(같은 서비스를 10개 이상 지정)의 사업소
 - 시정촌의 개호급여적정화의 대응(케어플랜분석 등)에서 특이경향이 보이는 취지의 통보가 있었던 사업장
 - 지정정보공표센터로부터 「개호서비스정보의 공표」와 관련된 공표를 거부하

고 있다는 취지의 통보가 있었던 사업장

○ 지도 중점사항

- 2007년도에 실시지도의 중점사항으로서는 인지증의 고령자와 개호가 필요한 정도가 중증도인 고령자에 대응한 서비스 및 개호예방에 효과적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령자 학대방지법의 제정과 신체구속폐지 미실시 감산의 창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사업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함
- 고령자학대 및 신체구속에 대한 인식의 보급
- 고령자학대방지 및 신체구속금지에 관한 제도이해의 추진
- 고령자학대방지 및 신체구속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추진
- 고령자학대방지 및 신체구속금지를 위한 지정기준 및 지정거택서비스에 필요한 비용금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케어플랜을 포함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의 추진
- 「케어플랜」과 「타직종 협동에 의한 케어」를 기초로한 수가상의 가산에 대한 적절한 청구 추진
- 민원, 사고, 감염증, 식중독 등이 있었던 경우의 적절한 대응
- 개호보험시설 등에서 방화체제 및 만일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소화·피난 통보체제의 확보
- 인원기준의 준수
- 개호예방에 이바지하는 대응 추진
- 기타 개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 추진

○ 운영지도

- 운영지도에 있어서는 케어 플랜의 개개의 내용이나 실시방법, 기타에 관여하지 않고, 학대방지나 신체구속금지 및 사고방지와 연결되는 개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프로세스의 중요성의 이해 등에 대해 주목함

○ 추가청구지도

- 2006년 4월 개호수가개정으로 인해 각종 가산 등이 많이 창설되어 보다 개별 케어를 위한 대응이 중요하게 됨
- 본래 가산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통해 개호수가를 청구하고 청구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가기준 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때문에 항상 매월의 추가청구에 있어서 사업자 스스로 청구에 있어서 불충분한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고, 청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호수가청구의 지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취지를 알리고, 개호수가기준 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구사업자 등이 스스로 검증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함

③ 감사로의 이행

- 실지지도할 때에 학대·구속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허위신청, 악질적인 기준위반, 부정한 개호수가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로 이행하게 됨

3) 감사에 대해서

-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호보험법상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최소한의 책무
- 항상 지정기준내용에 대해서 위반이 없도록 확인하면서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 수가상의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취해야 함
- 그러나 지정기준의 위반사항을 인식하면서 방치해두거나, 부정청구를 하고 있는 악질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호보험법에 규정한 감독규정의 권한을 행사하여 부적절한 운영과 개호수가의 부적절한 지불을 조기에 정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대상사업소의 선정방침

- 감사는 입수한 각종 정보가 인원, 설비 및 운영기준 등의 악질적인 지정기준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임
- 통보·민원·상담 등에 기초한 정보나 국민건강보험연합회,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등 폭넓은 정보로부터 지정기준위반이나 부정한 청구가 인정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함

②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필요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지정취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함

7. 기타 지원 제도 및 시스템

1) 참작표준과 총량규제,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수립

- 일본에서 장기요양 인프라의 적정 수준과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대표적인 관리대책
 - ‘참작표준’은 개호보험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하는 기본지침에 따라 각 자치체가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에 정하는 서비스 예상량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표준’을 의미
 - 개호보험 3시설(介護老人福祉施設、介護老人保健施設、介護療養型医療施設) 및 개호전용의 거주계 서비스(인지증고령자그룹홈, 개호전용형특정시설)의 적정한 정비를 목적
 - 어떠한 지역의 ‘필요입소(이용) 정원총수’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식을 통해 산출
- 구체적인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책정과정과 지원도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 첫째, 급부실적의 파악·분석단계로, 각 시정촌의 실태에 따른 개호서비스의

급부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률, 요개호자수, 요개호도별 서비스현황을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을 통해 분석

- 둘째, 계획책정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제4기까지의 계획책정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사용하던 ‘개호서비스 이용의사조사, 개호서비스 제공능력조사, 사업자 참여의향조사’에 더하여 제5기부터 새로이 도입된 조사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상태상을 기초로 지역의 과제와 니즈나 필요한 서비스 등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일상생활권역 니즈조사를 ‘생활지원소프트’를 통해 실시
- 셋째, 서비스 예상량의 산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단계로 서비스예상량 워크시트를 통해 장래추계를 실시하고 시정촌의 계획책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구조

2)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

- 일본 개호보험의 ‘정책평가’를 목적으로 정부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는 개별 보험자(지자체)가 접속 및 활용이 가능한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介護政策評価支援システム)’운영
 - 과거 NPO법인 지역케어정책네트워크에서 운영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후생노동성 노건국(老健局)이 개발·운영
 - 2014년 1월말 현재 전국의 47개 도도부현, 1,580개 보험자가 이용을 신청하여 56.2%의 이용신청률을 나타냄
- 후생노동성의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은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각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가 개호보험정책의 자원 도입, 결과, 성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
- 후생노동성은 기본적으로 개호보험제도는 보험자인 시정촌의 역할과 책임이 타 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크며, 따라서 시정촌이 지역의 서비스공급체계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통해 개호보험의 이용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인식

-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은 후생노동행정종합정보시스템(WISH) 내에 있으며, 종합행정네트워크(LGWAN) 등을 통해 이용 가능

- 후생노동성의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의 평가영역 및 지표(4가지)
 - 인정률의 밸런스분석
 - 서비스이용의 밸런스분석
 - 서비스의 전체 밸런스분석(시설, 재택밸런스)
 - 보험급부(급여)와 보험료의 밸런스분석

- 입력 및 출력의 흐름(방식)
 - 각 보험자가 개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종 정책평가지표를 산출하여 표나 그래프로 나타냄
 - 보험급부와 보험료, 인정률, 요개호도별 서비스이용 등 ‘밸런스’를 분석·평가 가능
 - 1인당 급부액(급여액)의 추이 등을 참가하는 보험자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여 서비스의 특성의 위치 등을 명확히 확인 가능

3) 지역포괄케어 ‘가시화’시스템

- 각 지방자치체가 행하는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見える化」システム) 구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국민을 포함하여 폭넓게 공유(=가시화)하는 것에 의해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
 - 단카이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앞두고, 중도의 요개호상태가 되더라도, 정든 지역에서 자기답게 사는 것을 인생의 최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예방-거주-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의 실현을 추구할 필요
 - 2013년에 지역포괄케어 가시화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여, 2014년 2월부터 운영을 개시

8. 정책적 시사점

- 일본 제도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정 갱신의 판단이 되는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였음
 - 기존의 신청자(사업자)에서 신청자(사업자), 법인임원, 관리자 등을 포함
- 둘째, 갱신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실제 적용 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함
 - 법인이 아닌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 설비·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법인·법인임원·시설장이 지정 취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금고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때, 법인·법인임원·시설장이 노동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때, 법인·법인임원·시설장이 5년 이내에 서비스 등에 관해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등 제시
- 셋째, 지정 기간 내이라도 지정취소 등 요건을 명시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
 -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 설비·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인격존중, 충실한 직무수행, 법령의무 준수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정청구, 허위보고, 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 서비스에 관해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넷째, 지정 및 갱신 이후의 사후관리로서 지도 및 감독의 내용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
 - 실태에 맞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의 체계를 새롭게 규정

- 다섯째, 지역단위에서 장기요양 인프라의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장기요양 인프라에 대한 참작표준을 제시하여, 지역수준에서 총량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제공
 - 중앙정부가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 지역포괄케어 ‘가시화’시스템 등을 통해 개발하여 운영

제2절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공기관 허가 및 운영체계

1. 기본 현황

- 독일 장기요양기관 설립과 관련한 특성의 하나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시 시설의 민영화 강조
 - 전국민 대상의 수발보험을 도입하면서 시설의 확대를 위해 서비스 공급주체를 다변화하고 특히 민간 영리기관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

- 독일은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각각 다양한 장기요양 운영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인가 및 관리의 경우 해당 주의 관련법 적용을 받음

- 독일의 장기요양시설의 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 재가서비스기관 14,050개소, 입소시설 14,480개소임. 입소시설은 상시입소시설이 가장 많고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순으로 나타남. 독일은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가 부분 입소시설에 포함됨
 - 독일 장기요양 재가기관의 운영주체별 기관수는 민간 9,243개소, 비영리 4,615개소, 공공 192개소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입소시설의 운영주체별 시설수는 비영리시설 7,631개소, 민간시설 6,167개소 그리고 공공시설 682개소로 나타나 비영리 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참조)

(1) 재가기관

- 재가기관 운영주체는 크게 민간, 비영리, 공공운영주체로 구분. 비영리 운영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카리타스, 디아코니아, 적십자 등이 해당
- 2017년 현재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4,050개소. 운영주체별로는 민간 65.8%, 비영리 32.8% 그리고 공공 1.4%로 나타나 민간운영주체가 전체 기관의 약 2/3을 차지함
-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방문요양만 제공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센터가 방문요양을 기본으로 방문간호, 재가지원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양로원, 노인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재가센터가 다수 있는 것이 특징

<표 4-3> 시설별, 운영주체별 재가시설 현황 (2017년)

구분	민간	비영리	공공	합계
총계	9,243 (65.8%)	4,615 (32.8%)	192 (1.4%)	14,050 (100.0%)
방문요양	140	20	2	162
방문요양+사회서비스	9,103	4,595	190	13,888
- 방문간호 및 돌봄	8,930	4,540	187	
- 수발돌봄	5,229	2,741	97	
- 기타 재가지원	2,539	2,259	86	
- 주거공동체의 재가센터	700	584	34	
- 병원, 재활시설의 재가센터	18	56	20	

* 자료: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 2017년 현재 재가센터를 이용한 수급자 수는 83만 명으로 민간 이용자가 51%이상이며, 비영리 기관이용자 약 47%

<표 4-4> 재가기관 운영주체별 서비스 수급자 수 (2017년)

합계	민간	비영리	공공
829,958 (100.0%)	428,159 (51.6%)	387,423 (46.7%)	14,376 (1.7%)

* 자료: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 고용형태별 재가기관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약 39만명이 종사중이며, 이들 중 28.1%가 종일제 종사자로 나타남

<표 4-5> 고용형태별 재가기관 종사자 수 (2017년)

총원	종일제 (35시간 이상)	기타
390,322	109,657	280,665

* 자료: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2) 입소시설

- 입소시설 운영주체는 크게 민간, 비영리, 공공운영주체로 구분. 비영리 운영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카리타스, 디아코니아, 적십자 등이 있음
- 2017년 현재 독일의 입소시설은 총 14,480개소이며, 이들 중 비영리기관이 52.7%, 민간기관 42.6% 그리고 공공기관 4.7%순으로 나타남. 입소시설은 재가기관과 달리 비영리운영주체에 의한 운영비율이 높음

<표 4-6> 시설별, 운영주체별 입소시설 현황 (2017년)

구분	민간	비영리	공공	합계
입소, 단기, 주야간	44	201	23	268
입소, 단기	328	402	34	764
입소, 주야간	295	731	72	1,098
단기, 주야간	8	16	1	25
주야간	5	4	0	9
입소	3,950	4,694	467	9,111
단기	39	95	14	148
주간	1,498	1,487	71	3,056
야간	0	0	0	1
총계	6,167 (42.6%)	7,630 (52.7%)	682 (4.7%)	14,480 (100.0%)

* 출처: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 시설별 입소정원은 비영리시설 518,390명, 민간시설 377,695명 그리고 공공시설 56,282명으로 나타나 비영리시설 입소정원이 높게 나타남

<표 4-7> 운영주체별 입소시설 수 및 입소정원 현황 (2017년)

구분	시설 수	입소정원
민간시설	6,167	377,695
비영리시설	7,631	518,390
공공시설	682	56,282
합계	14,480	952,367

* 출처: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 2017년 현재 입소시설의 종사자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76만명 정도가 종사중이며 이들 중 종일제 종사자가 28.9%, 기타 시간제 종사자, 저임금 종사자가 71.1%로 나타남

<표 4-8> 입소시설 종사자 현황 (2017년)

구분	총원	종일제 (35시간 이상)	기타
합계	764,648 (100.0%)	220,958 (28.9%)	543,690 (71.1%)

* 자료: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2. 장기요양기관 허가기준

- 시설 허가조건은 기본적으로 민간, 비영리, 공공 운영주체 모두 동일하며, 서비스 질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매우 중요. 또한 요양시설의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 존중 등 고려
- 장기요양기관 허가는 각 지방정부에서 하고, 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Pflegekasse)는 허가받은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 각 지방정부는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정취소 권한 등 기본적으로 시설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 책임이 있음
 - 수발보험법 72조에 따라 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와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서비스 계약 및 수가보상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자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서비스 내용, 범위 및 수가 등을 정하며 계약 위반 시 해지 가능
- 장기요양기관 허가 조건
 - 수발보험법 제71조 제1, 2항에 따라 요양시설과 요양센터에 대하여 ① 독립채산체 유지 ②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수발사를 통한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함

- 장기요양금고는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자들과 개별적으로 서비스 계약 및 수가에 대한 협상을 체결하며, 시설 및 기관은 최소한의 질 보장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재가기관

- 시설기준

- 재가기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인력기준

- 재가기관의 설립과 인정을 위해서는 시설 및 수급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책임을 지는 최소 1인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안전기준 (소방기준 등)

- 재가기관의 안전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2) 입소시설

① 입소시설 건축최소기준

- 노인, 수발대상자,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및 돌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입소시설법(Heimgesetz)에 따라 최소 6명이상 거주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건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거주공간: 현관부터 입소자뿐 아니라 방문자, 종사자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 현관: 입소자를 거주공간까지 이송가능 하도록 공간 확보
- 승강기: 입소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층 이상인 경우 설치
- 바닥: 미끄럼 방지

- 조명: 용이하게 스위치 사용가능
- 호출장치: 침대에서 호출가능
- 안내방송장치: 각 층마다 최소 1대 배치
- 주거공간출입: 응급 시 밖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 요양시설은 다음의 최소규정이 추가 적용

- 거주공간: 1인 취침공간은 12㎡, 2인 경우 18㎡, 3인 24㎡, 4인 30㎡ 기준. 5인 이상 주거공간은 안됨. 발코니, 정원, 테라스 등은 면적계산에 불포함
- 공동활동공간: 시설에는 20㎡규모의 1개의 공동활동공간이 있어야 하며, 입소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초과 1인당 최소 1㎡의 이용공간 확보
- 치료공간: 시설 외부에 입소자가 쉽게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 및 치료공간이 없는 경우, 각 시설은 운동치료 또는 체조를 위한 공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생활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② 인력기준

- 수발이 필요한 시설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2010년 5월부터 입소자와 수발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주거계약과 돌봄계약법(Wohn- und Betreuungsvertragsgesetz: WBVG)에 규정

○ 이외에 추가적인 시설인력규정을 두어 인력에 대한 최소규정 마련.

- 시설인력규정(Heimpersonalverordnung)의 주요 내용은 시설운영자, 수발서비스의 적정성, 전문인력에 대한 보조인력간의 비율 그리고 종사자의 보수 및 재교육에 대한 시설운영자 의무 사항
- 실제로 수발보험법에는 입소시설에 대한 인력규정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명확하지 않음. 수발은 의료수발적(medizinisch-pflegerisch) 관점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준으로 인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질관리와 전문가수준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 시설에서의 전문인력은 수발보험법 71조에 따라 입소 수발시설은 교육을 이수한 책임 있는 수발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책임 있는 수발인력은 지난 5년 이내에 직업적으로 2년간의 실습 직업경험이 있는 보건 및 간호수발사(Gesundheits- und Krankenpfleger) 또는 노인수발사(Altenpfleger)이며, 추가로 최소한 46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수발보험법에 따른 시설서비스에 대한 일반원칙(Rahmenvertrag)에 따라 수발요구 확인 또는 수발시간 측정을 위한 주차원의 방식 또는 인력기준치(Personalrichtwerte)를 합의하도록 규정

- 인력기준치는 범위로 합의
- 입소시설이나 부분입소시설의 경우에는 ① 입소자 수와 (정규직으로 환산한) 수발인력과 돌봄인력 비율, ② 수발, 사회적 돌봄 그리고 의료적 수발에서 수발인력과 돌봄인력에 전문인력 비율 추가. 이 경우 치매 등으로 특별한 수발 및 돌봄필요 고려

○ 독일의 각 주는 일반원칙에 이러한 적용규정을 포함시켜 각 주별로 합의된 인력기준비율 마련. 입소시설감독부서(Hausaufsicht)와 MDK는 시설의 인력비율 준수여부 감독

<표 4-9> 각 주별 입소시설 인력기준

주	인력기준치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2002년 9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에 대한 종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1 3.96 - 3.13 : 1 · 등급 2 2.83 - 2.23 : 1 · 등급 3 2.08 - 1.65 : 1 - 심각한 치매환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1 2.38 : 1 · 등급 2 1.70 : 1 · 등급 3 1.25 : 1 - 수발 및 돌봄인력의 경우 50%의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 임시직 비율은 20%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p>베를린(Berlin) 2005년 4월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에 대한 종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1 4.1 : 1 · 등급 2 2.5 : 1 · 등급 3 1.97 : 1 · 책임있는 수발인력 100 : 1 · 사회복지사 200 : 1 - 수발 및 돌봄인력의 경우 52%의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 임시직 비율은 5%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p>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2004년 4월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보험법 일반규정과 시설인력규정에 의거, 그러나 임시직 비율은 30%까지 가능. - 입소자에 대한 종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1 4.5 - 3.65 : 1 · 등급 2 3.0 - 2.43 : 1 · 등급 3 2.2 - 1.82 : 1
<p>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1999년 10월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보험법 일반규정과 시설인력규정에 의거. 임시직 비율은 20%까지 가능 - 입소자에 대한 종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0 8 : 1 · 등급 1 4 : 1 · 등급 2 2.5 : 1 · 등급 3 1.8 : 1
<p>슐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1996년 7월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보험법 일반규정과 시설인력규정에 의거. 임시직 비율은 20%까지 가능 - 입소자에 대한 종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0 12 - 9 : 1 · 등급 1 6 - 4.05 : 1 · 등급 2 4 - 3.05 : 1 · 등급 3 2.8 - 2.28 : 1 · 야간근무 20명까지 2.29 : 1 · 초과 인원 20 : 1

* 자료: ver.di, Personalbemessung in der stationären Pflege, 2011. 12-16

○ 입소시설의 인력기준은 입소자 비율로 정해지며, 특히 입소자 수발 등급에 따라 인력기준 마련. 그 이유는 인력배치 정도가 수발금고와 시설간의 수발 계약과 수가협상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

- 입소시설 인력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인 경우라도 각 주별로 시설에서 고용해야 하는 최소인력은 상당한 차이 발생

③ 안전기준 (소방기준 등)

- 특별한 관련 기준 없음

3. 장기요양기관 허가절차

- 장기요양기관 승인주체와 승인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각 주마다 상이
 - 베를린 주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하고, 재가기관 신청서는 장기요양금고 주협회에 제출

(1) 재가기관

- 재가기관은 영업신고는 해당 지역에 제출하고, 재가기관 인가는 수발금고 주 협회에 제출. 이를 통해 재가서비스 제공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자격여부와 영업 조건을 증명함
 - 수발금고는 재가수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인가받은 재가기관과 체결함. 서비스 제공계약은 기관 운영자와 수발금고 주협회가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재가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

- 재가기관의 인가와 서비스제공 위탁은 수발보험법 75조 1, 2항에 근거한 일반협약에 따름
 - 일반협약은 각 주별로 MDK, 공공부조 담당자의 참여하에 수발금고 주협회와 입소시설 또는 재가기관 운영자 협회(노동자복지단체, 카리타스, 적십자 협회 등)가 체결
 - 일반협약은 법적으로 규정되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발돌봄 보장이 목적
 - 일반협약에는 재가기관의 다음 사항을 규정

급여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에 대한 일반조건(비용지불, 비용청구서류 등) - 시설의 물적, 인적 기준 - 수발 필요성 및 기간 검사 - 수급자의 일시적인 부재(입원, 휴가-집방문)에 대한 수가 감산 - 시설평가자 방문 - 경제성 검사를 위한 절차 및 평가원칙 - 기관의 서비스 제공 지역 결정 원칙 - 재가수발에서 자조집단 및 자원봉사자의 수급자 돌봄 참여 가능성.

○ 재가기관 운영신청 시 제출서류 (베를린 주)

- 공공보건서비스에 관한 법에 따른 보건분야 직업에서 활동한 베를린 관할 보건사 회청의 증명 복사본
- 사회부조법에 따라 보건서비스와 장기요양을 위한 실제 담당직업협회에 등록된 증명서 사본
- 보험증권 사본 또는 필요한 경우 대인 대물 재산손해에 대한 충분한 영업 및 직업책임보험 가입신청 증명서
- 장기요양센터 수발개념
- 장기요양문서화 양식
- 장기요양계약서 양식
- 적합한 공간의 영업 사용 증명서와 임대계약서 소유증명서 또는 이용계약서 사본
- 전용 전화 증명서
- 장기요양금고와의 정산절차에 필요한 수발센터의 기관등록번호
- 소유주 또는 운영자 지속적인 책임수발 전문인력 그리고 이들의 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증 받은 복사본
- 영업상의 법 양식 형태로 정관 사본 필요한 경우 주주 영업목적 주주 운영의 보증 및 대리권한에 대한 초본
- 법인 공공시설 공법인은 상응하는 증명 의무

- 간호수발법에 따른 직업명칭사용인 보건 및 간호수발사 보건 및 아동간호수발사
 - 노인수발사를 위한 공인된 허가서 사본
 - 최소인력조건의 충족을 위한 증명을 위하여 서명이 있는 유효한 노동계약 사본
 - 필요한 경우 취업범위(노동시간), 취업종류/기능, 취업시작일이 있는 초록
 -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장기요양전문인력과 대표자의 지난 5년간의 최소 직업경험의 충족 증명을 위한 서류 사본
 - 재가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장기요양전문인력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일반협약에 따른 최소 460시간의 보수교육조치에 대한 증명서 등
- 수발금고는 MDK로 하여금 수발기관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가기관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 장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하고 정기적인 수발돌봄 보장
 - 수발 및 가사지원은 수발보험법과 일반계약에 합의한 수발질에 상응
 - 재가기관의 경제적 운영
 - 재가기관은 이에 적합한 인력, 예를 들면 국가인정 전문수발자, 노인수발보조인력, 건강수발보조인력, 가족수발보조인력 등이 종사
- 수발금고는 재가기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결정
- 재가기관은 관할지역내에서 수급자 돌봄 보장
 - 수급자 개인의 수발욕구에 따라 수발급여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야로 제공
 - 재가기관은 독립된 영업공간을 가지고 언제든지 연락
 - 재가기관은 팀 형태로 최소 4명의 종사자가 근무
 - 수발금고에 충분한 영업책임보험 증명

- 재가기관의 수발은 수발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책임 하에 제공. 이를 통하여
 - 전문적인 수발계획
 - 전문적인 수발일지 기록
 - 개별 수급자의 수발욕구에 따른 수발인력의 투입계획
 - 재가기관 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상담 안내 등 제공

- 재가기관은 수발보험법 113조에 따라 재가수발에 대한 서비스 질과 질 보장을 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질관리를 도입하고 113a조에 따른 전문가 기준을 따라야 함

- 이러한 조건을 준수한 경우 기관 인가를 하고, 서비스 제공 위탁계약 체결. 이 경우 비영리기관과 민간기관을 우선 고려. 재가기관의 담당구역은 가능한 장거리를 피하도록 요양계약에 규정

- 수발금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기관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2년 이내 계약위반으로 계약관계를 법적으로 해지당한 기관의 소유주 및 운영자인 경우
 - 범죄 등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자유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규정에 반하여 현금 또는 금전적 급여를 약속하거나 보장한 경우 (재가기관 일 반협약 22조)

(2) 입소시설

- 입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개시 3개월 전에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지자체의 해당관청에 제출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함.(입소시설 법 12조)
 - 입소시설 신청자는 입소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입소시설법 11조)

- 시설 운영은 입소자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욕구를 보장하고 동시에 입소자의 독립성,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성이 보장, 지지되어야 함
 - 특히 장기요양 필요자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인간적이고 적극적인 수발을 보장하고 적정의 수발 질 보장,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와 필요한 도움을 보장하고 적정의 삶의 질과 가사 돌봄 제공
 - 입소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위생수준 유지
-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활동능력과 종사자 수, 종사자 전문성이 담당 업무에 충분해야 하며, 적정의 비용을 요구하고 질관리에 힘쓰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가능
- 이외에 입소자를 위한 전문적 급여제공의무와 규정에 따른 시설 공간 및 위생시설을 유지하고 시설운영과 종사자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운영 허용 (입소시설법 11조)
- 입소시설 운영신청 시 제출서류 (베를린 주) (입소시설법 12조)
- 영업개시 예정일
 - 시설 및 운영자 이름과 주소
 - 시설 종류 공간 위치 주거공간 수 및 크기
 - 종사자 수
 - 시설 책임자 이름 직업교육 이수과정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책임자 및 종사자 성명 및 직업교육
 - 시설의 일반 운영내용 및 개념
 - 장기요양보험법 72조에 따른 돌봄계약 및 조에 따른 급여 및 질합의사항 또는 이것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 수발보험법 76조 3항에 따른 합의 또는 이러한 합의에 노력할 것에 대한 설명
 - 투자비용 총당을 위한 서류
 - 입소계약서 및 기타 문서 견본 등
- 장기요양기관 승인은 수발금고와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 짐. 수발금고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계약(Versorgungsvertrag)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조건충족을 확인
- 수발시설은 특히 다음 사항을 해당 수발금고에 증명
- 입소시설의 경우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발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자격 있는 수발인력이 충분히 종사하고 법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입소하여 종일 또는 주야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시설법(Heimgesetz)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특히 건물과 건축 안전조치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요양시설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
- 수발금고는 다수의 적합한 요양시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 요양계약을 비영리 기관 또는 민간운영기관과 우선적으로 체결
- 입소시설이 장기요양금고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베를린 주)
- 입소시설법 11조와 13조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 충족
 - 영업 및 직업책임보험 가입
 - 해당 직업협회 회원가입
 - 영업상의 법 양식 형태로 정관 사본 등
 - 유한책임회사의 영업상 법 양식 형태로 공증 받은 정관 필요한 경우 주주의 의견 영업목적 주주 운영의 보증 및 대리권한에 대한 초본 관할 법원의 영업등기부 초본 등

- 책임 있는 장기요양전문인력에 대한 서류

① 보건 및 간호수발사 보건 및 아동간호수발사 간호사 간호수발사 아동간호사

· 아동간호수발사 노인수발사라는 직업명칭사용을 위한 법적 허가서 또는 공인된 허가서 사본

② 서명이 있는 유효한 노동계약 사본 필요한 경우 취업범위(노동시간), 취업종류/역할이 있는 복사본

③ 수발보험법 71조 3항에 따른 최소 직업경험의 충족 증명을 위한 적합한 서류 (취업이전 증명) 사본

④ 장기요양보험법 71조 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한 증명서

⑤ 3개월 이전 발행한 공식적인 영업허가서

· 책임 있는 질 검사자를 위한 서명이 있는 유효한 노동계약 사본 필요한 경우 취업범위 (노동시간), 취업종류/역할이 있는 복사본 등

○ 추가로 시설인가를 위하여 수발금고에 일반적인 시설구조현황신고서 제출

- 시설 일반 사항: 명칭, 주소, 운영자, 책임전문수발인력, 운영 지역 및 운영형태

- 정원 및 급여내용, 추가급여 제공여부, 질관리 방안여부, 수발질 확보를 위한 전문가수준 적용여부

- 기관 인력: 책임 전문수발인력 인적사항, 자격증 여부, 추가교육이수여부, 근무 시간 그리고 운영 대표자 현황

- 기관현황: 건축최소규정 준수 여부 등

- 기관 재정: 공적지원여부 등

- 재정 독립성: 입소시설수발 범위 내에서 시설의 독립성이 보장되는가 여부

- 종사자에 대한 지역임금수준의 지불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항

4.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 장기요양금고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음
 -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관리 의무가 있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장기요양금고와 서비스제공자 간에 계약에 포함하여 관리
 - 장기요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시설운영자의 자발적인 책임 강화

- 장기요양금고 최고협회, 사회부조 연방협의체, 지역 최고협회의 연방연합, 연방수준의 요양시설협회가 전국적인 질 관련 기준 개발 및 평가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정기적으로 매년 최소 1회, MDK나 전문평가자에 의해 사전통고 없이 평가 받음
 - 평가는 요양시설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및 장기요양필요자의 신체상태와 심리적 만족도를 기준으로 시행
 - MDK는 평가 후 장기요양기관의 결함 발견 시 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기한까지 밝혀진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금고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인터넷, 장기요양지원센터 등에 공표되며 해당 시설은 평가결과와 요약내용을 잘 보이는 곳에 공개 게시

- 독일 입소시설법(Heimgesetz)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요양수급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 등을 규정
 - 주정부는 최소한 1년에 1회 시설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 관리
 - 입소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속하며 각 주정부는 요양시설을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관(Heimaufsicht)을 설치, 운영함
 - 정부와 주정부는 노인요양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시설의 증축 또는 신축이 필요한 경우 1차적으로 민간부문

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은 ①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설계획안을 바탕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②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통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요양서비스 수요 해결 (BMFSFJ 2006)

(1) 장기요양기관 평가

- 평가주체는 공적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MDK, 민간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MEDICPROOF GmbH에서 담당
- 수발기관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MDK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즉각 실시
 - 평가는 수발일지를 중심으로 수발계획, 중요한 의료적 서류, 수발인력 활동 내용 등 확인
 - 동시에 입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 진행
- 또한 매년 시설감독청의 검사를 통해 시설이 입소자의 거주와 돌봄에 필요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
 - 건축사항이 안전규정에 합당한가?
 - 수발일지가 정상적으로 작성되는가?
 -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한가?
 - 위생결함은 있는가? 등

(2)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활용

○ 질평가 결과 보고

- 시설별 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는 질평가 보고서와 질투명 보고서 형태로 장기요양보험 주연합회에 보고되며, 해당 시설 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평가를 실시한 MDK는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주 내에 작성
- 장기요양보험 주연합회와 관할 사회부조 관리운영 주체에 질 평가 결과, 평가자료 및 정보 제공
- 입소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감독관청에, 재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 보험자에게 추가 통보
- 장기요양시설협회나 재가시설협회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시설 관리운영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달하며, 평가자와 자료수령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정보의 비밀엄수 의무
- 심각한 질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주연합회가 개선을 위한 조치와 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재검사 등을 통해 확인

○ 투명성 평가결과는 총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점형태로 구분하여 5등급으로 제시

- 시설의 질 공개는 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정보 제공
- 시설 검사 결과는 무료로 인터넷, 해당 시설,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반드시 비교가능하고 친 소비자적으로 공개
- 해당 시설의 경우 이러한 장기요양질 검사 결과를 시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최종 검사일, 검사결과 목록, 검사결과요약 등을 공개

(3) 행정처분 및 수가삭감

○ 평가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가 따르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자 주 연합회는 관

할 사회부조 관리운영주체의 참여하에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와 관리운영주체 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에게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 통지

- 확인된 결함제거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통해 결함 제거여부 확인
-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는 심한 시설상의 결함이 확인된 입소시설의 경우 보험자는 입소자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다른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해 줄 의무가 있으며 기초생활대상자는 관할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가 관여

○ 장기요양비용 삭감은 장기요양시설이 법적으로, 장기요양금고 또는 수급자와의 계약상의 의무, 특히 급여제공계약 또는 급여 및 서비스 질 합의에 상응한 급여제공의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합의한 요양비용지급을 위반기간만큼 삭감

- 삭감 금액은 계약당사자(기관운영자, 보험자, 사회부조 담당자)가 합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같은 수의 보험자대표와 장기요양기관대표, 중립의 의장1명, 중립위원 2명으로 구성된 중재기관이 결정

5. 장기요양기관 계약해지 관련사항

○ 시설평가 후 나타난 결함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제거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금고 주연합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해지하며 해당시설의 결함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즉시 장기요양계약 해지 가능

○ 재가시설에서 심각한 결함을 확인한 경우, 관할 보험자는 MDK의 권고에 따라 임시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수발돌봄계약 해지는 해지 1년 전 수발금고 및 입소시설이 상호 문서로 통보함(74조 1항)
 - 수발금고 주협회는 수발보험법에 따른 시설인가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만 해지. 수발금고는 결함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결함 시정을 위한 요구사항과 적정 기간을 제시
 - 수발금고 주협회는 입소시설의 해지를 막기 위하여 책임 수발전문인력에게 적합한 보수교육 및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발대상자의 수발, 돌봄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하도록 합의

- 수발금고는 급여 제공자가 법적인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발금고의 위탁을 받은 MDK 평가(일반협약 21조)에 따라 계약 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모색함
 - 적절한 조치방안으로 경고, 과태료, 수발보험법 74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별도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가능. (서비스제공계약서 11조)
 - 입소시설의 시설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거절된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특히 입소시설이 수급자 또는 수발금고에 대해 심각한 법적,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심각하게 소홀히 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가능
 - 수급자 학대, 부당한 대우,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 가능
 - 부당 청구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고시정조치

6. 정책적 시사점

- 독일의 수발시설 인허가는 지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인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수발금고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제공

-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는 시설 구조 및 인력 구조에 대한 평가, 수발금고는 이들 시설이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보장된 서비스의 장기적인 제공을 중심으로 평가

- 인허가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통하여 시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 수발서비스 제공 관련 평가: 건강보험의 MDK
 - 시설관련 평가: 지자체의 시설감독청
 - 이들 평가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짐

-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발기관의 서비스 적정성 및 제공지속 여부판단

- 일반적으로 수발보험금고는 서비스 제공 계약 해지 전 수발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및 기간 제시 등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강구
 -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 이러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각한 수발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발보험금고는 수발기관과의 서비스 제공 계약 해지

- 독일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수발보험에서 관리
 - 특히 매년 실시하는 수발기관 평가결과를 근거로 수발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및 수발서비스 제공계약 해지

제3절 지정(갱신)제 관련 국내 사례 검토

1.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도

(1) 설치 및 변경의 인가

○ 어린이집은 과거 신고제를 운영하다가 인가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일을 인가업무 처리기한으로 하고 있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신청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확인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함.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참조)

- 보육수요, 입지조건, 설치기준, 종사자배치 등을 종합검토 후 인가함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함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제2항 참조)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참조)

(2) 시설기준 및 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은 전체시설, 보육면적, 50인 이상 시설 놀이터 설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10> 어린이집 시설기준

구분	면적기준	시설설비기준
전체시설	영유아 1인당 4.29㎡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온도고정장치, 냉난방 설비, 화장실 미끄럼방지장치, 수세식 유아용변기, 방충망 등
보육면적	영유아 1인당 2.64㎡	침구, 놀이기구, 쌓기놀이, 소꿉놀이, 미술활동, 언어,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바닥난방
50인 이상 시설 놀이터 설치	영유아 1인당 3.5㎡ (12개월 미만 영아는 제외)	놀이시설 3종 이상 설치, 모래밭(잔디, 고무매트 등),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사용승낙서포함)

○ 설치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반드시 구조별 용도표시, ㎡단위 표시)

-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 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및 사용승낙서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및 방염검사 확인서
- 설치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3)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1년이내)하고자 하는 자는 2개 월 전 까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구청에 제출 하고 그 사실을 어린이집 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어린이집을 휴지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집 재개 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신고수리 후 운영을 재개함

○ 폐지 또는 휴지 시 구비서류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1)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와 요양기관 계약제

-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하였음. 이 제도에 의하면, 일정한 법률상의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법률상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된 병·의원 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음

- 한편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기관이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방식을 의미함
 - 이러한 요양기관 계약제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 이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비급여로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됨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계약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2002년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에, 2명이 위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요양기관 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
 - 당시 일부 의사들이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 국민에게 의료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 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을 지적한 바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인이라는 직업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직업

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제한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2)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요양급여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요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제45조에는 제1항 등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연히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즉, 요양기관이 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법률 제41조의 진찰·수술·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산정된 요양 급여비용의 제한을 받게 됨을 의미함

3.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1) 지정의 기준

○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과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표 4-11>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구분	내용
진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 -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교육 기능	<p>「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았을 것</p>
인력·시설 ·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 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 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의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4 이하일 것 - 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1 이하일 것 - 다. 입원환자 수와 나목의 외래환자 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의료 서비스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2) 지정절차와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시설현황, 장비현황, 인력현황
 -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 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정기준을 준용해 운영함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 재평가 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평가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 또는 단체,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4.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해 볼 수 있는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후 관리로의 연결을 통한 실효성 확보 중요

-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에 있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전 통보 후 평가, 서류심사 위주의 인증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과 엄격한 사후검증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품질관리의 체계적 접근(교사의 직무태도 포함 등)을 통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김혜린 외, 2013)

○ 둘째, 제도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를 공개하는 활동 필요

-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증조사 결과 공개를 논할 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조사 결과 공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임. 병원 서열화가

목적이 아니라, 인증제의 본래 목적인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의료기관이 스스로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구조와 체계를 개발하는 것임(염호기 외, 2012)

○ 셋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제도와 연계 및 정합성 확보 노력

-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불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확인은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지자체의 지도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은 평가지표에서 과감하게 삭제시켜야 할 것(권현정, 2014)

○ 넷째, 제도 운영을 통한 성과 평가의 중요성 인식

- 전문병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중시 전문병원이 대형병원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중증환자를 진료하는데 임상적 성과의 차이가 없다면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합리적 활용도 가능하리라 판단(황재문 외, 2014)

제5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제1절 지정(갱신)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 및 분류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안별 검토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편 과제간 우선순위 검토

제5장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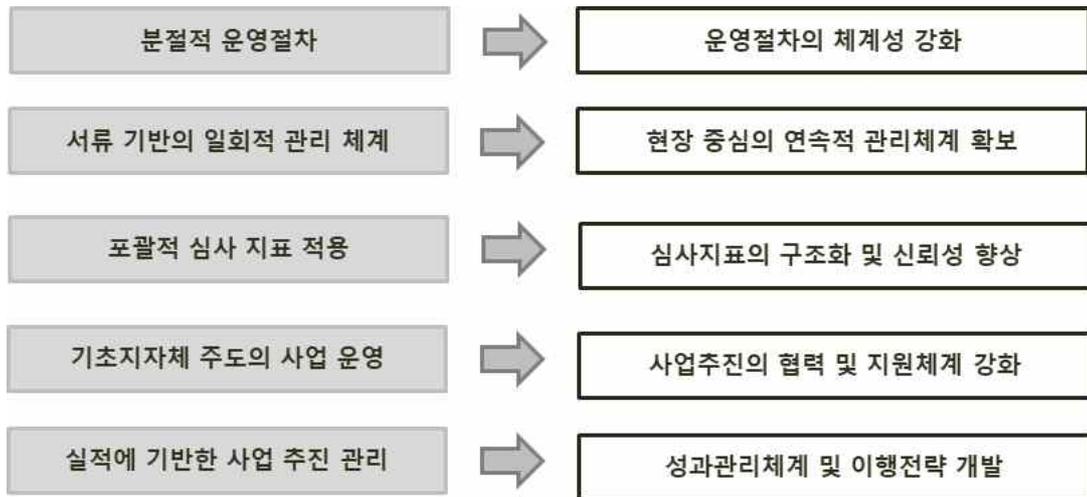
제1절 지정(갱신)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 및 분류

1. 주요 과제 및 개선 방향 설정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분석,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과제를 도출
 - 지정(갱신)제 운영절차의 체계성 강화
 - 현재, 접수와 심사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나열되어 있는 지정(갱신)제 운영절차를 그 전후 과정을 포함하여 체계성 강화
 - 현장 중심의 연속적 관리체계 확보
 -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장기요양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 관리체계로 전환
 - 지정(갱신)제 심사지표의 구조화 및 신뢰성 향상
 - 심사지표에 대한 문제 지적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지표를 구조화하고 신뢰성 및 객관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정(갱신)제 사업추진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지정(갱신)제 운영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
 - 지정(갱신)제 성과관리체계 및 이행전략 개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기대한 정책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록 지원하는 성과관리체계와 이행전략을 마련

○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주요 과제(5개)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1] 지정(갱신)제 운영의 기본 방향 정립(패러다임 전환)

제2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안별 검토

1. 지정(갱신)제 운영절차의 체계성 강화

1) 현황 및 과제

-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는 장기요양기관의 신청과 지자체의 지정접수를 시작으로 운영
 - 지정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 여부 결정 → 전산입력 → 지정서 발송 → 지정 명세 공단 통보 → 사후관리
 - 지정여부 결정에 요구되는 사항(5가지)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지정 심사위원회가 지정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진행

- 현재의 지정(갱신)제 운영절차는 심사와 지정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신청 전후에 요구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서술이 다소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지정(갱신)제 운영절차 전반을 포함하여 공식적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¹²⁾
 - 참여주체로서 장기요양기관(대표자, 시설장), 지자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

- 지정(갱신)제 운영절차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신청 전과 지정 후를 포함하는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주요 관련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신청 접수 전 사전 교육, 안내 필요
 - 지자체 담당자, 공급자 단체 모두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기관 대표자와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6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장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신청 및 접수 절차 강화 필요
 - 신청기관들이 탈락하는 비율이 매우 적지만 재신청을 한 달 내에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하는 것을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청하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
- 실질적 심사 및 지정여부 결정 곤란
 - 지자체 공무원들은 제공기관에서 기관을 개설하기 이전에 이미 시설을 확보하고 임대료 등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
-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등
 - 사후관리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로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 실제 계획서대로 제공기관들이 준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할지 의문을 제기

○ 설문조사에서도 관련 지정(갱신)제 업무절차 운영의 애로사항을 지적

- 신청기관의 이해 부족 심각
 -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모두 지정(갱신)제 운영관련 어려운 점으로 '지정제 신청기관 이해부족'(57.6%)이 가장 많았음
- 사전상담 및 교육 필요
 -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55.3%)이 가장 많았음
 -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시험) 필요성 언급
- 심사 전후의 과정을 포함한 개선 요구
 - 지정신청 접수, 사후관리, 지정여부 결정, 지정명세 공단 통보 단계의 적절성 평가가 다른 단계대비 비교적 낮게 평가됨
- 심사단계의 구조화

- 예비 심사 제도를 두어 예비심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해 개원준비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
- 더욱 명확한 전문성 파악을 위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는 물론 면접(인터뷰 등) 또는 발표 등의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음
- 시설에 대한 정보가 서류만으로는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통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짐
- 지정(갱신) 불허 및 취소 사유 명확화
 - 지정갱신 불허 시 지방정부가 행정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제대로 된 지정(갱신)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 등
-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사후관리 부분에서 인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의 질 관리와 그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 의견

○ 국외 사례에서도 지정(갱신)제 운영절차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

-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지정갱신 절차 요령에 따라 ‘자가점검’ 후 제출 준비, 제출서류 조건표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첨부서류 작성, 점검 실시
- 지정 이후, 지자체는 지도(집단, 실지, 운영, 추가청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로 이행하는 구조
- 독일 수발보험법 72조에 따라 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와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서비스 계약 및 추가보상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
- 장기요양금고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며, 수발기관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사전통보없이 MDK에서 실시,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매년 시설감독청의 검사로 요구조건 충족여부 확인

2) 개선안 검토

- 기존 신청과 지정 업무중심의 절차를 그 전후를 포괄하여 사전-도중-사후로 연결되는 연속적 업무절차로 체계화
 - 참여주체별로 지정(갱신)제 업무절차에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지정(갱신)제 업무절차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및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각 단계별의 실효성 확보

-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 절차를 사전-도중-사후로 확대하고 연속적 순환 구조를 마련
 -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 절차 개편(안)을 차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지정(갱신)대상 통지

- 신청 전 절차로, 지정을 받고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갱신 대상임을 통지
 - 지자체의 통지 방식과 전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 단순히 갱신 대상임을 통지하는 방식 외에도 지자체의 지도감독 또는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평가, 기타 인증제도의 결과와 갱신에 대한 영향 등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 가능
 - 신규로 지정받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신청'을 통해 접수

(2) 신청준비

- 신규 지정 또는 갱신을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지자체에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과정
 - 사전 상담 및 교육을 신청 전에 받도록 규정
 - 신규 지정을 바라는 장기요양기관(대표 및 시설장)은 반드시 사전 상담과

교육을 신청 전에 받도록 규정

-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사전 상담과 교육을 신청 전에 받도록 유도
- 사전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
- 신청 전에 공개된 '자가점검표(지정용, 갱신용)'를 작성,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신청 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과정에 활용

(3) 신청접수

-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및 갱신을 위해 작성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류는 책자와 함께 파일형태로 제출(부수와 형식에 대해서는 지자체 규정)
 - 자가점검표 및 동의서 작성 첨부
 - 재신청 회수와 기간 확인
 -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지정 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당 재신청 회수와 탈락 시 재 신청기간을 제한
 - 이와 함께 가능한 지정 및 갱신 기관이 지정(갱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4) 예비심사(1차)

- 예비심사는 서류심사로, 지자체 담당자가 자가점검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 심사절차를 예비 심사(서류) - 기본 심사(청취조사) - 현장 심사(확인)의 3단계로 세분화
 - 제출서류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비심사 단계에서 심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보완하도록 지시

(5) 기본심사(2차)

- 기본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출서류와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제출 기관(대표자, 시설장)에 대한 면접을 진행
 - 여건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분리하거나 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본심사 결과, 요건에 충족하고 위원 간에 이견이 없을 경우는 현장심사(3차) 진행
 - 단,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기준에 현격히 미치지 못할 경우는 탈락 결정

(6) 현장심사(3차)

- 현장심사는 방문심사로 지자체 담당자와 심사위원회 위원이 실제 기관을 방문하여 기본심사(서류 및 면접)에서 파악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확인
 - 이때, 사안에 따라 일반 심사위원 외에 소방, 안전, 보건의료 등 전문심사위원을 동행 가능하도록 규정

(7) 지정 결정

- 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과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 및 갱신을 결정하고, 해당 및 관련 기관에 통보
 - 지정, 가지정¹³⁾, 탈락으로 구분 통보

(8)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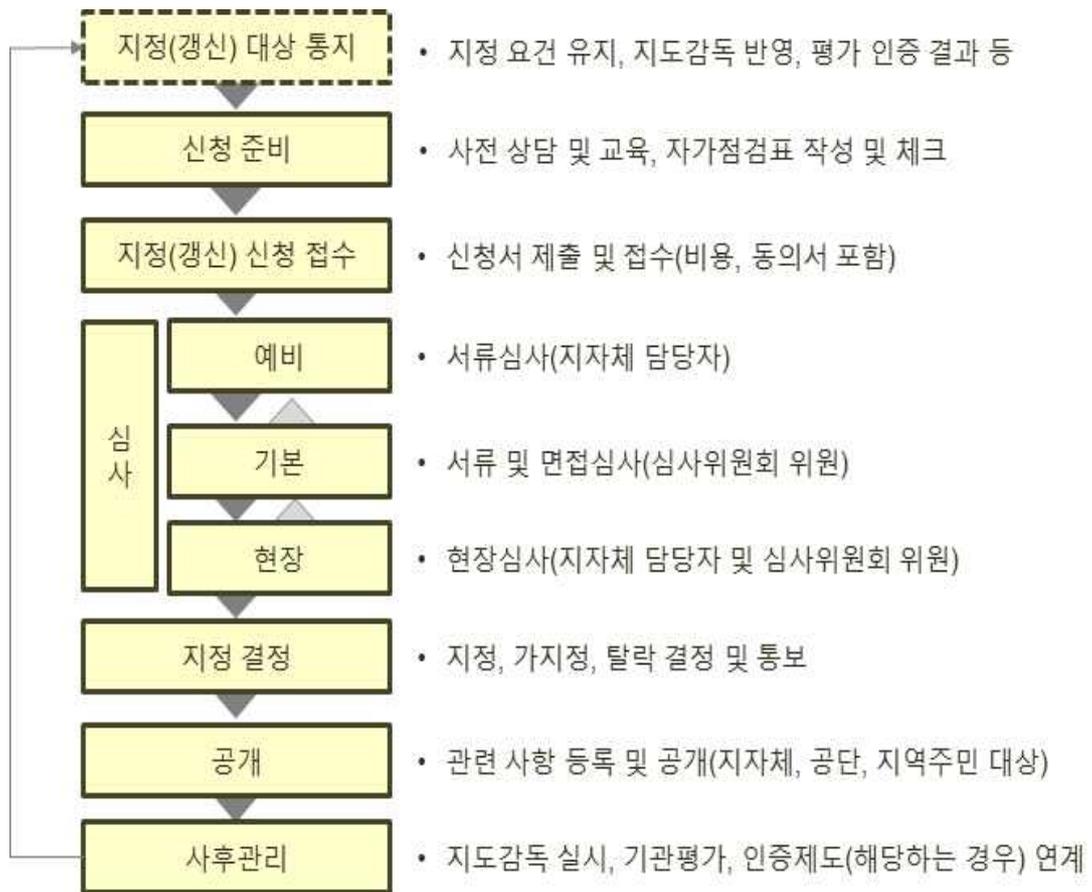
-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결과와 함께 절차에서 확보한 정보를 관련 지자체와 건보공단, 지역주민에게 공개
 - 지역주민에게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13) 가지정은 탈락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미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로, 실제 도입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하며, 특히 갱신 시점에 미흡한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자구노력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요구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식임

- 해당 기관의 입소 및 이용자, 가족에게 지정 및 갱신에 따른 결과를 인지,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9) 사후관리

- 지자체는 지정(갱신)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관련 기준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활동을 실시
 -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으로 명시된 지도감독 기능을 확대
 - 특히, 최초 지정을 받은지 1년 이내에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지정 당시에 제출한 계획이 실제 현장에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
 -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평가, 관련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유도



[그림 5-2]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절차 개선(안)

2. 현장 중심의 연속적 관리체계 확보

1) 현황 및 과제

- 지정(갱신)제 운영 과정이 주로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장기요양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제한
 - 현재의 지정(갱신)제에서는 업무절차에 포함된 '현지확인' 외에 장기요양현장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기 어려움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규정해야할 사항일 수도 있으나, 공식적인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 담당자와 심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서류 중심의 지정(갱신)제 운영이 가지는 어려움이나 제한점을 다수 지적
 - 서류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사항은 지정 업무로 전환되면서 본인들이 담당하는 서류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서 부담스럽다는 의견
 - 현장확인 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곤란
 -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에 시설의 설비와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한데 스스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 점검 매뉴얼 필요
 - 서류를 통한 심사위원회 운영의 제한점
 - 서류심사로만 이뤄져서 제공기관의 대표나 시설장이 실제로 사업을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정성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 지정 이후의 현장 점검의 필요성
 - 지자체 공무원들은 제공기관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한 이후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장에 기반한 관리체계로의 개편이 중요함에 공감

- 서류 중심 업무 부담
 - 인력이 부족하여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 검토,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서류 작업 등 업무 과중이 극심
- 제출 서류의 변별력 부족
 - 지정심사 제출서류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짜집기 형식이라 일률적이고 차별화가 없음
 - 기준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작성되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슷하게 작성, 제출되어 심사함에 있어 변별력이 매우 떨어짐
 - 제출신청기관이 취지와 이해가 부족하여 심사 자료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
- 심사위원회 위원의 현장확인 참여 필요
 - 현지확인 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 확인하여 검토서를 작성하며 위원들은 서류상 참고할 뿐임. 현지확인 은 지자체 담당자 뿐 아니라, 지정심사위원이 현지확인에 동행 필요성 있음
 - 현지확인 이 무척 중요한데, 심사위원들은 현지확인 시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의 내용과 현장을 연결해서 볼 수가 없음
 - 심사할 때 출력된 서류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 실제 현장을 알 수가 없어 평가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음. 따라서 심사위원회 때 현장 사진을 보다 많이 제출토록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
- 사후관리의 중요성 인식
 - 서류중심의 심사로 서류와 실제운영의 차이 발생 초래를 우려, 서류 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 국외 사례에서도, 현장에 기반한 관리체계의 중요성 강조 추세

-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심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관리자에 의한 청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확인에서 인원, 시설, 운영의 3가지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체제유무, 적정 운영)을 제시
-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 수정 후 제출하거나 갱신의 경우, 별도의 권고·명령 등의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도록 규정(권고, 공표, 명령, 공시, 통지 등)
- 독일의 경우도, 평가 및 현장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를 실시한 MDK는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주 내에 작성, 심각한 질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주연합회가 개선을 위한 조치와 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재검사 등을 통해 확인

2) 개선안 검토

- 현재의 서류중심 지정(갱신)절차를 장기요양 현장에 기반한 연속적 관리체계로 전환
 - 지정(갱신)제 운영 전반의 현장 중심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① 지정 전 단계, ② 지정 유지 단계, ③ 갱신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
- 우선, 지정 전 단계에서는 ‘현지확인’의 심사자에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
 - 이상의 지정(갱신)제 절차 개편안과 연결하여, 예비심사(서류)외에 기본심사(서류 및 면접)와 현장심사(방문확인)에 심사위원회 위원이 참여
 - 특히, 현장심사(현지확인) 시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심사위원회 위원이 동행하도록 규정
- 이와 함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사활동이 요구될 경우,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방, 안전, 시설, 인권, 보건의료 등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징적인 심사지표가

있다면, 이에 대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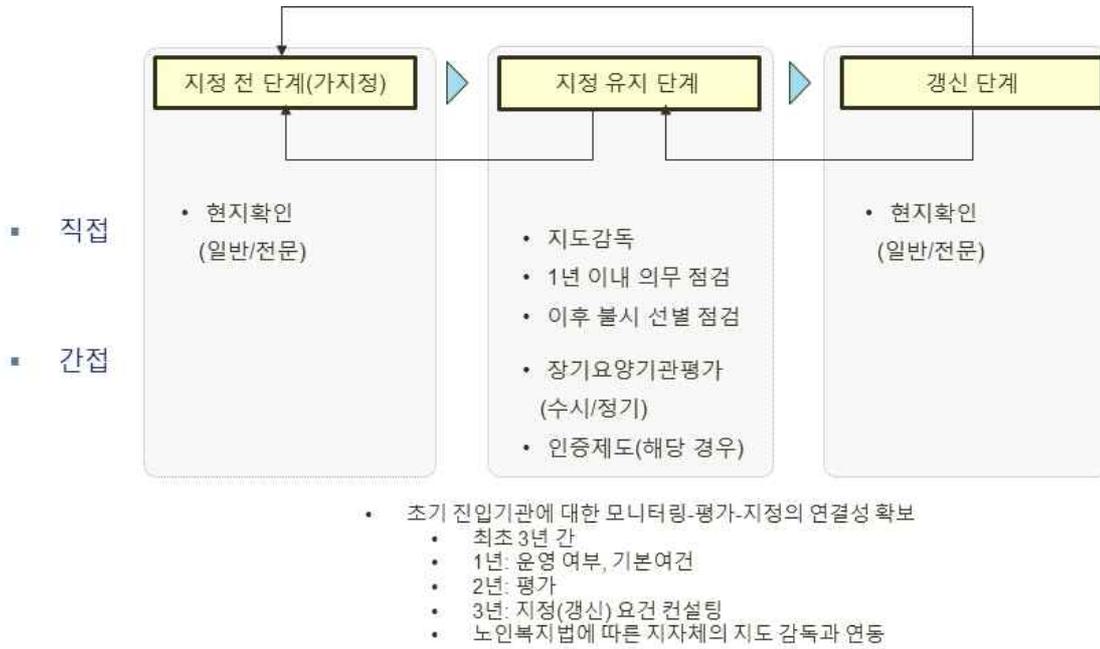
- 다음으로, 지정유지 단계에서는 장기요양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과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기관평가'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1년 이내에 의무적인 점검형태로 운영됨이 바람직(1년차)
 - 노인복지시설로서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¹⁴⁾
 - 이후는 수시점검의 형태로 일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또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지속)
 - 지자체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결과에 대한 실질적 조치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지정기관을 가지정 기관으로 전환, 개선 권고, 공표, 명령, 공시 등)
 -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점과 갱신 시점의 사이에 실시(2년차, 5년차)
 -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연계, 지도 감독 및 수시점검, 특히 갱신 전에 이를 파악하고 있도록 조치
 - 지자체가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해당 인증 시점과 연동하여 운영 검토¹⁵⁾
- 마지막으로, 갱신 단계에서는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수행
 - 기본적으로 지정절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 다만, 그동안의 지도감독, 기관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

14) 갱신 시점에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관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물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15)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좋은돌봄 인증제도'를 운영

장확인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지도감독, 기관평가, 인증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정보를 누적하여 관리, 이를 공유하여 갱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 구축 필요



[그림 5-3] 장기요양 지정 단계와 갱신단계의 연결성 확보(안)

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의 구조화 및 신뢰성 향상

1) 현황 및 과제

○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시 검토할 주요 사항과 적용할 주요 심사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지정 시 검토해야할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3)
 -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심사지표 항목 구성(가이드라인)
 - 심사지표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 다만, 심사지표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별도의 자치단체 규칙으로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운영

- 현 시점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지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의 시정 방향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

- 심사절차 운영 외에도 지자체의 심사지표 개선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 미흡
-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심사지표의 개선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각 항목 및 지표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적
-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심사지표와 지자체의 개별적 심사지표 동시 고려
 - 공통으로 적용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여건에 따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전환 요구
 - 대표자와 시설장과 같은 관리직과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량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더욱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
 - 심사위원 간 편차 최소화 필요 등
 -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일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지표들에 대해 점수를 다르게 배점하는 문제 등
- 설문조사 결과에서 세부 심사지표별로 개선의견들을 개진¹⁶⁾
- 심사지표 및 기준에 대한 문제 인식
 - 심사기준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10.7%만이 적절하다고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은 32.2%
 - 몇몇 심사지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변별력, 신뢰성이 비교적 낮은 항목으로 평가
 - ‘설치기관 공익성’, ‘(대표자의)노인복지 서비스 관련 전문성’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 특히 ‘운영규정, 사업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계획’, ‘지역사회 자원 활용·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 마련 여부’

16) 각 심사지표별 개선의견은 설문조사결과를 참고하기 바람

-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 심사지표의 통일성을 강조한 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필요성과 그 성과에 공감
- 조사결과,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별 심사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심사위원은 높게 평가

○ 항목별 검토 의견 사례(‘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경우)¹⁷⁾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조회 시 대표자의 이전경력은 조회되지만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를 경우 시설장의 이전 경력은 조회하기 어려움
 - 행정처분이나 검직 여부 등 전국 시군구에 조회 요청 공문 보내나, 형식적인 절차
 -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에 가담한 시설장과 타 직종(사무원, 조리원, 기타 등)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감점사유에서 제외
 - 타 시도, 타구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중 시정명령, 경고등은 조회가 불가능
 - 노인학대, 부당청구, 평가회피 등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자체가 불가해야. 배점이 많이 깎이지도 않아 별로 의미가 없음
 - 이전 운영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는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다 받아 큰 의미가 없음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등의 주관적인 평가지표는 신뢰성이 떨어짐 (검증이 매우 힘든 부분)
- 대표자(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일정한 자격 요건 부여, 실제 노인 관련 분야 경력 반영 등
 - 보다 구체적인 점수 부여(예. 노인복지 경력 5년 이상 11점, 3년 이상

17) 항목별 지자체 담당자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개선 의견은 설문조사결과를 참고하기 바람

7점, 3년 이하 3점, 경력 없음 0점)

- 향후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51.5%)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46.2%),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44.7%),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22.7%)의 순서

<표 5-1> 향후 지정(갱신)제 반영이 필요한 심사 지표

구분	1~2순위 합계	1순위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51.5	21.2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46.2	31.8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44.7	22.0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2.7	7.6
기관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18.2	12.1
향후 운영 및 발전계획	8.3	3.0
지역사회 공익·공헌활동	4.5	0.8
지자체의 관련(인증)사업 참여실적	3.8	1.5

- 관련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
 - 일본은 ‘지정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를 중심으로 명시(안 되는 이유)
 - 인원기준 부족
 - 설비, 운영기준위반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인 때
 - 개호보험법, 기타 보건의료복지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의 사람이 있을 때
 - 지정 취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 5년 이내에 개호보험서비스에 관하여 부당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 신청자(사업자) 본인만이 아니라, 법인 임원, 관리자 등을 포함, 인력, 시설, 운영에 포커스
- 독일의 경우, 운영 신청 시 제출서류로 다음을 규정(베를린 주 사례)
 - 영업개시 예정일
 - 시설 및 운영자 이름과 주소
 - 시설 종류 공간 위치 주거공간 수 및 크기
 - 종사자 수
 - 시설 책임자 이름 직업교육 이수과정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책임자 및 종사자 성명 및 직업교육
 - 시설의 일반 운영내용 및 개념
 - 법 72조에 따른 돌봄계약 및 조에 따른 급여 및 질 합의사항 또는 이것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 법 76조 3항에 따른 합의 또는 이러한 합의에 노력할 것에 대한 설명
 - 투자비용 충당을 위한 서류
 - 입소계약서 및 기타 문서 견본 등

2) 개선안 검토

- 일반적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사업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심사지표를 구조화하고, 이들 심사지표를 지정 및 갱신제의 각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주요 개선사항을 차례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장기요양 지정(갱신)제에 적용할 ‘심사지표의 기본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지정 및 갱신 단계에서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관한 ‘심사지표 적용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

- 현재의 개별 지표들을 ‘구조-과정-결과지표’로 범주화하여, 영역별로 재배치하는 방안 제안
 - 구조지표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위해 투입(input)하여야만 하는 기본 요건이며, 과정지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과정(process)에서 지켜야할 기준으로, 결과지표는 이를 통해 달성해야하는 성과(outcome)와 관련
 - 지정 및 갱신갱신제의 업무흐름에 따라 신규 기관의 진입과 기존 기관의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적용할 심사지표의 성격 및 유형을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방향 제안
 - 우선, 지정에 해당하는 신규 기관의 진입단계에서는 운영을 위한 계획과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 등 ‘구조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 해당 구조가 차질 없이 갖추어졌을 때 서비스 제공 과정과 기대하는 성과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에 중점
 - 다음으로 갱신에 해당하는 기존 기관의 운영단계에서는 투입요소가 실제로 작동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에 실현되고, 충분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 실제 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과 실적, 성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하는데 중점
- 둘째, ‘심사지표의 배점 방식’과 관련한 사항으로, ‘필수지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현재와 같이, 모든 심사지표에 대한 특정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모든 지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유사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을 놓칠 우려
 - 특히, 장기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필수지표(안)’로 관리할 필요
 - 필수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에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적합 또는 부적합(fail/pass)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일종의 지정 및 갱신의 결격사유에 해당

- 신규 진입하는 기관일 경우(지정)는 필수지표와 관련한 사항이 충족되었거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한 경우, 기존 운영기관일 경우(갱신)는 실제 실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
- 필수지표로 분류하여 관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의 몇 가지 지표를 제안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와 인권 준수
 - 기존의 심사지표(가이드라인)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그 처분 결과로서 업무정지일을 기준으로 감점하는 방식을 채택
 -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또는 종사한 인력에만 적용이 용이한 기준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에 대한 적용에 제한점이 있다는 문제
 - 처분이력 등과 함께 그 원인이 되는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예를 들어, ‘노인학대’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종사자로서 취업에 제한을 두도록 이미 규정
 - 적용 대상은 대표자(법인)와 종사자만이 아니라, 실제 기관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장도 당연히 포함해야할 것
 - 기관장 및 종사자로서의 윤리와 인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지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채용과정에서의 확인, 종사자윤리행동강령의 마련과 징계절차, 관련 활동과 교육 등의 실천을 연결하여 평가(갱신)할 수 있는 연결된 구조가 바람직
- ②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 준수 여부
 -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
- ③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설비, 안전 기준 준수 여부
 -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④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
- 노사협의회(종사자간담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규정
- ⑤ 재무회계 및 재정운영의 기록 및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재무회계규칙 10조, 19조
 -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단, 이상의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갱신 시점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될 경우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함이 바람직
- ⑥ 현저한 부당 또는 부정행위 유무
 -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 보건의료복지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등

<표 5-2> 향후 지정(갱신)제 필수지표(안)

구분	근거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와 인권 준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설비(장비), 안전 기준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26조, 27조, 28조
재무회계 및 재정운영의 기록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재무회계규칙 10조, 19조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현저한 부당 또는 부정행위 유무	장기요양 및 보건의료복지 등 관련 법률

○ 셋째, 지정(갱신)제에 적용할 심사지표가 가능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구조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

- 이미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지정(갱신)제에 활용할 심사지표를 공식적

- 으로 규정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적인 심사지표를 개발하여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일정 수준의 통일성이나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
 - 이를 위해 기존에 항목과 세부기준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영역과 항목, (세부)지표의 3단계로 계층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안
 - 영역: 심사의 대상
 - 항목: 심사의 목적
 - 세부지표: 심사의 내용
 -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각 기초지자체는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세부지표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발 및 적용하는 방식
 -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별 심사항목 및 지표를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영역에 따라 재배치하고 부족한 부분만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존 심사지표와의 차이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단, '필수지표(영역)'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이상의 검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 영역 및 항목, 세부지표 구성(안)

영역	항목 ¹⁾	세부지표	기타
필수 영역	-필수인력 -필수시설 -필수운영	-필수인력기준 확보(지정) / 유지(갱신) -필수시설기준 확보(지정) / 유지(갱신) -필수운영기준 확보(갱신) / 유지(갱신)	전국 표준 (보건복지부)
인력 영역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인력역량 확보(지정) / 유지(갱신)	지역 선정 (지자체)
시설 영역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시설수준 확보(지정) / 유지(갱신)	
운영 영역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운영절차 확보(지정) / 유지(갱신)	

주: 1) 표 내의 항목은 필수자료 검토안과 현재 심사지표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 넷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장기요양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경우, 이를 지정(갱신)제 운영에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권장
 - 특히, 지역단위에서 추진 중인 장기요양 관련 특화사업이 있다면, 그 실적 및 성과를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
 - 각 지자체의 장기요양관련 인증제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 지역사회보건의료복지 사업 등
- 다섯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이후 갱신 시에 적용할 핵심적인 심사지표를 사전에 선정하여 관리 및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지정권한을 가진 지자체만이 아니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기간(6년) 동안 갱신과 관련한 핵심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 갱신 시점에 적용하여야 할 주요 심사지표로 다음을 제안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여부
 -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
 - 이상의 심사지표는 필수지표로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이 지역 및 기관 간 형평성이나 수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재무회계 기준이나 인건비 지출비율은 지정(갱신)제를 통해서라도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현행법에서 강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나 향후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
-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연동 가능한 심사지표가 되어야 하며, 갱신 시점만이 아니라, 신규 지정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기관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대상으로 제공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단위에서 보편적이고 표준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중점
 -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기관평가는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각 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등급)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아닌 갱신 시점에서 적용이 가능한 지표
 - 다만, 지정 시점에 사용하는 심사지표의 내용이나 기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내용이나 기준과 유사하게 구성함으로써, 지정과 장기요양기관 평가, 이후 갱신으로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매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변동이 적은 내용과 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 검토

4. 지정(갱신)제 사업추진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1) 현황 및 과제

-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개별 기초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조례로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존재
 - 지자체별로 별도의 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심사지표를 나름대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시설 및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등 급여 유형별로 구분
 - 배점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감점과 가점 구성
 - 지자체 단위의 독자적인 심사항목 구성
 - 별도의 추가적인 전문 심사지표를 구성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함께 운영하는 사례 등 다양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의 책임으로, 광역지자체 수준이나 외부 전문기관 등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 미흡
 -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4조)을 포괄적으로 규정
 - 장기요양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와 유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기초 및 광역지자체 모두에 있음(시도는 요양보호사인력 양성 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등)
 - 행정적으로 관리 범위를 기초지자체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역간 경계 넘기(border-crossing)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장기요양현장의 특성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만이 아니라, 제공자의 경우도 발생
 -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타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지역별 총량제’의 논의와 관련해서도 연결되는 이슈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심층면접(FGI) 결과에서도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하는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이나 제한점 제기
 - 인접 기초지자체 간의 상이한 운영기준과 이로 인한 문제 발생
 - 동일 시도 내, 인접 지자체 간에서도 지정(갱신)기준의 편차
 - 신규개설자와 민간 영리 컨설팅 기관의 지역 쇼핑 현상
 - 기초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
 - 지자체 담당자에게 집중된 업무,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곤란
 -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 소도시의 경우 장기요양 전문가 위촉이 어려움
 - 기초 및 광역 단위의 수급 파악 곤란
 - 지역별 수요공급 관리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지원 필요
 - 타 지자체와의 정보 연계 및 공유 제한
 - 타 시도, 타 구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중 시정명령, 경고 등은 조회 불가능 등

- 설문조사 결과,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다음을 지적
 - 상담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지원
 - 지자체 담당자, 심사위원회 모두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55.3%)이 가장 많았음
 - 기초 지자체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지자체 담당자의 '지정제 운영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지원'(29.5%) 요구가 높음
 - 건보공단과의 협업구조 강화
 - 심사위원은 '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25.7%)를 강조

-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협업구조를 강조하는 추세
 - 일본은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우리의 시도) 지사의 지정으로 운영하며, 실태에 입각해서 지도·감사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도도부현(시정촌)의 권고·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권한 정비를 실시
 - 독일은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각각 다양한 장기요양 운영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인가 및 관리의 경우 해당 주의 관련법 적용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허가는 각 지방정부에서 하고, 보험자인 장기요양금고(Pflegekasse)는 허가받은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2) 개선안 검토

- 현재 기초지자체인 시군구가 주도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사업방식을 유지하되, 광역지자체인 시도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직·간접적으로 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다만, 이상의 협력 및 지원은 기초지자체가 지정(갱신)제 운영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축소하는 논의와는 다름에 유의
 -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추진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체계를 재구조화
- 우선, ‘보건복지부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구분과 관련하여, 장기요양현장에서 지자체가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심사지표를 내실 있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수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영역’수준에서 관리
 - 지정(갱신)제 운영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나 심사지표 영역(1단계)은 전국

수준에서 표준화 추구

- 보다 구체적인 항목과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정(갱신)제의 세부적인 절차나 심사지표 항목(2단계) 및 세부심사지표(3단계)는 지자체의 특성 및 개별성 인정
 - 지자체가 심사지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단계는 물론, 그 이후의 사후관리와 갱신 단계에서도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¹⁸⁾

○ 다음으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장기요양지정(갱신)제 운영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직간접적 역할로 다음 사항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광역 단위 장기요양수급계획 마련 및 관리
 - 지정(갱신)제 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관련 정보 제공
 - 신규 개설(희망)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
 - 기초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지원
 - 지정(갱신) 심사지표 운영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보급
 - 광역단위 장기요양관련 사업의 지정(갱신) 기준 반영 유도
-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회서비스원 내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조직 구성 및 위탁
 - 상담 및 교육자료, 표준 운영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18) 장기요양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지자체 고유의 역할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과 등 관련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가진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갱신)제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역할 분담을 검토
 - 전국 네트워크조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역할 부여
 - 건보공단 지사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있으나, 규모나 수행해야할 역할을 고려할 때 지역본부단위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
 - 현재 지정(갱신)제 운영에서도 제반 절차와 심사지표 기준에 건보공단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신청 이후 결정 시점까지 장기요양기관 및 제공인력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에 머물러, 지정(갱신)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로는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
 - 기초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에서 지원이 곤란하거나 협력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방향 바람직
 - 특히, 향후 갱신제 운영에 반영이 필수적인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결과만을 통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 평가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참여 방안 모색

5. 지정(갱신)제 성과관리체계 및 이행전략 개발

1) 현황 및 과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의 목적은 다음 3가지로 요약 가능하며, 이는 제도 운영실적이나 성과와 직결
 - 지자체 관점에서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공급
 - 제공기관 관점에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지역주민 관점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접근성 보장

- 심층면접이나 설문조사에서도 지정(갱신)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대해 공감하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
 -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의 도입·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그 보다는 좀 더 낮은 것으로 평가
 - 취지 공감도는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순임
 - 실제 성과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방지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순임
 - 특히,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지원책 마련이 시급
 - 향후 갱신제 운영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5.4%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갱신제 운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
 - 기타, 사업 운영과 실적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한 연속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요구
 - 행정처분 이력 전국조회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입력절차와 방식이 매우 까다로워 누락된 사항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신청자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행복이음 전산입력이 필수이나 입력방식이 까다로워 업무시간이 과다 소요

- 설치신고 접수 후 행복e음에 인력현황 전산 입력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개선 희망 등

2) 개선안 검토

- 지정(갱신)제 운영에 따른 신규 진입 및 퇴출의 실적(건수)을 관리하면서도, 실제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으로써 기대한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지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 지자체 관점에서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공급
 - 제공기관 관점에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지역주민 관점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접근성 보장
- 첫째, 장기요양기관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정(갱신)제 운영, 실적 및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 개발 지원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있어,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장기요양 수급상황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전국 및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장기요양기관 분포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개발
 - 국내외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모색¹⁹⁾
 - 지역별 수급상황 관리를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지역총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제한점과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지역총량의 개념을 단순히 양적 개념(예. 기관수, 정원수 등)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접근성(Accessability)을 기준으로 기관 간 거리, 밀집도 등

19) 일본의 경우,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介護政策評価支援システム), 지역포괄케어 '가시화' 시스템(地域包括ケア「見える化」システム)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각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가 개호보험정책의 자원 도입, 결과, 성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

을 반영할 수도 있음

- 또한 적정 총량 값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특정한 절대값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균형(balance)의 관점에서 평균값을 적용²⁰⁾
- 가장 중요한 제한점은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이용과 제공 측 모두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경계넘기(border-crossing) 현상으로 지역별로 총량을 규제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이동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문제

○ 둘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해당 장기요양기관만이 아니라, 타 장기요양기관과 지역사회주민에게 공개

- 지정 및 갱신 과정에서 발굴한 우수 장기요양기관의 사례를 보급함으로써 지정(갱신)제 운영 성과를 타 기관으로 확대
 - 미흡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과 병행
-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 특히,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중인 수급자와 가족에게 갱신결과(갱신, 탈락)에 따른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필요 시 관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셋째, 성과에 기반한 지정 및 갱신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이행전략 마련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갱신주기는 6년으로, 3년 주기의 장기요양기관평가와 연동하여 운영할 방침
 - 신규 지정 후에 2회의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2년차, 5년차)를 갱신에 반영하는 구조
- 이상의 제도운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존재

20) 일본 개호보험의 '참작표준과 총량규제'가 대표적으로, '참작표준'은 개호보험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하는 기본지침에 따라 각 자치체가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에 정하는 서비스 예상량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표준'을 의미

- 기존에 운영 중인 대다수 기관이 특정 시점에 갱신 집중
- 지정 시점(신규)과 급여유형(재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 반영 회수나 방식에 차이 발생
-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회의 장기요양기관평가를 받은 다음 연도에 갱신 가능(A유형)
 - 다만, 갱신물량이 6년 주기로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현상 발생
- 기존 운영 중인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은 개설년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갱신 적용
 - 짝수년도 개설기관은 지정 후 2차 장기요양기관평가와 갱신 년도가 동일하며, 2회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의 반영이 곤란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C유형)
 - 홀수년도 개설기관은 지정 후 1차 장기요양기관평가를 받고 2년 후 갱신 년도가 되어, 평가와 갱신 간 간격이 넓으며 다음 해에 2차 기관평가가 실시되어 결과 반영이 불가(B유형)
- 지정(갱신)제 도입 후에 신규로 지정을 받게 되는 장기요양기관도 이상의 3가지 유형(A, B, C)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지정 시점에 따라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급여유형임에도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평가와 갱신 시점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 발생
- 이상의 문제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평가 회수 평가 갱신 간격	
시설	기존	○		1			2	◎a				평가 2회 1년 후 갱신	
	신규		○				1		◎b			평가 1회 2년 후 갱신	
					○			1			2◎c		평가 1~2회 동일년도 갱신
						○		1			2	◎a	평가 2회 1년 후 갱신
재가 짜수	기존	○			1			2◎c				평가 1~2회 동일년도 갱신	
	신규		○		1			2	◎a			평가 2회 1년 후 갱신	
					○				1		◎b		평가 1회 2년 후 갱신
						○			1			2◎c	평가 1~2회 동일년도 갱신
재가 홀수	기존	○				1		◎b				평가 1회 2년 후 갱신	
	신규		○			1				2◎c		평가 1~2회 동일년도 갱신	
					○		1			2	◎a		평가 2회 1년 후 갱신
						○				1		◎b	평가 1회 2년 후 갱신

■ 장기요양기관평가 ○ 지정 ◎ 갱신

[그림 5-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주기 및 적용 시점

- 지자체나 기관, 보험자 입장에서 통일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안을 제안
 - 지정과 갱신 물량 집중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감소를 위해, 갱신 물량 분산과 간소화 등 방안 검토 필요
 - 장기요양기관평가와 지정갱신제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관점에서 정비 필요

(1) 1방식(갱신방식 구분 운영)

- 현재의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 및 방식을 유지하고, 기관의 개설시점에 따라 갱신 방식을 구분하여 운영
 - 이때, 2회 이상의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종의 ‘가지정’ 개념을 활용
 - B유형(갱신과 평가년도 동일), C유형(갱신 다음연도에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가지정을 실시하고, 해당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확정
 - 당초의 지정(갱신)제 운영 방침과 현행 장기요양기관평가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설 및 지정년도에 따른 차등적 적용에 대해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으로 작용 가능함. 특히, 기존 개설 기관에 주기적 갱신물량 집중현상은 여전히 문제로 남음

(2) 2방식(평가방식 개편 적용)

-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 및 방식을 개편하고, 기관의 개설시점에 따른 갱신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A유형(평가 2회 후 갱신)으로 통일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와 방식을 개편할 필요

- 구체적으로는 현재 3년 주기로 시설과 재가(홀수, 짝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평가를 각 기관의 개설연도(지정)를 기준으로 재편
- 매년 모든 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가 가능한 상시적 평가체계로 전환(개별 기관에 대해서 3년 평가주기는 유지)
- 다만, 기존 운영기관의 경우는 갱신물량이 집중하지 않도록 최초 갱신에 한하여, 시설은 6년, 재가(짝수)는 7년, 재가(홀수)는 8년차에 갱신을 실시함으로써 물량을 분산하는 전략 검토
 - 재가(홀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2차 장기요양기관평가 다음 해인 5년차에 갱신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기관의 반발이나 지자체의 준비 부족 등 우려
 - 평가물량 분산만이 아니라, 평가 대상유형의 적정분포를 고려한다면 시설 장기요양기관을 추가적으로 분산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주기를 동시에 조정하여야 함
- 신규 지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는 개별 기관별로 개설 및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 1, 2차를 받도록 함
 - 지정(1차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3차, 5차년도), 갱신(6차년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통합	○		■			■	◎a		■
		○	■				■	◎a	
			○					■	◎a
			■	○					■

평가 2회
1년 후 갱신

■ 장기요양기관평가 ○ 지정 ◎ 갱신

[그림 5-5]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방식 개선안(2방식)

- 지정갱신제의 기본 방침은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평가체계 개선과 연동하여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
 - 단, 갱신연도에 따라 특정 급여유형(특히, 기존 시설 장기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평가가 이루어지거나, 3년을 주기로 갱신 물량이 증감하게 되는 현상은 제한점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초 갱신 적용 시점을 가능한 넓게 펼쳐야 하나,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초기년도이기는 하나 지정과 갱신 시점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우려
- 넷째, 갱신에 탈락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지정(갱신)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정 시점만이 아니라 갱신 시점에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함
 -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참여 주체에 따라, 이용(입소)자, 장기요양기관(장), 지자체, 건보공단으로 나누어 접근 가능
 - 우선, 해당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 대해서 재가의 경우는 기관의 변경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나, 시설의 경우는 입소가 가능한 기관으로의 전원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서도 갱신탈락에 따른 폐업 또는 매각의 절차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공될 필요
 - 지자체의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사안으로 사전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할 것임
 - 건보공단의 경우는 갱신 탈락 이후, 폐업이 되기까지 수급자의 수급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제공자 변경 및 전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로 검토해볼 사항은 최종적인 지정탈락을 결정하기 전, 일정 기간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해당 장기요양기관 보다는 이용자 또는 입소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제공자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 이때, 이상에서 제안한 ‘가지정’ 개념을 도입해볼 수 있는데, 지정 결정 시점이 지났으므로, 가지정으로 처리하고 이후 1년 이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지정탈락을 통보하는 방식임
-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개선 노력과 함께 그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계적인 폐업 또는 전환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제3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편 과제 간 우선순위 검토

1. 주요 과제별 시급성 및 중요도 검토

- 이상에서 검토한 과제를 그 시급성과 중요성, 현장 수용성 및 실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검토

1) 지정(갱신)제 운영절차의 체계성 강화

- 지정(갱신)제 운영절차 개편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에서도 필요성이 높았던 주제로, 실제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심사위원회 위원,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관련 지침의 변경을 통해 개편이 가능한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제로 판단
- 변경된 운영절차에 대한 관계가 이해와 교육이 요구되는 만큼, 변경 적용 시점을 사전에 정하여 추진 일정계획을 사전에 마련함이 바람직

2) 현장 중심의 연속적 관리체계 확보

- 서류평가가 가지는 한계점이나 업무 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장기요양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심사 및 점검활동 강화를 추진할 필요
- 현장심사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 인력 확보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준비가 요구
- 지역에 따라, 현장심사 투입인력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우선

- 또한, 지정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현장중심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의 확대 시점과 방식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는 상황

3) 지정(갱신)제 심사지표의 구조화 및 신뢰성 향상

- 심사지표가 가지는 문제 및 제한점은 지정(갱신)제 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로 공통적으로 인식
- 심사지표의 전면 개편이 아닌, 영역별 범주화 및 보완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현장의 수용성이나 부담을 최소화
- 다만,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지표의 경우는 관련법에 기초하여 적용 가능성 및 방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 심사지표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일정 권역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가능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도 방안으로 판단
- 해당 지표개선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 또는 지원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

4) 지정(갱신)제 사업추진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 현재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운영체계를 광역지자체와 보험자 등이 참여하는 지원체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기관의 인식과 협력이 중요
- 지역 간에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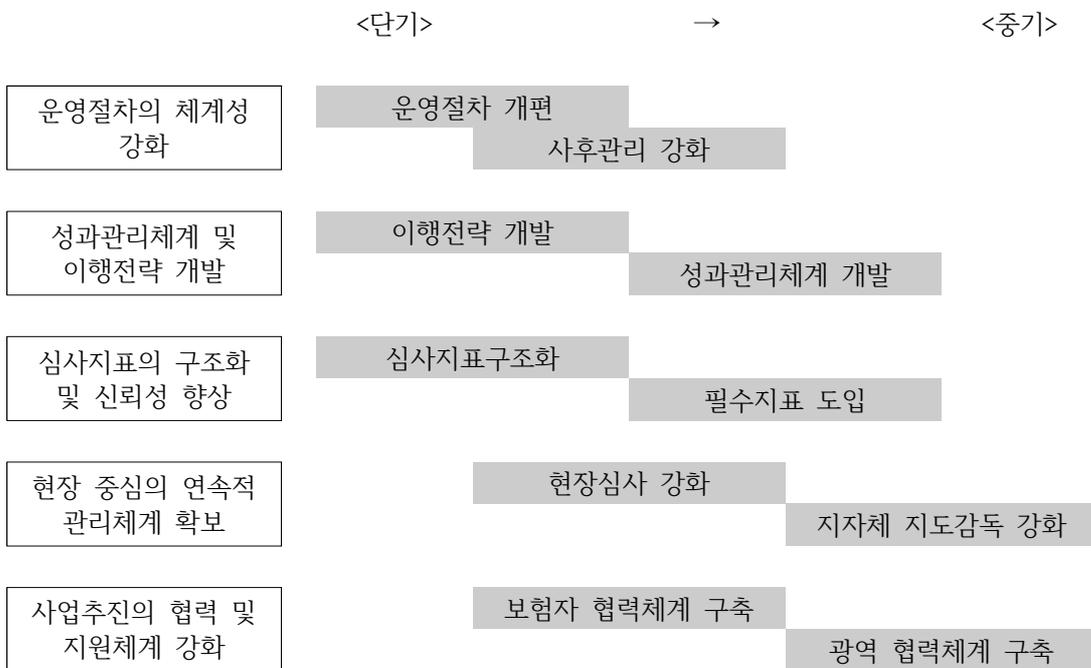
- 또한 가능하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

5) 지정(갱신)제 성과관리체계 및 이행전략 개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성과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 선정과 함께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
- 최초로 갱신이 실시되고 물량이 증가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및 이행전략은 시급히 마련할 필요

2. 과제별 우선순위 제안

- 이상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과제별 우선순위를 차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지정(갱신)제 운영절차를 개편하고 심사지표를 구조화하는 한편, 다가올 갱신주기에 대비하여 이행전략을 사전에 개발
 - 다음으로, 지정 시 현장심사와 이후 사후관리 절차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평가와 연계한 보험자 협력체계를 구축
 - 이어서, 지정(갱신)제 제도 도입의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필수지표를 도입·확대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 단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그림 5-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과제별 우선순위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권현정. (2014).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가 조직구조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6(2) : 5-29.

김예린, 김근세. (2013).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와 보육서비스 품질 인증시결과 미인증시설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 139-164.

김옥, 서동민, 문성현, 이용재, 최인덕 (2013). 장기요양급여 부담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백석대학교.

보건복지부. (2018).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석재은, 임정기, 전용호, 김옥, 최선희, 이기주, 장은진. (2015).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학회.

염호기, 황인선. (2012).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 전망.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18(1): 1-14.

원소연. (2012). 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의 원칙,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 441-461.

이희승·이호용·문용필. (2016).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황재문, 서원식. (2014). 전문병원제도의 시행성과 분석.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4.11 : 482 - 491.

독일연방통계청 (2020). Statistisches Bundesamt.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BMG). (2019). Ratgeber Pflege - Alles, was Sie zur Pflege wissen müssen. Berl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18).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www.juris.de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10). 주거계약과 돌봄계약법 Wohn- und
Betreuungsvertragsgesetz. www.juris.de
- Medizinischer Dienst der Spitzenverbände der Krankenkassen e.V (MDS).
(2009). Grundlage der MDK-Qualitätsprüfungen in der ambulanten
Pflege
- Ministerium für Arbeit, Frauen, Gesundheit und Soziales. (2001).
Rahmenvertrag gemäß 93d Abs. 2 BSHG für das Land
Sachsen-Anhalt.
- Ver.di. (2011). Personalbemessung in der stationären Pflege.
- Senatsverwaltung für Integration, Arbeit und Soziales Abteilung Soziales.
(2013). Verordnung über bauliche Anforderungen an Gebäude und
Außenanlagen in stationären Einrichtungen nach dem
Wohnteilhabegesetz (Wohnteilhabe-Bauverordnung - WTG-BauV).
[https://www.berlin.de/sen/soziales/service/
berliner-sozialrecht/kategorie/
rechtsvorschriften/wtg_bauv-573419.php](https://www.berlin.de/sen/soziales/service/berliner-sozialrecht/kategorie/rechtsvorschriften/wtg_bauv-573419.php) (2020.11.5.)
- 厚生労働省老健局総務課介護保険指導室.(2006). 介護サービス事業者の業務管理
体制の監督について.
- 厚生労働省老健局振興課. (2016). 介護サービス事業者の指定事務等の見直しに
ついて.
- 福岡県介護保険課. (2018). 介護サービス事業所 指定更新手続Q & A.
- 福岡県保健医療介護部. (2018). 介護保険課指定係. 指定更新対象事業所・施設質
問票.
- 福岡県保健医療介護部. (2019). 介護保険課指定係. 指定更新手続要領.
- 福岡県保健医療介護部. (2019). 介護保険課指定係. 事業所指定更新申請に係る手
続について (通知) .
- 岩沼市健康福祉部. (2019). 介護福祉課岩沼市指定地域密着型サービス事業者集
団指導.

[부록] 설문조사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조사 <심사위원회 위원용>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연구과제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 담당자,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현황과 성과, 문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더라도 응답자(지자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총합계나 분포만을 통계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 대상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지자체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
- 설문 길이 : 약 20분 내외 소요 예정
- 설문 기간 : 2020. 10. 21 (수) ~ 2020. 10. 28 (수)

2020년 10월

- ※책임연구원: 서 동 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김 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문 성 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전 용 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이 용 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황 재 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 ※조사수행(문의): 중앙경영연구원 김영락

※ 본 설문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지자체용 담당자용) 또는 심사위원회 위원(심사위원회용)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당 1명, 심사위원회 위원은 지자체당 2명 정도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 지자체 담당자용 설문 URL : https://ko.surveymonkey.com/r/LTC_localgovern

☞ 심사위원회용 설문 URL : https://ko.surveymonkey.com/r/LTC_commit

※ 이메일 회신용 주소 : -@- (메일 회신 시 제목에 지자체명 명기 要)

A.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이번 파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A1.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 및 운영 취지에 현재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가 척도 보기]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지정(갱신)제 취지	[응답란]	
	취지 공감도	실제 성과
1)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우수 장기요양기관의 육성 지원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방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지역의 균형 있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7) 장기요양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 방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A2. 현재 지정(갱신)제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 ◀									▶ 적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2-1. (A2에서 ①~⑤ 응답자만)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심사 기준, 항목 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 2)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부적절성
- 3) 업무수행 절차 상 번거로움
- 4) 현장의 이해도 부족
- 5) 과도한 물량
- 6) 기타 (무엇: _____)

B.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이번 파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B6. 지정(갱신)제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란에 번호 기입)

[응답란]		
1순위	2순위	3순위

- 1) 지정제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해 부족
- 2) 업무 처리 인력의 부족
-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곤란
- 4) 신청 접수 및 이후 처리절차의 복잡성
- 5) 전산입력 항목 및 방식
- 6) 외부 기관(건보공단 등)과의 협력
- 7) 처리기간
- 8) 기타 (무엇: _____)

B6-1. 지정(갱신)제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B7. 지정(갱신)제의 업무절차 중 지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정 절차]

- ①지정신청 접수 → ②서류 심사 → ③현지 확인 → ④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⑤지정여부 결정 →
⑥전산 입력 → ⑦지정서 발송 → ⑧지정 명세 공단통보 → ⑨사후 관리

부적절◀										▶적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8-1. 다음의 지정(갱신)제 업무처리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해서 적절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추가나 보완, 삭제나 변경의 필요도)

[평가 척도 보기]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①	②	③	④	⑤

지정(갱신)제 업무처리 절차	적절성
<p>[지정신청 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p> <p>1) ※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p>	①---②---③---④---⑤
<p>[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p> <p>2)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p>	①---②---③---④---⑤
<p>3) [현지 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p>	①---②---③---④---⑤
<p>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 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p>	①---②---③---④---⑤
<p>5)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지정서 작성),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복사본 보관)</p>	①---②---③---④---⑤
<p>6) [전산 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p>	①---②---③---④---⑤
<p>7) [지정서 발송]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p>	①---②---③---④---⑤
<p>8) [지정 명세 공단 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등기우송/FAX)</p>	①---②---③---④---⑤
<p>9) [사후 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p>	①---②---③---④---⑤

B8-2. 지정(갱신)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C.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이번 파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C1. 지정(갱신)제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 ◀										▶적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 질문들(C2-C7)은 지정(갱신)제 심사항목 및 기준에 대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평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input type="checkbox"/> [변별력]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실제로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다른 사람(또는 다른 시간)이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평가 척도 보기]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매우 낮다</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낮다</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보통이다</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높다</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매우 높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d style="text-align: center;">⑤</td> </tr> </table>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C2-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50점)]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서비스 제공능력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 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 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2-2.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50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C3-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ex. 연1회 이상)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C4-1.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4-2.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C5-1.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 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 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7)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8)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9) 직원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5-2.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C6-1. [지자체별 심사항목 (20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예)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7. [종합 심사점수] 의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예시)**이어야 함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8.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D.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D1. 현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완화 및 강화 중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 2)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
- 3) 현 상태가 적절하다
- 4) 다소 강화되어야 한다
- 5)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D1-1. (D1에서 ①~② 응답자만)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D1-2. (D1에서 ③~④ 응답자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D2. 향후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란에 번호 기입)

[응답란]		
1순위	2순위	3순위

- 1)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
-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
- 3) 심사위원회 인력풀 확충 및 전문성 확보
- 4) 지정 업무 절차의 전반적 개편
- 5) 지정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 6) 지정제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지원
- 7) 장기요양기관 확보 수준에 대한 지역단위 통계 정보 지원
- 8) 심사 항목 및 기준 구체화
- 9) 기타 (무엇: _____)

D4. 다음은 **향후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평가 척도 보기]				
매우 부적절함	부적절함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적절성
1) 기관 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①--②--③--④--⑤
2)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①--②--③--④--⑤
3)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①--②--③--④--⑤
4) 지자체의 관련 (인증)사업 참여 실적	①--②--③--④--⑤
5)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①--②--③--④--⑤

6) 지역사회 공익, 공헌활동	①--②--③--④--⑤
7) 향후 운영 및 발전 계획	①--②--③--④--⑤
8)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①--②--③--④--⑤

D4-1. 향후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란에 번호 기입)

[응답란]		
1순위	2순위	3순위

- 1) 기관 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 2)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 3)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4) 지자체의 관련 (인증)사업 참여 실적
- 5)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 6) 지역사회 공익, 공헌활동
- 7) 향후 운영 및 발전 계획
- 8)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D4-2. 기타 갱신 시 심사항목 및 기준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D6. 지정(갱신)제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F. 응답자 일반사항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하여 귀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F1. 지역(광역) (※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를 하는 지자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input type="radio"/> 1) 서울 | <input type="radio"/> 2) 부산 | <input type="radio"/> 3) 대구 | <input type="radio"/> 4) 인천 |
| <input type="radio"/> 5) 광주 | <input type="radio"/> 6) 대전 | <input type="radio"/> 7) 울산 | <input type="radio"/> 8) 세종 |
| <input type="radio"/> 9) 경기 | <input type="radio"/> 10) 강원 | <input type="radio"/> 11) 충남 | <input type="radio"/> 12) 충북 |
| <input type="radio"/> 13) 경남 | <input type="radio"/> 14) 경북 | <input type="radio"/> 15) 전남 | <input type="radio"/> 16) 전북 |
| <input type="radio"/> 17) 제주 | | | |

F1-1. 지역(시군구) (※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를 하는 지자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군/구 명

F2. 응답자 성별

- | | |
|-----------------------------|-----------------------------|
| <input type="radio"/> 1) 남성 | <input type="radio"/> 2) 여성 |
|-----------------------------|-----------------------------|

F3. 응답자 연령대

- | | |
|---------------------------------|------------------------------|
| <input type="radio"/> 1) 20대 | <input type="radio"/> 2) 30대 |
| <input type="radio"/> 3) 40대 | <input type="radio"/> 4) 50대 |
| <input type="radio"/> 5) 60대 이상 | |

F4. 최종학력

- | | |
|-----------------------------------|-----------------------------------|
| <input type="radio"/> 1) 고등학교 졸업 | <input type="radio"/> 2) 전문대 졸업 |
| <input type="radio"/> 3) 대학교 졸업 | <input type="radio"/> 4) 대학원 석사학위 |
| <input type="radio"/> 5) 대학원 박사학위 | |

F5. 보유 자격증 (복수선택 가능)

- | | |
|--|--------------------------------------|
| <input type="radio"/> 1) 비해당 (없음) | <input type="radio"/> 2) 사회복지사 |
| <input type="radio"/> 3) 간호(조무)사 | <input type="radio"/> 4) 물리 및 작업 치료사 |
| <input type="radio"/> 5) 기타 () | |

F6. 직급 (예시 : 단장, 실장, 팀장, 팀원/ 기관장, 과장, 주임 등)

직급 :

F7. 장기요양 관련 근무경력

년 개월

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모든 분께 모바일 기프트콘(스타벅스 커피 음료 교환권)을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모바일 기프트콘 발송

■ 수집할 개인정보 항목 :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시 1개월 이내 폐기

=====

G1.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1) 동의함 → G2번 질문으로
- 2) 동의하지 않음 → 설문 종료

G2.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휴대폰 번호 :

****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조사

<지자체 담당자용>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연구과제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 담당자,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현황과 성과, 문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더라도 응답자(지자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총합계나 분포만을 통계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 대상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지자체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
- 설문 길이 : 약 20분 내외 소요 예정
- 설문 기간 : 2020. 10. 21 (수) ~ 2020. 10. 28 (수)

2020년 10월

- ※ 책임연구원: 서 동 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김 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문 성 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전 용 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이 용 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황 재 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 ※ 조사수행(문의): 중앙경영연구원 김영락

※ 본 설문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지자체용 담당자용) 또는 심사위원회 위원(심사위원용)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당 1명, 심사위원회 위원은 지자체당 2명 정도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 지자체 담당자용 설문 URL : https://ko.surveymonkey.com/r/LTC_localgovern

☞ 심사위원용 설문 URL : https://ko.surveymonkey.com/r/LTC_commit

※ 이메일 회신용 주소 : -@- (메일 회신 시 제목에 지자체명 명기 要)

A.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이번 파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A1.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 및 운영 취지에 현재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가 척도 보기]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지정(갱신)제 취지	[응답란]	
	취지 공감도	실제 성과
1)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담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우수 장기요양기관의 육성 지원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방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지역의 균형 있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7) 장기요양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 방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A1-1. 취지에 공감하지 않거나, 실제 성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2. 현재 지정(갱신)제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 ◀									▶적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2-1. (A2에서 ①~⑤ 응답자만)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심사 기준, 항목 구성 및 배점 등 심사기준표의 부적절성
- 2)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부적절성
- 3) 업무수행 절차 상 번거로움
- 4) 현장의 이해도 부족
- 5) 과도한 물량
- 6) 기타 (무엇: _____)

B.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

이번 파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수행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B1. 귀 기관(지자체)에서 지정(갱신)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①해당 인원수를 ()안에 숫자로 기입, ②선정방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정(갱신)제 업무 담당 인력		[응답란]	
		인원 수 (숫자기입)	선정방식 (선택)
1) 지자체 공무원		()명	-
2) 심사 위원회	①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명	<input type="checkbox"/> 공모 <input type="checkbox"/> 내부추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공모 <input type="checkbox"/> 내부추천
	③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대학교수, 연구원 등)	()명	<input type="checkbox"/> 공모 <input type="checkbox"/> 내부추천
	④ 해당 지역 노인·사회복지 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대표	()명	<input type="checkbox"/> 공모 <input type="checkbox"/> 내부추천
	⑤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등	()명	<input type="checkbox"/> 공모 <input type="checkbox"/> 내부추천
	⑥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총계 (전체 위원 수)	()명	-

B2. 귀 기관(지자체)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관련 업무(상담·신청 처리)를 어느 정도 처리하고 계십니까?

()안에 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응답란]	
	처리 건수 (월평균)	건당 평균 처리 기간(시간)
1) 상담	월평균 () 건	건당 ()분 소요
2) 지정심사	월평균 () 건	건당 ()일 소요

B2-1. 귀 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심사위원회를 몇 번 운영하였습니까? ()안에 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응답란] 운영 횟수
1) 총 운영 횟수 (현재까지)	총 () 회
2) 대면 심사 (현재까지)	() 회
3) 비대면(서면) 심사 (현재까지)	() 회

B3. 귀 기관에서 지정(갱신)제 운영을 위해 현재(2020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량(건수)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에 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하나의 재가기관이 다수의 급여유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기관은 1개소더라도 급여유형은 각각 집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즉, 재가 기관 수(건)와 급여유형별 합계 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응답란] 건수 (숫자로 기입)		
		신청	지정	지정거부
1) 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 건	() 건	() 건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건	() 건	() 건
2) 재가	① 기관 수	() 건	() 건	() 건
	② 방문요양	() 건	() 건	() 건
	③ 방문목욕	() 건	() 건	() 건
	④ 방문간호	() 건	() 건	() 건
	⑤ 주야간보호	() 건	() 건	() 건
	⑥ 단기보호	() 건	() 건	() 건
	⑦ 복지용구	() 건	() 건	() 건

B4. 지정거부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5) 지자체별 심사항목
- 6) 기타 (무엇:)

B4-1. 지정거부 사례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 지정심사표의 항목별 감점사유 등)

부적절 ◀									▶ 적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8-1. 다음의 지정(갱신)제 업무처리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해서 적절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추가나 보완, 삭제나 변경의 필요도)

[평가 척도 보기]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①	②	③	④	⑤

지정(갱신)제 업무처리 절차	적절성
[지정신청 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1) ※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①---②---③---④---⑤
[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2)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①---②---③---④---⑤
3) [현지 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①---②---③---④---⑤
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 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①---②---③---④---⑤
5)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지정서 작성),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복사본 보관)	①---②---③---④---⑤
6) [전산 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①---②---③---④---⑤
7) [지정서 발송]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①---②---③---④---⑤
8) [지정 명세 공단 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등기우송/FAX)	①---②---③---④---⑤
9) [사후 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입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①---②---③---④---⑤

B8-2. 지정(갱신)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C.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이번 파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C1. 지정(갱신)제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 ◀										▶ 적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 질문들(C2~C7)은 지정(갱신)제 심사항목 및 기준에 대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평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input type="checkbox"/> [변별력]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실제로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다른 사람(또는 다른 시간)이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평가 척도 보기]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C2-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50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서비스 제공능력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 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 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2-2.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50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C3-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ex 연1회 이상)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C4-1.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4-2.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C5-1.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1)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 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 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 되었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7) 장기요양요원 추가배치 등 인력확보 계획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8)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9) 직원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5-2. [인적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관련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C6-1. [지자체별 심사항목 (20점)] 의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별로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 (선택)해 주십시오.

(예)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6-2. 지자체에서 별도로(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항목·심사기준의 내용이 있다면, 그 (1)내용과 (2)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C7. [종합 심사점수] 의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선택)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예시)이어야 함

타당성	변별력	신뢰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8.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D.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D1. 현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완화 및 강화 중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 2)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
- 3) 현 상태가 적절하다
- 4) 다소 강화되어야 한다
- 5)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D1-1. (D1에서 ①~② 응답자만)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D1-2. (D1에서 ③~④ 응답자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D2. 향후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란에 번호 기입)

[응답란]		
1순위	2순위	3순위

- 1) 사전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외부 지원체계 마련
-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 강화
- 3) 심사위원회 인력풀 확충 및 전문성 확보
- 4) 지정 업무 절차의 전반적 개편
- 5) 지정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 6) 지정제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지원
- 7) 장기요양기관 확보 수준에 대한 지역단위 통계 정보 지원
- 8) 심사 항목 및 기준 구체화
- 9) 기타 (무엇:)

D3. (D2질문에서) 선택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D4. 다음은 향후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평가 척도 보기]				
매우 부적절함	부적절함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적절성
1) 기관 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①--②--③--④--⑤
2)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①--②--③--④--⑤
3)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①--②--③--④--⑤
4) 지자체의 관련 (인증)사업 참여 실적	①--②--③--④--⑤
5)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①--②--③--④--⑤
6) 지역사회 공익, 공헌활동	①--②--③--④--⑤
7) 향후 운영 및 발전 계획	①--②--③--④--⑤
8)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①--②--③--④--⑤

D4-1. 향후 지정(갱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사항목 및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란에 번호 기입)

[응답란]		
1순위	2순위	3순위

- 1) 기관 운영자의 운영이념 및 도덕성
- 2) 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
- 3) 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4) 지자체의 관련 (인증)사업 참여 실적
- 5)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 6) 지역사회 공익, 공헌활동
- 7) 향후 운영 및 발전 계획
- 8)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F1-1. 지역(시군구) (※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를 하는 지자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군/구 명

F2. 응답자 성별

- 1) 남성 2) 여성

F3. 응답자 연령대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F4. 최종학력

-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석사학위
 5) 대학원 박사학위

F5. 보유 자격증 (복수선택 가능)

- 1) 비해당 (없음) 2)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4) 물리 및 작업 치료사
 5) 기타 ()

F6. 직급 (예시 : 단장, 실장, 팀장, 팀원/ 기관장, 과장, 주임 등)

직급 :

F7. 장기요양 관련 근무경력

년 개월

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모든 분께 모바일 기프트콘(스타벅스 커피 음료 교환권)을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모바일 기프트콘 발송
- 수집할 개인정보 항목 :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시 1개월 이내 폐기

=====

G1.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1) 동의함 → G2번 질문으로
- 2) 동의하지 않음 → 설문 종료

G2.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휴대폰 번호 :

*****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